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통 일 원

목 차

I.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환경	7
1. 남북경제교류협력 현황	7
가. 남북교류협력 관계의 정립	7
나.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노력	8
다. 남북경제협력 현황.....	14
2. 북한의 투자환경	20
가. 북한경제 현황.....	20
나. 북한경제 운용정책의 변화	32
다. 북한의 대외경제 담당기구	39
라. 북한의 외국인 투자 여건	49
II.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국내법 절차	62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과 『시범적 경험』	62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66
가. 기본방침	66
나. 세부 추진절차.....	68
다. 사후관리	94
3.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104
가. 사무소 설치 개요	104
나. 기본방침 및 승인범위	105
다. 세부 추진절차.....	107

라. 사후관리	116
4. 남북협력기금 지원	119
가. 개요	119
나. 손실보조	121
다. 자금대출	126
라. 채무보증	130
마. 금융기관 지원.....	132
바. 지원 유형간의 관계	134
Ⅲ.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북한내 절차	136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136
가. 합영기업	136
나. 합작기업	136
다. 외국인기업	136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137
가. 투자 당사자의 범위, 분야 및 우대 특혜조치	137
나. 설립절차	141
다. 출자	145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148
가. 경영관리조직	148
나. 구입·판매 및 수출입	151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153
가. 채용 및 해고	153
나. 노동시간	155

다.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155
라. 사회보험·사회보장	157
마. 직업동맹의 활동.....	159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관리	160
가. 개 관	160
나. 외화의 이용.....	162
다. 외화의 반출입.....	163
6.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관리	164
가. 개 관	165
나. 토지의 임대방법.....	165
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장	167
라. 토지이용권의 반환과 연장	169
마.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170
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173
가. 개 관	173
나. 기업소득세	175
다. 개인소득세	178
라. 기타 세제.....	180
마. 북한과 중국의 기업·개인소득세제 비교	183
8. 외국인 투자기업의 결산.....	184
9.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산 및 분쟁해결	187
가. 해 산	187
나. 분쟁해결	189

IV.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190
1.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190
가. 나진·선봉지대 개황	190
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실체	204
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나진·선봉지대	219
라. 나진·선봉지대 개발현황	231
마. 나진·선봉지대 외국인 투자 현황	245
바. 나진·선봉지대 개발방향 모색	259
2.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관련 환경	273
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법규	273
나. 기업의 설립절차	273
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273
라. 지대 출입국	275
마. 지대내 외국인 체류 및 거주	276
바. 자유무역항	276
사. 관 세	277
3. 투자기업 설립의 제반조건	278
가. 투자업종 및 투자방식	278
나. 출 자	281
다.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281
라. 자금조달	283
마. 이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284
바. 토지임대	285
사. 생산과 판매	286

아. 원재료·부품의 조달	290
자. 수출의무 및 외화균형	291
차. 조세와 감면	291
카. 외화관리	291
타. 이익송금	293
파. 인건비	293
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296
거. 해산 및 청산	300
4. 설립수속 및 절차	302
가. 투자진출시 순서도	303
나. 합병·합작기업 설립의 순서	304
5. 합병계약서 등의 모델	305
가. 계약서류의 종류와 효과	305
나. 의향서 샘플	306
다. 협의서 샘플	307
라. 계약서 샘플	309
〈부 록〉	325
1.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규	325
2.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서식	449
3.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분야	471

I.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환경

1. 남북경제교류협력 현황

가. 남북교류협력 관계의 정립

-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
 -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
- 1988년 10월에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허용·지원
 -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접촉도 일부 성사
-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함.
- 한편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한·소수교(90. 9. 30), 한·중수교(92. 8. 24)등 가시적인 성과
- 1990년 9월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음.

-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
-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공동위」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나.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노력

- 1993년 정부는 통일방안에 「화해·협력」단계를 명시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의지를 표명
- 북한은 1993년 3월 갑자기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국면으로 전환시켰음.
 -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을 핵문제 해결시까지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93. 6. 제11차 통일관계장관회의), 이에 따라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및 상봉과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 교역은 계속 추진
-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규정을 마련
 - 1995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 방북승인,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등 후속조치들을 시행함.

○ 정부의 대북 곡물지원이 1995년 6월 남북한 당국간의 북경회담을 통해 합의

- 정부는 쌀 15만톤을 3개월여의 기간(95. 6. 25~10. 1)에 걸쳐 북한에 무상 지원
- 남북간의 소모적인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화해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

(1)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에 따른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함.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94.11.8)

□ 기본방향

- 북한 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축적으로 경협 확대
 - 북한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에 따라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시범경협」 우선 허용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분야별 경협 본격 추진」등으로 확대
- 남북경제교류 협력은 상호 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남북 모두의 실리를 도모하도록 추진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조치내용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단, 대규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 투자설명회·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 사업 추진 허용

②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설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 규정 보완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96. 3. 5) 개정)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른 추진방향

○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

○ 시범경협외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험 활성화

○ 장기적으로 SOC, 식량,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수립 및 지원

○ 1995년에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3일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

－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물품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을 통한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제고되었음.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 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1995년 4월 1일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 지침」을 제정·시행
-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4월 1일자로 부산 등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지부 10개소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
- 정부는 1997년 4월 1일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의 절차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함.

□ 주요개정 내용

○ 품목구분 및 반출·입 절차(고시제3조-제5조)

-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으로 하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각각 변경하여
- 『포괄승인품목』은 통일원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입을 하도록 함.

○ 은행승인제도 폐지

- 기존 자동승인품목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통일원장관이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교역절차를 간소화함.(고시 제5조제2항)

○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 신설

-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를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 포함시키고 통일원장관이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함.(고시 제3조1호, 제5조제1항)

○ 교역대상물품 품목 조정

- 기계·장치·설비는 위탁가공용이 아닌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반출을 허용(고시 제3조2호)
-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과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생활용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으로 간주(고시 제4조제2항)
- 반입물품으로서 사진·엽서·연하장과 낙지(냉동)·로얄제리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명태(냉동), 오렌지(신선·건조), 인삼음료 등 10개 품목을 『포괄승인품목』으로 조정(고시 제3조3호, 별표1)

다. 남북경제협력 현황

(1) 경 과

-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1994년 10월 미·북한 제네바 핵협상 타결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잠정 유보해 왔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4. 11. 8.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 동조치는 ① 기업인 방북 및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②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허용 및 기술자 방북 허용 ③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4. 12. 1.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을, 1995. 6. 28.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마련
- 이러한 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으나, 1996년 9월 북한측의 의도적인 선별초청으로 인한 남한측 대표단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불참과 뒤이어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우리 기업인의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어

기업인의 직접 접촉·방북과 협력사업(자) 승인이 일시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 1996년 말부터 북한측의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와 4자회담 예비회담 참가,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 등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일시 보류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1997. 5. 22. 추가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남북경협은 점차 증가세에 있음.
- 1992년 1월 대우그룹이 경협 협의를 위해 방북한 이래 LG·삼성·현대 등 국내 대기업의 기업인들이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인 투자협약의 목적으로 방북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섬유·의류, 신발, 농수산물, 식음료 임가공 및 투자 협의목적으로 상당수 방북하여 실질적인 경협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경협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기업중 일부는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위하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신청해 오음에 따라
 - 1995. 5. 17 (주)대우에 대해서 셔츠·블라우스, 자켓, 가방 생산 등 총 512만불, 1997. 5. 22 (주)태창에 대해서는 금강산삼물 개발에 총 580만불 및 1997. 11. 14 (주)녹십자에 대해서는 유로키나제(혈전증치료제) 생산에 총 311만불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승인을 하고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의 현황은 후술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과 같음.
- 나아가 정부는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의 실험장으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한 나진·선봉지대에 대하여 동지대를 남북경협 시범지역, 통일 이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 한국토지공사 등 30여개 기업의 북한방문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음.

○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북한 실포지구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 추진은 비록 KEDO라는 국제적인 기구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지만 향후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간에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되는 협력사업으로서 남북간 신뢰회복과 민족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각 분야별 의정서 및 절차규정은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원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임.

(2) 추진현황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5. 5. 17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 『협력사업』 승인, 고합물산의 의류·봉제, 직물 등 4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을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으로 이중 이미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대우, 태창,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외환은행, 녹십자 6개 기업을 제외한 21개 사업이 현재 『협력사업자』로 지정된 상태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기 업	사 업 내 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승인일
고합물산	의류·봉제, 직물 등 4개사업	686만불	광명성총회사	평양·남포 또는 나진·선봉	'95. 5.17
한일합섬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사업	980만불	조선은하무역총회사	,	'95. 6.26
국제상사	신발	350만불	,	,	'95. 6.26
녹십자	의약품(유로키나제)	300만불	광명성총회사	평양	'95. 9.15
동양시멘트	시멘트 싸이로 건설	300만불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	'95. 5.15
동통해운	하역설비(크레인등)	500만불	해양무역회사	나진·선봉	'95. 9.15
삼성전자	나진·선봉 통신센터	700만불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96. 4.27
대우전자	TV등 가전제품 생산	640만불	삼천리총회사	남포	'96. 4.27
미홍식품	수산물 채취·가공	15만불	조선철산수산회사	함흥·청진 원산·남포	'97. 5.22
신일퍼혁	퍼혁·의류 봉제	300만불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	'97. 5.22
한 화	PVC장판 제조	90만불	명오총회사	평양·남포	'97. 5.22
LG전자 / LG상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450만불	광명성총회사	평양·남포	'97.10.14
삼성전자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500만불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97. 8. 1
코오롱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400만불	은하무역총회사	평양·남포	'97. 8. 1
신 원	의류·봉제사업	100만불	은하무역총회사	평양	'97. 8. 1
파라우수산	수산물 생산·가공	300만불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원산·해주	'97. 8. 1
금오식품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40만불	은하무역총회사	평양	'97. 8. 1
한국토지공사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 (유현지구)	'97.10.14
대상물류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420만불	,	나진·선봉 (동명지구)	,
삼천리자전거 /LG상사	자전거 조립·생산	800만불	광명성총회사	나진·선봉	,
태영수산 / LG상사	가리비 양식 생산	200만불	,	원산 또는 나진·선봉	,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	금호	'97.11. 6
아자 커뮤니케이션	인쇄물 및 TV 광고 제작	20만불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	'97.11.14

-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주)대우 이외에도 (주)태창이 금강산생물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주)녹십자가 의약품제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이, 동 사업을 위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한국통신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한국외환은행이 각각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음.

〈남북경제 협력사업 승인 현황〉

기업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승인일
대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사업 ※ '96. 1. 26. 민족사업 총회사 설립 ※ '96. 6월 투자자금 송금	512만불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95. 5.17
태창	금상산 생물 개발	580만불	룽라888무역총회사	강원고성군 은정리	'97. 5.22
한국통신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체신부	함남신포 금호지구	'97. 8. 1
한국전력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	4,500만불 (PWC)	원자력총국	.	'97. 8.16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	.	.	.	'97.11.6
녹십자	혈전증 치료제(유로키나제) 제조 사업	311만불	광명성총회사	평양	'97.11.14

(3) 평 가

-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우리 내부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계법령을 제정·시행하고 남북교류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또한 남북간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어 교류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
-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있어서도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로 협력사업자 승인은 27개 기업, 협력사업 승인은 6개 기업 6개 사업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남북경협이 상당히 진전
 - 특히 1996. 8. 15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시 남북 농업협력, 나진·선봉 투자, 남북교역 확대, 한국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 허용 용의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하지만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투자보장 장치의 마련을 위한 당국자간의 대화에는 전혀 응해오지 않고 있음.
- 북한은 대내적 권력관계의 변화와 위협을 수반하는 체제개혁보다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부분개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기초위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당국차원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남한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질서

있고 신중하게 경협이 추진될 때만이 남북경협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이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서방기업의 대북투자를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인 만큼 단순교역을 넘어선 대북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 신뢰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이 급선무
- 정부는 이를 위해서 4자회담의 개최와 성공이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4자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향후에도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반응과 태도를 감안하여 경협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해 나갈 방침임.

2. 북한의 투자환경

가. 북한경제 현황

(1) '97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 '95년, '96년와 마찬가지로 「공동사설」형식으로 간단히 정책추진 방향 제시
 - 경제건설의 중심과업 설정
 - ①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 ②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③ 국토건설사업의 추진

- 완충기과업으로 제시('93. 12.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의 계속 추진으로 당초 왜곡된 경제구조조정을 목표로 북한이 설정했던 “완충기 경제전략”이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없이 연장되었음.

○ 요컨대 '97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은

- 지난해로 당초 설정한 완충기('94~'96년)가 어떤 형태로든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식량난 등 직면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고 회생시킬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에 따라
- 김일성의 「유훈」 실현과 함께 완충기간중에 설정한 바 있는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그대로 답습·연장하였다고 할 수 있음.

(2) 북한의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을

- '96년중 북한의 실질GDP 기준 성장률은 -3.7%로 '90년이래 연속 7년째 감소추세 지속
- 농림어업은 전년의 감산에 따른 반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의 생산활동이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수재복구 지연에 따른 수송애로 등으로 크게 위축

	'91	'92	'93	'94	'95	'96
GDP성장률(%)	△5.1	△7.7	△4.2	△1.8	△4.6	△3.7
농림어업	2.8	△2.7	△7.6	2.7	△10.5	1.0
제조업	△13.4	△17.8	△1.9	△3.8	△5.3	△8.9
건설업	△3.4	△2.1	△9.7	△26.9	△3.2	△11.8
서비스업	2.5	0.8	1.2	2.2	1.5	0.8

(나) 경제규모 및 1인당 GNP

- '96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명목 GNP기준)는 전년보다 4.0% 감소한 214억달러, 1인당 GNP는 47달러가 줄어든 910달러를 기록
- 달러기준 GNP규모는 한국의 약 1/22, 1인당 GNP는 약 1/12

	북한(A)		한국(B)		B/A배	
	'95	'96	'95	'96	'95	'96
명목 GNP(억달러)	223	214	4,526	4,804	20.3	22.4
1인당 GNP(달러)	957	910	10,037	10,548	10.5	11.6

(다) 산업별 동향

- 농림어업은 '96년중 미곡(10.6%) 등 재배작물 생산(5.8%)이 전년의 큰폭 감소에 따른 반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생산(-5.2%)이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어업생산(-9.6%)도 선박연료 부족, 어로장비 낙후 등으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로는 1.0% 늘어나는 데 머물렀음.
- 재배작물의 수확량은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극심하였던 '95년 보다는 다소 늘었으나 영농체제의 비효율성, 영농자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7~8월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평년작(414만톤) 수준을 밑도는 369만톤에 그쳤음.
- 광업은 석탄생산(-11.4%)과 철광석 등 금속광물생산(-15.8%)이 채굴장비의 노후화 및 광원의 노동의욕 감퇴 등으로 크게 줄었으며 '95년 중 대미수출계약 체결에 힘입어 증가하였던 마그네사이트 등 기타광물생산(-10.6%)도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체로는 전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음.(-2.3% → -11.8%)
- 제조업은 석탄, 전력 등 에너지산업이 부진하고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된 데다 지난해 수재로 파괴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

설의 복구지연에 따른 수송애로 등이 겹쳐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경공업(-7.1%) 및 중화학공업제품(-9.7%) 모두 감소하여 전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음.(-5.3% → -8.9%)

- 전력생산은 화력발전(0.3%)이 KEDO의 증유 50만톤 공급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력발전(-12.1%)은 연평균 강우량 감소와 시설노후 등으로 크게 줄어 전체로는 8.5% 감소하였음.
- 건설업은 계속되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멘트, 철근 등 건설용 자재의 공급도 감소함에 따라 일부 철도 및 발전시설 건설을 제외한 대규모 건설사업은 거의 중단된 가운데 탄광의 갱건설, 공장의 생산능력 확장공사 등 단기 소규모 사업과 정치사상 목적의 건설공사에 치중한 데다 주택건설도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전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음.(-3.2% → -11.8%)
- 서비스부문도 유통, 물류부문이 광공업의 생산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에너지난이 겹쳐 모두 감소하고, 정부서비스도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신장세가 둔화되었음.(1.5% → 0.8%)

(라) 산업구조

- '96년도 북한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이 가중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에 따른 수송애로까지 겹쳐 실물부문생산이 전년보다 더욱 위축됨에 따라 광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년에 크게 감소하였던 곡물생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농림어업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음.

-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업의 비중이 전산업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후진적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한정된 자원이 국방 및 군산복합형 중공업부문에 편중배분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3) 북한의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 '97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국가별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 대중국 무역규모는 중국으로부터 식량 등 원조성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으며
- 대일본 무역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총교역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환율상승으로 미달러화 베이스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타국들과의 무역실적은 국가별로 증감이 교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음.

○ 이에 따라 기간중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동기비 약 4.8% 증가한 8.7억달러인 것으로 잠정 평가되었음.

〈'9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평가〉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 액	수 출	수 입
중 국	2.9(2.5)	0.4(0.3)	2.5(2.2)
일 본	2.1(2.3)	1.3(1.2)	0.8(1.1)
러 시	0.3(0.2)	0.1(0.0)	0.2(0.2)
기 타	3.4(3.3)	1.2(1.1)	2.2(2.2)
총 계	8.7(8.3)	3.0(2.6)	5.7(5.7)

주 : () 내 수치는 전년동기 북한의 무역실적

(나) 남북교역

- '97년도 상반기 남북한 교역실적(통관기준)은 1,937건, 1억 4,544만달러로서 전년동기 1억 1,634만달러에 비해 약 25.0% 증가하였음.
- 반입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8.0% 증가한 9,706만달러
- 반출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41.9% 증가한 4,839만달러

〈'97년 상반기 남북교역실적(통관기준)〉

(단위 : 천달러, %)

구 분	'97. 1~6월	'96. 1~6월	증 감 륜
교역총액	145,443	116,337	25.0
반 입	97,058	82,229	18.0
반 출	48,385	34,108	41.9

- 남북교역 품목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입에서는 16.8% (1,633만달러), 반출에서는 40.5%(1,958만달러), 전체 규모에서는 24.7%(3,591만달러)를 차지함으로써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낮아졌음.

※ 전년동기의 위탁가공교역 비중 : 반입 17.2%, 반출 55.8%, 반·출입전체 28.7%

- 상반기중 남북교역의 반·출입 상품 구조를 보면

- 반입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철강금속 제품이 여전히 절대적 비중(6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가공품목을 중심으로한 섬유류의 점유율도 19.4%에 달하였으나, 섬유류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비 다소 감소(2.2%)하였음.
- 반출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섬유원재료, 화학제품의 비중이 각각 44.6%, 30.1%를 점유하고 있음.

〈'97년 상반기 주요 반·출입 품목 구성〉

구분	'97년 상반기	'96년 상반기
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금속(61.6%) - 금괴, 아연괴, 빌레트, 은괴 ○ 섬유류(19.4%) - 셔츠류, 면타월, 바지류, 자켓류 ○ 농·림수산물(13.7%) - 냉동문어, 냉동복어, 생대합, 백출 등 ○ 기타(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금속(61.5%) - 금괴, 아연괴, 빌레트, 열연 ○ 섬유류(21.6%) - 남자셔츠, 바지, 면타월, 아크릴사 ○ 농·림수산물(12.1%) - 한약재, 로얄제리, 호두, 복어, 냉동문어 ○ 기타(4.8%)
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44.6%) - 직물류, 의류부속품, 소가죽, 오리털 등 ○ 화학제품(30.1%) - 중유, LDPE ○ 기계전자(6.2%) - 칼라TV 부품 등 ○ 농림수산물(5.6%) - 밀가루, 감자, 채소종자 ○ 기타(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62.3%) - 방직섬유, 의류부속품, 직물, 레이블 ○ 화학제품(21.5%) - 중유, LDPE ○ 기계전자(4.7%) - 칼라TV 부품, 신호발생기, 각종부속품, 지질조사장비 ○ 기타(11.5%)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 기간중 북한이 추진한 나진·선봉지대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 원정리-나진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홍콩 타이슨사)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 나진항 크레인설비 개체작업(연변항운공사)을 진행하였으며.
 - ‘엠펜러호텔’ 기공식(2.1) 및 건물기반 공사도 착수하였으며
 - ※ 홍콩 엠펜러그룹은 '96. 9. 호텔건설에 총 1억 8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한 바 있음. 동 그룹은 1단계로 5,400만불을 투자, 나진-선봉시 관곡동 12만㎡ 부지에 100실의 규모 호텔 및 카지노 공사를 시행
 - 현재 엠펜러그룹은 호텔을 관리하기 위해 「Big Star Profit Ltd.」를 설립해 놓은 상태임.
 - 나진·선봉지대내 휴대폰 개통('97 하반기 예정)을 위한 준비(록슬리그룹)를 진행중에 있음.
- 한편,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 지역내 경제개혁·개방조치를 시행('97.6.1)하였음.
 - 화폐개혁 : ‘외화 바꾼돈표’ 폐지, 환율 조정(US 1\$=200원)
 - 주민의 자유영업 허용 : 일반주민도 북한 중앙당국에 일정률의 납부금을 내고 자유영업이 가능
 - 국경 자유무역시장 개설 : 북-중 국경지역인 원정-권하다리 북측세관요 부지에 변경 자유무역시장 개설(6.17)
 -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 계획관리체제로부터 독립, 자기 책임하에 독립 운영
 -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함경북도 철도체계 재조정,

상업교육기관 설립 등

- 그러나 경제개혁 조치 등 북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지대 개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동지대를 개발할 방침이나, 투자여건 미비 등으로 외국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 이미 투자계약이 체결된 엠페리그룹 호텔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북 투자활동을 찾아볼 수 없음.
- 북한은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를 위해 나진·선봉 이외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 이는 나진 선봉지대 개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대외경제협력

-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의 지원을 획득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한 식량 등 지원요청과 함께
 - WEP, IFRC, NGO등을 통한 지원 확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미국과의 관계에서
 - 미·북 준고위급회담 등의 접촉 기회를 통해, 기회있을때마다 식량지원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하였음.
 - '96년말 미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추진하던 카질사의 곡물 수출(최대 50만톤)은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일본에 대해서는

-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접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
-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총련』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2차례(2.16, 4.15)에 걸쳐 2억 4,400만엔을 전달한 바 있음.
- 중국과는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부족한 식량원조 획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중국 정부는 상반기중 약 7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
- 러시아와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고위 경제대표 단간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
 - 북·러간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1.24),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5.21)등 체결
- 이밖에도 북한은
 -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 쿠바, 이집트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들과의 유대 지속에도 노력을 기울였음.
- 한편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 결과,
 - 『서비스의정서』·『부지의정서』(1.8), 『미지급시 조치의정서』(6.24)등이 발효되었음.
 - ※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는 '96. 9. 이미 문안합의가 되었으나, 잠수함사건으로 발효가 지연되었음.

- 또한 부지조사 및 인수, '97. 7월로 예정된 KEDO 금호사무소 개설 준비도 진행되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97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활동은
 - 극심한 식량난 극복 등을 위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획득에 역점을 두었으며,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 성과는 극히 부진하였음.

(4) 종합평가

- 북한은 '97년도 경제시책으로
 - ①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②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③ 국토건설사업의 추진등 당면한 문제들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는 한편
 - 당초 완충기('94~'96년)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는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 예년과 마찬가지로 석탄·전력·금속 등 선행부문의 생산혁신과 철도수송의 보장을 통해 경제난 및 수송애로를 극복한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견지하였음.
- '97년도 상반기 부문별 대내동향을 보면
 - 재정부문은 예산을 최고인민회의의 공식적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파행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의 낭비·누수현상이 심화되었고
 - 농업부문은 이상고온현상 및 가뭄피해, 해일피해 등과 함께 전력난, 농업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정상적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었으며
 - 건설부문은 재정사정 악화 및 건설자재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제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사적비 등 소규모의 정치 선전적 상징물 건설에 주력하였고

- 광공업부문 역시 위탁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경공업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각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전년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됨.

○ '97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동향은

-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 일본 등 주요 4개국에 편중(60%이상)되어 무역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 수출입상품 구조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약화로 곡물, 섬유류, 철강제품 등 원조성 또는 위탁가공 품목에 65~80%이상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 기간중 무역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무역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였음.
- 한편,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 이를 종합해 볼 때 '97 상반기중의 북한경제는

- 북한당국이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합리적 증산책보다는 절약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시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 극심한 식량난, 가뭄피해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및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 만성적인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구조적 어려움만 가중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97년도 북한경제는

- '97년도가 사실상 완충기('94~'96년) 연장년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경제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북한경제 운용정책의 변화

(1) 최근의 경제개방 움직임

(가) 부분적인 경제개방

- 북한은 1991년 12월에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공표함으로써 대외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
- 북한은 이미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 후속법규의 미비 및 잠재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별 주목을 받지 못한채 일부 조충련 기업들과의 소규모 합영에 그침.
- 그러나 '91년 7월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의 결정과 연계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동북아지역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첨단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북한의 구상은 일단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음.
- 이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규의 정비에 착수하여 '92년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에서부터 '93년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95년 2월의 대외경제계약법, 4월에 보험법, 7월에 합영법시행규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48여개의 관련법규를 개정 또는 신설함.

- 북한의 개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조짐은 대외경제기구의 개편과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199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에서 종전의 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 등 정무원의 여러 대외부서들을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폐합하여 대외무역정책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 그리고 지방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등이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외무역권을 부여하였음.
- '95년초에 다시 조직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남경제협창구 역할을 수행하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약칭 「고민발」)가 '95년 1월 해체되고, 대신에 대외경제협력총국이 신설되었는데 대외경제협력총국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직속기관이며, 조직 구성은 민족개발지도국, 나진·선봉지도국, 국제합영국, 국제협력국 등 4개국으로 되어 있음.
 - '민족개발지도국'은 과거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고민발」을 개편한 것이며, '나진·선봉지도국'은 조선경제개발총회사를 산하에 두고 '나진·선봉지역'의 외자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프로젝트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합영국'은 기존의 합영총국을 대체해서 조총련과의 합영·합작사업을 총괄하며, '국제협력국'은 한국 및 조총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루는 조직의 체계는 국가정책기관인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밑에 실질적인 대외접촉 활동을 수행하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약칭 「대경추」)가 있고,

다시 그 밑에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대외경제협력총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조직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구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밖에 대외경제관계 기관으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약칭 「무촉위」)가 있는데, 「무촉위」 역시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준정부조직으로 과거에는 국가간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 특히 일본과의 경제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서방 무역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대경추」와 함께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해가는 쌍두마차로 부각되고 있는 듯함.

(2)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가) 경제개방정책 추진배경

-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침체 해결
 - 동서 냉전의 종식
 - 중국의 경제개방·개혁 지속
 - 소련·동구의 자유화·민주화
 - 김정일 권력 승계 정당성 확보
 -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채택
 - 노동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93.12)
- 사회주의시장 상실을 보상할 신시장의 개척
 - 경화결제 요구('91년 소련, '92년 중국)
 - 원유 등에 대한 우호가격 철폐
-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대응
 - UNDP,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중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북한, 두만강개발계획 일환으로 나진·선봉개발계획 발표('91.12)

(나) 경제개방정책의 주요내용

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정

①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

- 정무원 결정 제74호
- 나진시·선봉군 621km² 지역
- 합영·합작·외국인 단독기업 허용
- 투자국가 제한없음.
- 투자 자본, 재산, 소득 등에 대한 법적 보호
- 나진항, 선봉항과 인접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개방
- 기업소득세 감면 등 특혜조치

○ 개발계획

- 동북아의 국제화물중계, 가공수출, 관광기지로 육성
- 총 80억달러 규모 외자유치 계획('95. 9)
 - 공업부문 : 66개 투자대상 사업, 35억 달러
 - 인프라부분 : 도로·항만·철도·공항·통신 등, 46억달러

② 투자우대조치의 부여

- 100% 외국인투자 허용
- 외국은행과 지점,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허용
- 낮은 세율과 조세감면 혜택 부여
- 재수출·통과무역화물 관세면제
-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의 일부 도입

- 낮은 노동임금
- 무사증입국 허용
 - 원정·권하 다리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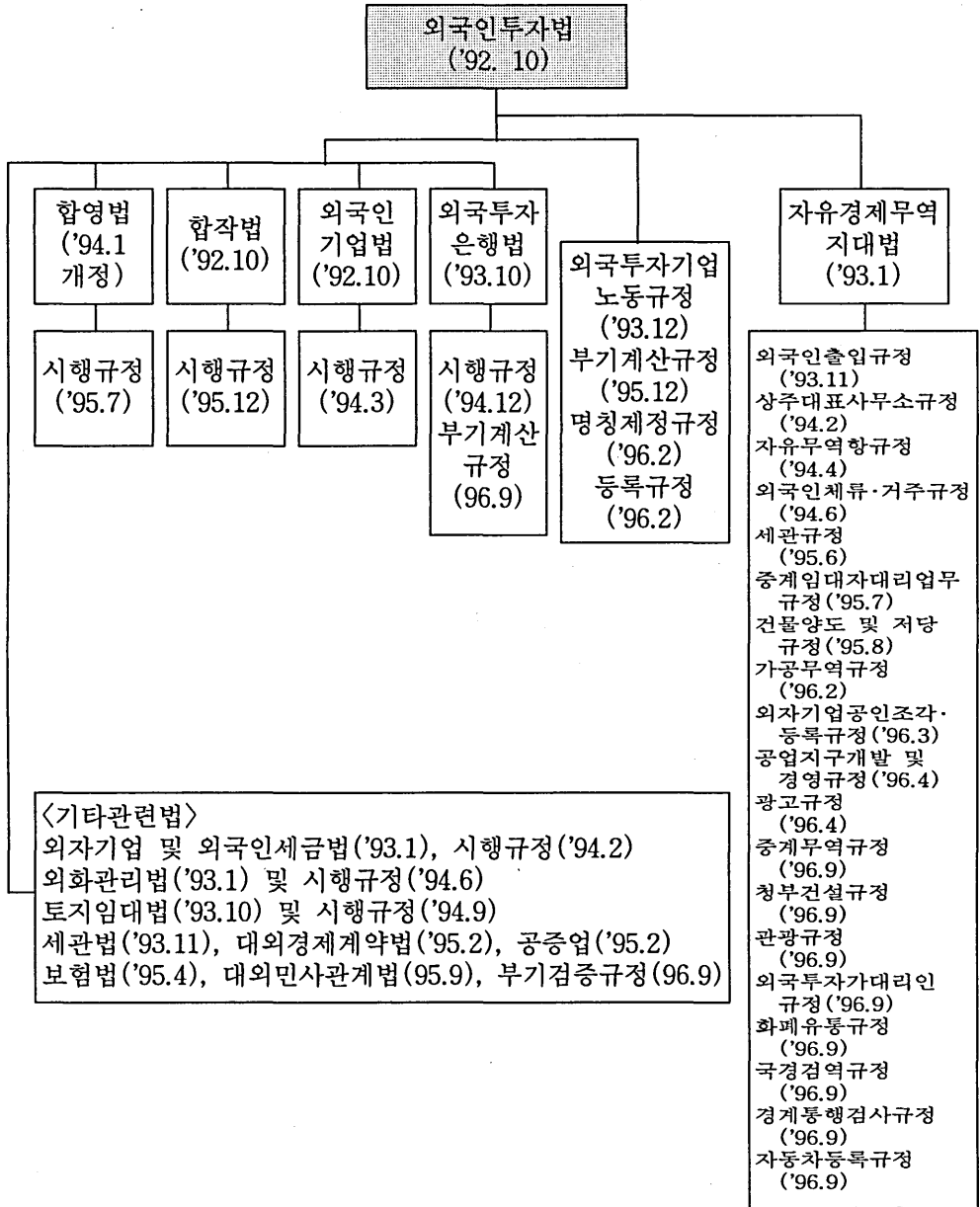
③ 제도적 기반구축 진행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
- 자유경제무역지대 면적의 확충('93.9 원정리일대 125km² 추가, 총 745km²)
- 나진·선봉지역의 특별시(직할시)승격
-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 담당기구의 설립
 - 정부원소속의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총괄 ; 개발운영 정책지도, 총 투자액 1천만원이상과 인프라부문 2천만원이상 사업 심의·비준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CPEEC) 설립
 -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 폐지
 - 신규 조직으로 대외경제협력(조)총국 설치
 - 지대당국(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 행정·국토관리 운영권, 사법권, 총투자액 1천만원까지의 사업에 대한 심사 승인권, 토지·건물 임대권

2) 대외개방 관련 법령의 정비

- 1992년 4월 수정헌법 제37조에 외국과의 합영, 합작의 근거규정 명시
- 1997년 10월 현재 총 48개 대외개방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 중국과 유사한 경제특구방식 수용 및 국제거래유형에 따른 투자 법령 체계구축

〈북한의 주요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체계〉



3) 신무역체계의 도입

① 신무역체계의 내용

○ 대외무역정책 창구의 일원화

- 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 대외경제위원회 등 복수의 대외경제부서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

○ 대외무역 활동의 다원화

- 정무원 각위원회, 부 및 지방 도행정경제위원회의 독자적 대외무역 취급허용
- 중앙무역과 지방·변경무역, 민간무역과 협동무역을 동시 장려

○ 무역형태의 다양화

- 무역방식중 가공무역, 중계무역, 되거리(재수출)무역 장려

② 신무역체계 도입 의미

○ 당의 영향력 감소로 이념적 편향의 약화

○ 자본주의 무역방식의 원용에 의한 이윤논리의 일부 도입

(3) 경제운용정책 변화의 본질 및 한계

- 북한 경제운용정책의 변화는 내적모순의 심화와 외적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경제난과 남북한간의 경제격차 심화, 국제무대에서의 고립 등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체제유지적 자구책의 발로로 해석됨.

-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는 자가당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바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전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경제행위주체에 대한 동기부여의 선별적 도입, 대외적으로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제도변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더우기 정치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고수를 위한 선전과 선

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체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 경제개혁 및 개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관련법규 및 조직을 정비하였다고는 하나 후속 법규의 불비 및 개정법규의 미숙과 더불어 전반적 대외경제 관련조직조차 공표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일련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은 체제유지와 경제건설이라는 양대 당면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방에는 대외개방이미지 확산에 주력하면서도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조심스럽고 제한된 정책수단으로서, 전면개방이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는 동떨어진 특정지역에 대한 중국식 부분개방이나 기존의 제도적 틀속에서 종속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다. 북한의 대외경제 담당기구

(1) 개 요

- 현재 북한에서 대외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심기관, 또는 그 집행을 관장하는 기구로는
 - 당노선과 정책수립 및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 정부차원의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대외정책위원회』,
 - 중앙인민위원회의 정책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 등이 있음.
- 상기 기구 가운데 대외경제(교역)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기관은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인바

- 동 기구는 '92. 12월 기존의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통합, 신설한 것으로서
- 정무원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당해년도 국가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 대외경제부문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제36조)은 대외경제(교역)업무를 “국가 또는 국가의 지도·감독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명시

○ 『대외경제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 외국과의 경제협력관련 각종 협정 체결,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 사업 추진, 무역(수·출입)관련 전반적 업무, 해외시장 조사활동 등으로 대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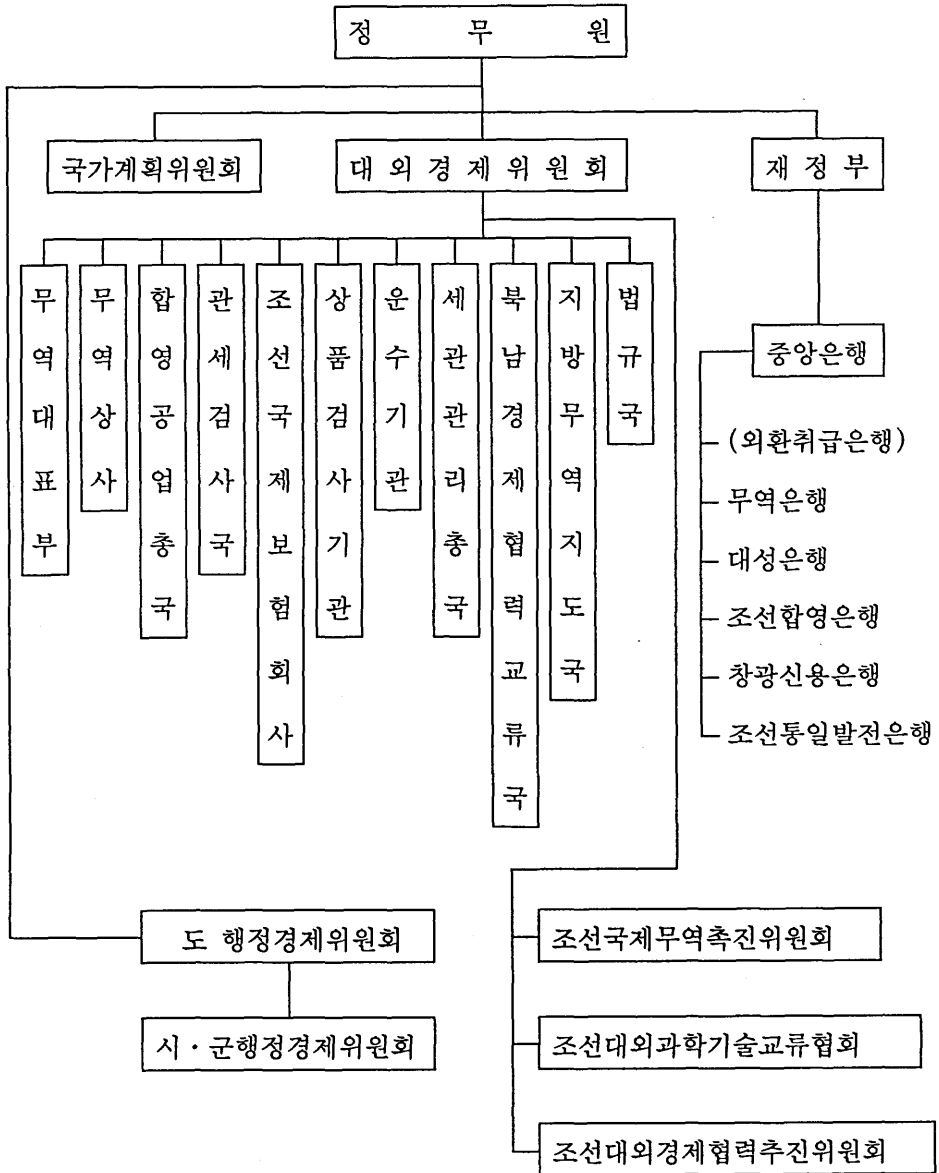
○ 또한 『대외경제위원회』안에는

- 북한과 공식적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무역활동을 촉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관반민’형태의 기구로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있음.

○ 한편 '92. 12월경 발족된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 「대외경제위원회」의 지도·감독아래 운영되었던 “민간차원의 대외경제기구”로서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92. 2월)이후 남한기업인들의 방북초청 및 교역업무를 전담하였으나, '95년 상반기에 해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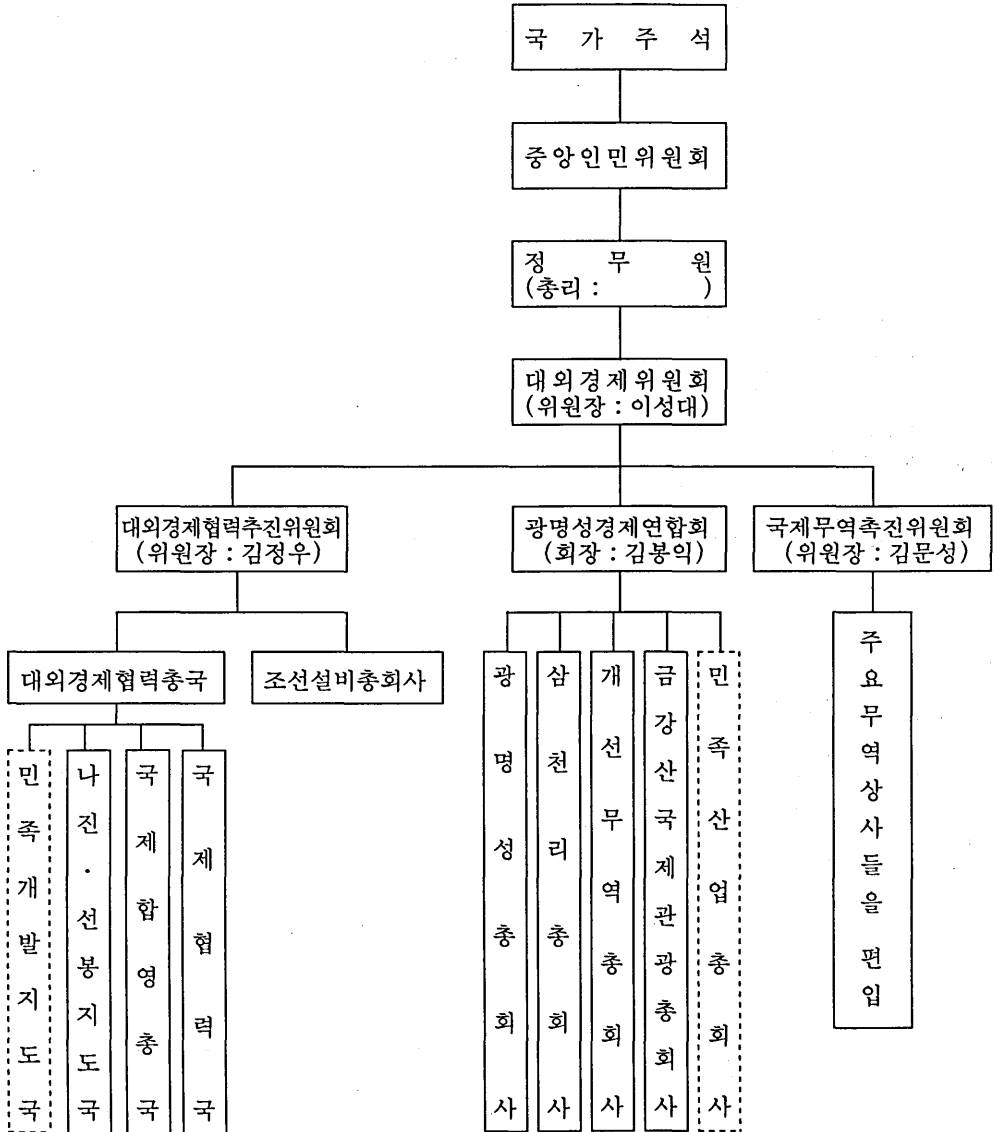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기구 체계도〉



(2) 대외경제기구 재정비·개편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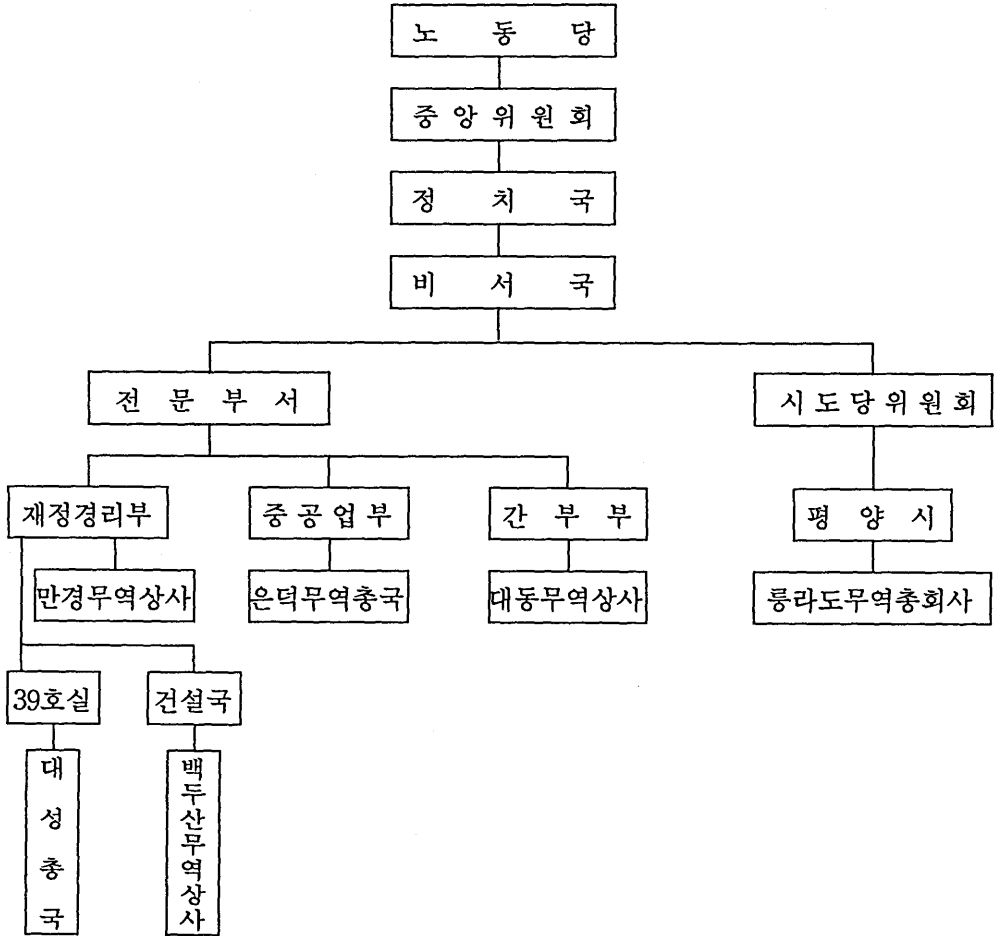
-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외경제부문을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 그 기능과 역할에 소극적 의미를 부여해 왔음.
- 그러나 '90년대 접어들어 기존의 ‘자립경제’ 정책만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한계적 상황 판단에 따라 ‘무역 제일주의’를 선택, 일대 방향전환을 시도하면서 주민생활 향상문제와 직결되는 경공업·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외무역의 확대·발전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경제정책 수행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였음.
- 따라서 북한은 ‘무역 제일주의’의 관철을 위해
 - 수출품 생산기지 확충 및 수출품 질 제고, 해외시장의 적극 개척 등 최단기간내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총체적 역량을 경주하는 가운데
 - 특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수행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구를 개편, 재정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같은 상황에서 '95년 상반기에 다시 관련기구들에 대해 개편을 단행
 -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업무는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고
 - 정무원내의 각부·위원회 소속 무역상사(회사)들을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투자유치’ 업무와 ‘무역업무’를 분리, 업무수행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97년 상반기에는 노동당 39호실소속의 조선광명성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4개 총회사를 「광명성경제연합회」로 개편하였음.

〈정무원산하 대외경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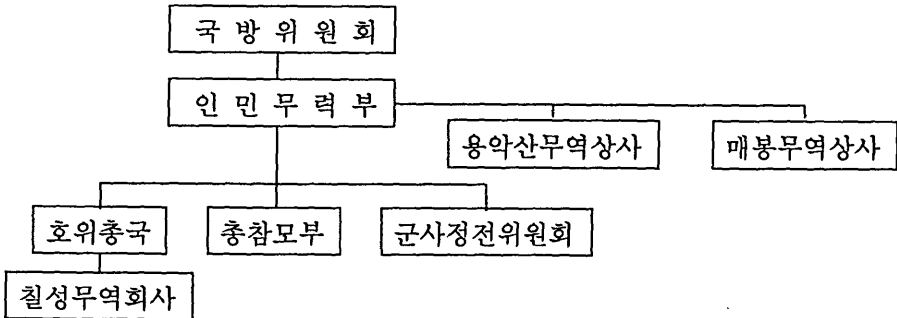


※ 본 도표는 대외경제업무 수행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정무원 조직·편제상의 공식기구는 아님

〈노동당산하 대외경제기구〉



〈국방위원회산하 대외경제기구〉



(3) 주요기구

(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영문명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재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식약호	COMT PYONGYANG	T L X	36044 DMC KP
전화	3816054, 3814277	F A X	3814440, 3814494
업무내용	<p>○ 당초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지역과의 경제무역교류의 촉진기관이었으나 1993년부터 경제무역관계의 촉진·교류·조정등 외국과의 통상관계 전반의 창구기관 역할 담당</p> <p>○ 정무원내 각부·위원회 소속 무역상사(회사)들을 산하에 두고 있음.</p>		
특기사항	<p>◎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 이성대)소속</p> <p>◎ 위원장 : 김문성</p> <p>서기장 : 오태봉, 김일근</p>		

(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영 문 명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 재 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 식 약 호		T L X	5229 DTC KP
전 화	313974, 345200, 3816163	F A X	3814498, 3814630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과의 경제분야 국제협력사업,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창구기관 ○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전반에 관한 조사, 광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활동 ○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 업무 ○ 산하에 대외경제협력총국, 조선설비총회사를 두고 있음.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 이성대)소속 ◎ 위 원 장 : 김정우(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 임태덕, 이주연, 김응렬 		

(다) 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

영 문 명	The Society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ter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소 재 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 식 약 호	TAEOKISUL PYONGYANG	T L X	36059 DGS KP
전 화		F A X	
업무내용	○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 촉진		

(라) 대외상품검사위원회

영 문 명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소 재 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식약호	KFCIC PYONGYANG	T L X	5972 TECH KP
전 화	3816252	F A X	
업무내용	○ 수출입 화물에 대한 공적 검사기관으로 검사, 감정업무 담당		
특기사항	◎ 남포, 흥남, 청진, 나진, 해주, 송림, 원산 등 주요 항에 支局 운영		

(마) 수출입검수국

영 문 명	The Export & Import of Tally Bureau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 재 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식약호	GEMSU PYONGYANG	T L X	
전 화		F A X	
업무내용	○ 수출입 화물에 대한 공적 검수기관		
특기사항	◎ 주요항에 설치된 지국의 전신약호는 다음과 같다. 남포 CENSU NAMPO 해주 CENSU HAEJU 흥남 CENSU HEUNGNAM 송림 CENSU SONGRIM 청진 CENSU CHUNGJIN 원산 CENSU WONSAN 나진 CENSU RAJIN		

(바) 국제전람사

영 문 명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orporation		
소 재 지	평양시 중구역 Central District, Pyongyang		
전식약호	ZENRAM PYONGYANG	T L X	5952 ZR KP
전 화	3811782, 3811854	F A X	
업무내용	○ 북한상품 국외전시 및 외국상품 북한전시 주관		

(사)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해체)

영 문 명			
소 재 지	평양시 동대원구		
전식약호		T L X	
전 화	816-161	F A X	814-622
업무내용	○ 재미, 재일동포 대상 해외합작사업 추진 및 대남경협 추진		
특기사항	<p>○ '91년 6월, 최정근을 회장으로 하여 발족</p> <p>○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보통강호텔 등 70여개 무역회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음.</p> <p>○ 당초 당 39호실 소속으로 노동당의 직접 통제하에 미수교국과의 교역·투자활동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p> <p>— '94. 6월경 조직정비에 착수, 정무원 총리 직속기구로 변경</p> <p>※ '95년초 해체되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대외경제협력총국」 소속 4개의 활동기구중 하나인 「민족개발지도국」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측됨.</p>		

라. 북한의 외국인 투자 여건

(1)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사항

(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개념

- 북한은 외국인 투자법 제2, 3조에서 “외국투자가 및 공화국영역밖의 조선동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세가지로 규정
- 합영기업은 북한측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운영하며,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며,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고,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함.
- 이들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투자비율, 경영권, 투자가능지역 등인데, 우선 투자비율은 합영 및 합작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기업은 100%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기업이며, 합영기업은 투자지분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공동으로 경영하며, 합작기업은 전적으로 북한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외국인기업은 당연히 외국측이 가지며, 투자가능지역은 합영 및 합작기업은 북한전지역이 가능한 반면,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됨.

〈합영·합작기업의 비교〉

	합작기업	합영기업
근거법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및 시행세칙
법인형태	북한의 법인(기존회사도 가능)	북한의 법인(신규회사의 설립)
경영권	북한측이 생산 및 경영	투자지분 및 계약에 따라(이사회)
투자형식	공동투자(지분비가 없음) 건별계약, 생산품이 중요	공동투자(투자액/지분비 동일) 회사설립이 중요
이윤배분	합작제품 배분원칙	지분비에 따라 배분
청산	유한책임, 투자비율에 따라 청산	북한측으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감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율

- 지난 '85년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세칙을 마련하였고, 외국인 소득세법도 갖추었으며, 이후 1993년 4월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94년 2월에는 동법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규정을 완성
-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등이 있음.
-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상은 북한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가 기본임. 단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기업은 14%, 북한이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임.
- 한편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

득세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를 적용.

○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 ▲ 차관 및 북한에 유리한 자금대부의 경우 이 자금의 이자소득
- ▲ 장려부문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에서 10년이상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 봉사부문(서비스)은 10년이상 운영할 경우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 6천만원(북한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의 기업에 대해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및 한편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50%를 반환해 주며, 하부구조건설사업의 경우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는 북한내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북한내에 1년이상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 얻은 소득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표〉

월급여(원)	세 율
2001~3000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1~4000	40원+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001~5000	90원+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001~6000	150원+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001~7000	220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001~8000	300원+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1~9000	390원+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001~1만	490원+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만1이상	640원+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증여에 의한 소득세율표〉

증여소득액(원)	세율(%)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 이상	12

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대상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 등
- 소득세율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보수 2천원이하는 면제,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은 20%,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 소득은 25%임.
- 재산세는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임.
 -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년간 면제
-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상속을 받았거나, 북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북한밖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 부담.
 - 상속재산은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 등

〈재산세의 세율표〉

구 분	세율(%)
건 물	등록값의 1
선 박	1.4
비 행 기	1.4

〈상속세의 세율표〉

월급여(원)	세율(%)
25만1~ 35만	6
35만1~ 60만	8
60만1~ 80만	10
80만1~120만	12
120만1~250만	14
250만1~400만	16
400만1~800만	18
800만1~2천만	20
2천만1~5천만	25
5천만1 이상	30

- 생산물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거래세 부담
 - 과세대상은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상업부문은 상품판매액, 교통운수·금융·관광 등의 서비스부문은 서비스 수입금 등이며, 수출상품은 전액 면제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서비스부문은 50% 감면
-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거주 또는 소재하는 지역의 재정기관에 지방세 납부
 -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등

〈거래세의 세율표〉

부 문 별	세 율(%)
생 산 부 문	1.5~20(술·담배 등 제한품목 21~60)
상 업 부 문	2
봉 사 부 문	2~4

〈지 방 세 액 표〉

등록면허세	세액(원)	자동차이용세	세액(원)	
1. 기 업 등 록 : 설립등록	건당 5백~1천	승 용 차 비 스 12석까지	대당 50 90	
	변경등록			40
	취소등록			40
2. 광업권등록 : 처음등록	광구당 1천2백	13~30석 30석이상 화물자동차	100 120 적재톤당 20	
	변경등록			10
	취소등록			10
3. 어업권등록 : 처음등록	건당 1천	특 수 차 자동차전차	대당 50 20	
	변경등록			10
	취소등록			10
4. 기술자면허증 발급	건당 20~1천			

(2) 북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

- 기업의 해외투자가 당사국의 정책에 크게 좌우됨은 사실이나 투자결정 요인중에는 정책적인 투자유치 제도외에도 정치·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조세, 행정, 관세 등 법제적인 면)
 - 지정학(location)적인 면
 -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요구 수준
 - 운영경비(Operating Cost)면
 - 장기발전 가능성(국내경제, 내수시장, 투자가간의 시너지 효과 등)
 - 비시장적 외부요인(non-market external risk) :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가) 북한의 비교우위 부문

1)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

- 우선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베트남과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에 비해서는 낮음.
 - 외국투자기업의 북한내 운영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는 일반지역에서 중국이 평균 33%, 베트남이 15~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북한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북한이 14%로 중국의 1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

문과 같은 장려부문의 경우 중국이 15%인 반면 북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업소득세는 중국에 비해서 1~8%의 세율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적으로 보아서는 북한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기준액수로 보면 양국에 비해 북한이 유리함.

- 북한이 월 2천북한원(약 950US달러)이하는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초과누진세를 4~20%까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중국원(약 145US달러)까지 면세이고 5~45%까지 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월 300만동(약 253달러)이하 면세, 10~50% 초과누진세를 적용

※ 그러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감안하면 북한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북한은 1년이상 거주자의 국외소득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외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

	북한	중국	베트남
기업소득세율	일반지역25% 자유경제무역지대14% 투자장려부문10%	일반지역33% 경제특구15% 투자장려부문15%	일반지역15~20% 수출가공구 제조업10% 서비스15% 투자장려분야 15%~50%
개인소득세	2천원/월(약950US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4~20%	800元/月(약145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5~15%	300萬동/月(약253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10~50%
관세	수입 면세(합영), 수출용 수입 면세(외국인기업)	수출용 수입 면세	수출용 수입 면세
관세감면	3년간 면제, 2년간 50%	2년간 면제, 3년간 50%	2년간 면제, 2년간 50%

2) 지정학(location)적인 측면

- 지정학적인 측면은 기업이 해외투자시에 투자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 남한기업의 입장에서 북한지역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일본의 동북아 진출 통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유리
 - 북한의 경우 해상수송뿐아니라 육상수송을 통하여 북한시장은 물론 신속하게 중국과 러시아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북방향(North Orientation) 육상교역의 중요한 요충지역
 - 또한 동일민족, 동일언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겪게 되는 의사소통문제 해결
- 장기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시장의 중요성 증대
 - 중국, 러시아,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과 일본의 기술 및 자본이 결합되면 여타 경제블록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방 또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한반도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을 감안하면 북한시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음.

〈지정학(location)적인 면〉

	북한	중국	베트남
위치	동북아 경제권	중화(화남, 화교)경제권	인도차이나 경제권
한국과의 관계	동일언어, 동일민족 육상연결	의사소통문제, 이민족, 현재는 해상연결	의사소통문제, 이민족, 해상연결

(나) 북한의 비교열위 부문

1) 비시장적 외부요인(non-market external risk)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개방의 의지가 권력 상층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이를 외국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최근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은 개혁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래의 주체사상,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장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비시장적 외부요인(non-market external risk)>

	북한	중국	베트남
정치적 안정성	외형상 안정유지 개혁의지가 없음 김정일권력승계 지연	안정유지 개혁·개방의지 강함	안정유지 개혁·개방의지 강함 개혁성과 부진의 경우 혼란예상
사회적 안정성	경제난 심화로 주민 불만 상존 강제적 안정상태	빈부격차의 심화 안정유지	개혁에 대한 관심고조 안정유지

2) 장기발전가능성(국내경제, 내수시장, 투자가간의 시너지효과 등)

- 중국의 12억 인구, 베트남의 6천9백만 인구에 비해 북한은 2천2백만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 설비노후화에 따른 설비대체의 필요성은 강하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 등이 어려운 상황
- ※ 다만 통일이라는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북한시장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임.

〈장기발전가능성〉

	북한	중국	베트남
대외개방정책	부분적 개방시도 시장개방 의지는 약함	點→線→面の 개방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의지가 강함	도이모이(刷新)추진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의지가 강함
내수시장	인구(93년말):22.6백만 1인당GNP(93년):904달러	(93년말):11억85백만 (93년):450달러	(92년말):69백만 (93년추정):220달러

3) 사회간접자본 요구수준

- 3국 공히 사회간접자본의 요구수준은 비슷하지만, 외국기업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 향하게 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Infratructure) 요구수준〉

	북한	중국	베트남
수송망	도로, 철도 비교적 양호	연안지역은 양호	도로, 철도는 시설낙후 수상운송 중심
전력	원유 및 석탄부족으로 전력난 심각	비교적 양호	시설부족으로 문제
항만	설비노후, 하역능력 부족	비교적 양호	해상운송의 요충지로 서 외국기업의 관심 대상
대규모 프로젝트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개발(추진 실적 별무)	활발히 추진중	일부 추진중

4) 기업운영비용

- 임금의 예를 보면 중국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65~250달러 정도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50달러 전후임
 - 북한은 70달러 전후로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기업의 투자를 위해 조사되어야 하는 제반 비용들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을 택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우위를 가지기 힘든 상황
 - 중국 및 베트남의 개발전략과는 달리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택하고 있기 때문임.

〈운영경비(Operating Cost)면〉

	북한	중국	베트남
고용	노동기관을 통함	직접고용, 노동계약 기본, 고용서비스회사	직접 고용가능, 고용서비스 회사 위탁
임금	70달러/월 전후 요구	국영기업 임금의 120~150%, 65~250달러/월	최저임금 30~35달러 자국기업 20~25달러
토지사용	임대기간 최고 50년 양도 및 상속 가능	40~70년, 양도가능	최고 50년, 연장가능
임대료	1~45달러/㎡·년	1~60달러/㎡·년	0.5~25달러/㎡·년
원자재구입	국내구입불가능시 수입 국내구입도 국제가격 기준 외화지급	같은조건시 국내구입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외화 또는 국내화폐지급	국내의무조달비율 없음

(3) 투자시 유의할 조건

(가) 체제의 특수성과 정보의 부족

○ 체제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계획경제의 경직성

- 북한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의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관료의 부패, 근로자들의 근로동기의 부족 등으로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다른 투자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음.

○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부족

- 북한사회는 폐쇄적이므로 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축적한 투자경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투자의 하부구조 낙후

○ 에너지

- 에너지, 특히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여 공장가동율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한 예고없는 정전과 전압의 불안정은 기계설비의 가동에 애로로 작용

○ 철 도

- 북한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는 98%가 단선이며 시설도 일제시대 건설된 것이 대부분으로 화물수송에 비효율적임.

○ 항만시설

- 대부분의 항구가 컨테이너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접안능력도 1~2만톤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편

○ 기타 전화, FAX 등 통신시설

- 폐쇄사회의 특성상 북한의 통신시설은 매우 취약하고 운영도

군사시설과 일부 특권층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그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다) 기업경영의 제한

- 생산제품의 시장확보 애로
- 외화부족 현상으로 인한 과실송금의 불확실성
- 계획경제의 특성상 북한내 원자재 조달계획의 애로
-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생산지연 등 비용발생
- 북한이 투자하는 현물 및 산업재산권의 정당한 평가문제
- 기업경영에 대한 지방관리나 관청의 간섭과 직업동맹의 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문제

Ⅱ.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국내법 절차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과 『시범적 경험』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에 관한 제반활동임.
 -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에 관한 제반활동이란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중 단순한 인적교류, 교역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원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됨.
-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

한 권리

-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②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지역 주민이 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③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원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④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 경제협력사업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으나 경협을 위한 투자보장 등 남북한간에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을 고려, '94년 11월에 발표한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내용에 따라 우선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투자규모와 가능분야 제한은 현재의 남북관계 특수성과 대북투자 리스크 등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내용

□ 기본방향

- 북한 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축적으로 경협 확대
 - 북한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에 따라 민간차원 「기업인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시범경협」 우선 허용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분야별 경협 본격 추진」 등으로 확대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상호 보완과 호혜의 바탕으로 남북 모두의 실리를 도모하도록 추진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조치내용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단, 대규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 투자설명회,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 사업 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설비, 무상반출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 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시범적 경험 범위〉

- ①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분야
 - 봉제의류, 완구, 양말, 가방, 신발, 피혁, 전자부품 등
- ②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식·음료 품 및 생활용품 분야
 - 라면, 국수, 된장, 고추장, 조미료, 설탕, 식용유, 비누, 치솔, 치약 등
- ③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분야
 -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시범적 고용 등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른 추진방향

-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
- 시범경협외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험 활성화
- 장기적으로 SOC, 식량,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가. 기본방침

- 시범적 경험 범위내에서 우선 실시
 - 시범적 사업의 해당 여부는 투자규모, 업종, 사업성격,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
 -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는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진출지역을 한정하여 승인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협력사업자」 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정을 통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한편,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사업은 가급적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실시할 사업만 협의·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하도급화하여 특정기업이 대북진출의 창구화하는 것을 방지함.

※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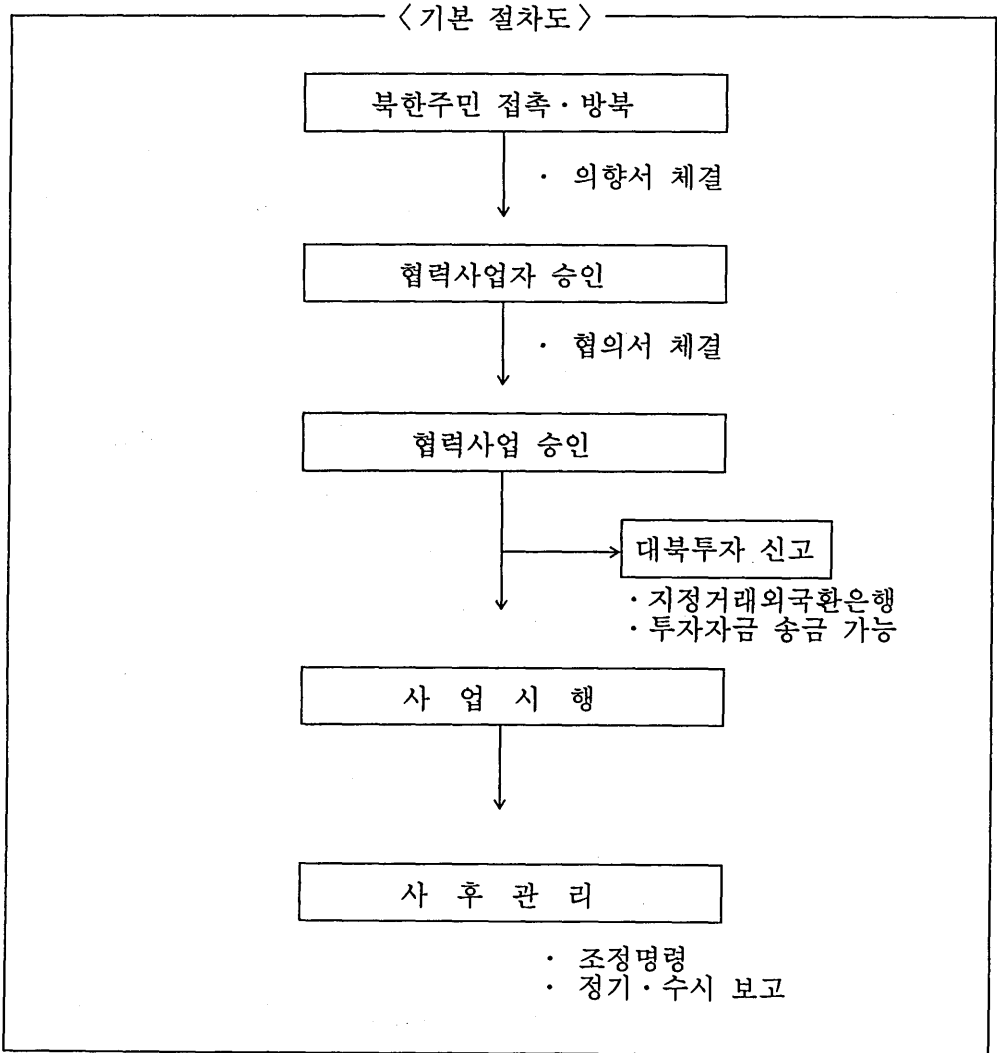
- 소규모 단순 기능직 고용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규모, 직종을 확대
- 노동자의 탈출, 망명요청, 노사갈등 등에 대한 처리책임 및 해결방법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북한당국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추진
- 투자지분,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등을 통해 국내 모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보된 현지법인에 대하여 허용
- 임금, 복지후생 등은 현지국에 고용되어 있는 제3국 인력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물 등 부가급제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의 경우

- 대북투자를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의 사업목적 변경 등을 통하여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모기업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추진
 - 국내 모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라도 이사회 구성·의결권 등을 통해 국내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 가능
 -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 승인은 현지법인을 통해서 해야할 필요성, 현지법인 또는 국내 모기업의 사업실적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적 경험」 범위내에서 허용
 -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가 무질서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강화
- ※ 투자목적의 허위신고, 대북투자 목적 이외의 자금전용 등을 통하

여 사실상 승인을 받지 않고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조

나. 세부 추진절차



※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 및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자의 경우 「국내 모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함.

(1) 접촉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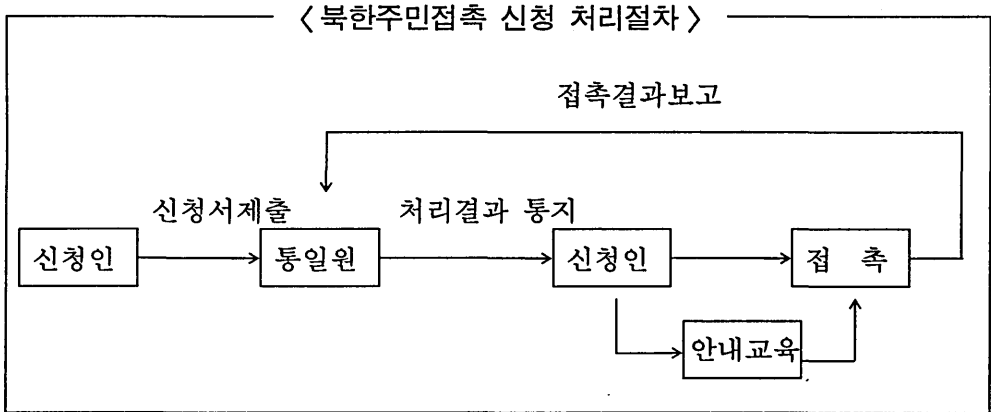
- 북한방문 협의, 남북 물자교역 상담 및 계약, 북한지역에서의 투자상담 등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 포함)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함.
-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 모두 접촉에 해당됨.

(2) 접촉 승인신청

-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우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 서류 제출 가능
 -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고 접촉이 가능
 - ※ 재외국민이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자를 말함.
- 법인 및 단체의 접촉은 접촉성격에 따라 대표자나 직원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3국 국적자를 중개인·대리인으로 하여 접촉(간접접

촉)하는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됨.



- 〈구 비 서 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회사소개서 등 참고자료 1부
 - 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1부

(3) 접촉 안내교육

- 통일원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을 것을 승인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안내교육은 북한주민접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것임.

-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주민접촉시 행동요령, 기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됨.

(4) 접촉 결과보고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승인유효기간 내에서 북한주민과 접촉이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매 접촉 후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접촉 결과보고는 접촉후 10일 이내에 6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은 특정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임.

(5) 승인 유효기간 및 재신청

-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최장 2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접촉 가능
 -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등 경제적 목적의 접촉의 경우 통상적인 승인 유효기간은 1년 정도임.
- 승인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 계속 협의 진행 가능
 -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며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한 생략 가능(단, 기승인받은 공문의 사본첨부 필요)
- 승인 유효기간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를 벗

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접촉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6) 사후 보고

-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받은 것으로 같음함.

〈사후신고 사항〉

-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③ 외국에서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④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⑤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북한방문

(1) 북한방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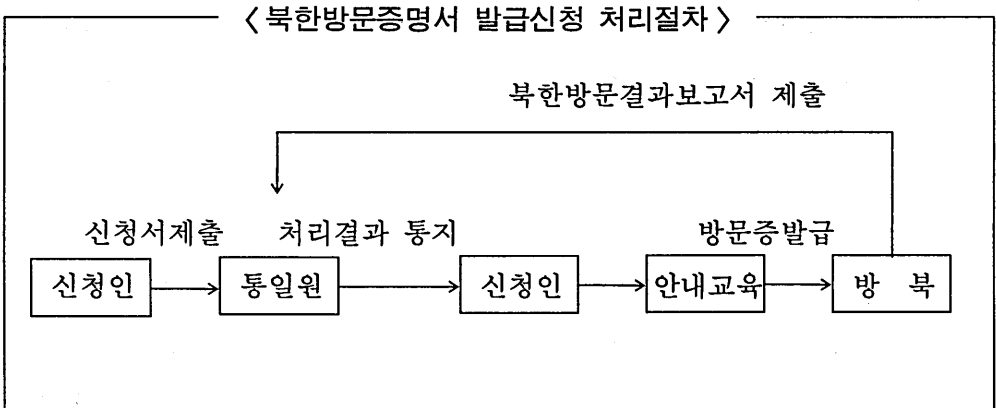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

서를 소지하여야 함.

-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며,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직접 왕래는 물론, 제3국을 경유한 북한지역 방문의 경우도 포함됨.

(2) 북한방문 승인신청

-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반 구비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우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 해외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함은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의 경우와 동일함.
- 북한방문 신청서는 방북목적의 타당성, 북한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 귀환보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됨.
-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방북자 교육을 이수한 후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구 비 서 류 〉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진(반명함판 4매)
- 초청장(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증서류) 1부
- 방문계획서 1부
- 기타 참고서류
- 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3) 방북자 안내교육

-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는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내교육 시간은 1일 8시간 정도임.
-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위한 것임.
-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최근 북한동향,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대북투자 협의시 유의사항, 북한의 투자환경 등)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4) 방문기간

-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최장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적정기간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처음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5) 출입 심사

-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이루어짐.
-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원 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6) 방문 결과보고 및 방문증명서 반납

- 방문일정에 따라 북한지역을 방문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 결과를 귀환후 1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에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원에 반납

(7)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함.
 - － 재외국민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이며,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학생, 교환교수 등 단기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신고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 귀환후 10일 내에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협력사업자 승인

(1) 개 요

- 북한측 사업상대자와의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의향서(양해각서 포함)체결 등 협력사업 시행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함.
-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북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추진예정분야에 있어 국내기업의 경험, 사업의 타당성, 추진능력, 전문성 등 확인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만이 대북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협력사업 승인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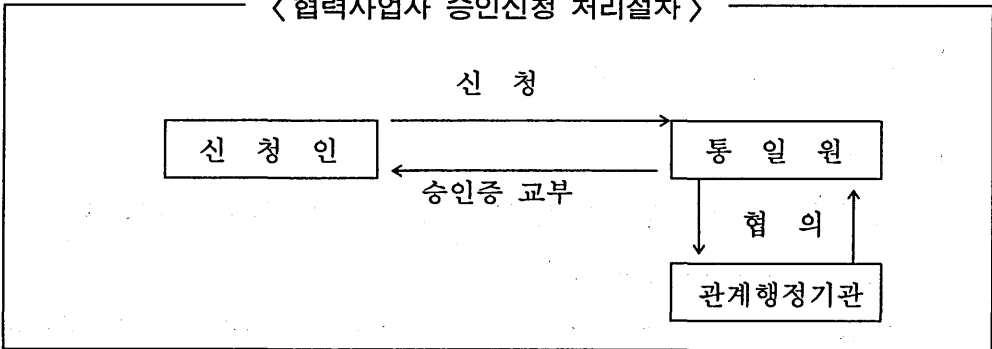
(2)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

-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원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 신청서는 본인(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함이 원칙이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대리신청 및 우편접수도 가능함.
- 통일원장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후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하게 됨.

-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문적 타당성 검토 필요시 남북경협조정위의 사전 검토·조정 가능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함.
 - 처리기간 연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가능
-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되며, 승인시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함.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처리절차〉



〈구 비 서 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최근 3년이내 해당분야 사업실적 증명서류 1부
-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
- 북한측 당사자의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의향서 사본 1부
-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1부

※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시

- 북한 노동력을 고용할 현지법인의 설립인가서 및 상세설명서(모기업과의 관계, 자금조달 및 운용, 임원구성, 조직, 사업실적 등)추가

※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시

- 현지법인 설립인가서, 현지법인의 상세 설명자료 추가
 - 대북투자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인가서 제출 불요
 - 현지법인 상세 설명서는 국내 모기업과의 관계, 자금 조달·운용, 대표자 및 임원 구성, 사업실적 등을 포함

※ 구비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① 사업실적 증명서류

- 추진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사업 및 수출입 실적(남북교역실적 포함)
 -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 예외 인정
- 사업실적 인정범위(경협처리규정 제4조)

- ① 제조업 : 해당 협력사업의 주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수출입 실적, 생산 직관련 기계·설비의 생산·수출입 실적
- ②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 해당 협력사업과 직관련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 ③ 기타 특수업종 : 통일원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고용의 경우

- 국내 모기업이 제3국에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한 실적
- 북한 인력을 실제 고용할 현지법인이 외국 노동자를 고용한 실적

※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의 경우

- 국내 모기업이나 현지법인의 사업실적을 모두 인정

② 의향서

- 사업추진에 관한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합의로 정형화된 표준양식은 없음.
- 의향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공동추진키로 제기된 사업들의 목록
- 제기된 사업중 우선적으로 「협의서」체결을 추진할 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사업개요에는 사업내용, 규모, 장소, 당사자, 추진방식, 추진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 포함)

○ 작성명의

- 우리측 : 사업수행 당사자 또는 사업수행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북한측 : 사업수행 당사자 또는 대외경협창구(대외경협창구일 경우 사업수행 당사자 확인 필요)
※ 사업수행 당사자는 자기명의로 최종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③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 사업추진을 위한 개괄적인 설명형식으로 특정양식을 요구하지는 않

으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함.

○ 개요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5조)

- 사업목적
- 추진경위
- 사업수행 방식
- 사업 상대방
- 진출지역
- 생산품목
- 생산능력
- 예상 투자규모 · 투자비율
- 자금조달 방법
- 제품판매 계획
-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3) 승인요건 및 검토기준

(가) 법적승인요건(시행령 제30조)

- ① 남북교류 · 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②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 ·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세부 검토기준(경협처리규정 제5조의 승인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

- ① 「시범적 경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의향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실현가능성)
-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사업실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능력 보유 여부
 - 사업실적 인정범위는 경협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판단
 -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자격·능력은 국내법에 의해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경우 조건 구비여부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능력·대외신용도·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을 종합하여 판단
 -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 거래처가 아닐 것
- ④ 사업추진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⑤ 국내 동종업계의 사업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지 여부
- ⑥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의 경우, 남북간 직접투자로 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서 해야할 필요성 검토
 - ※ 제3국 공동진출의 경우, 제3국 법·제도상 실현가능성 여부 검토

(4) 사전 조정

(가) 정부 직접 조정

- 협력사업자 조정 : 과당경쟁이 예상되거나, 사업의 성격상 특정 협력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향

서 체결전 협력사업자 조정을 함.

- 의향서 조정 : 필요한 경우 의향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그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절한 조정을 함. 다만, 정부에 승인부담이 발생하는 사전조건 제시는 지양
- 승인단계에서 조정 : 의향서 체결전 조정이 안된 경우 또는 조정과 다르게 의향서가 체결된 경우 승인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내용은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하여 대북투자 질서 유지

(나) 민간업계 자율적 조정

-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별 조합, 협의회 등 민간자율조정기구 활용

(다) 조정기준 및 방안(수개기업 경합시)

- 남북교류협력 기여도, 남북간 산업구조 조정 기여도, 제3국 수출 기여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의향서 체결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등 유도

(5) 협력사업자의 수시방북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 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수시방북을 허용함.
- 협력사업 추진목적의 수시방북 승인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북한방문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이외에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방북기간 동안의 방북예정서(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가 실제 방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방북시마다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을 첨부한 북한방문신고서를 방북 7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함.
 - 또한 방북자는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후 북한방문증명서를 통일원에 반납하여야 함.
-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의 취소·변경이 가능함.
- 기타 수시방북의 절차, 승인 처리기간, 안내교육, 출입심사, 결과보고 등은 일반 북한방문 승인의 경우와 동일함.

협력사업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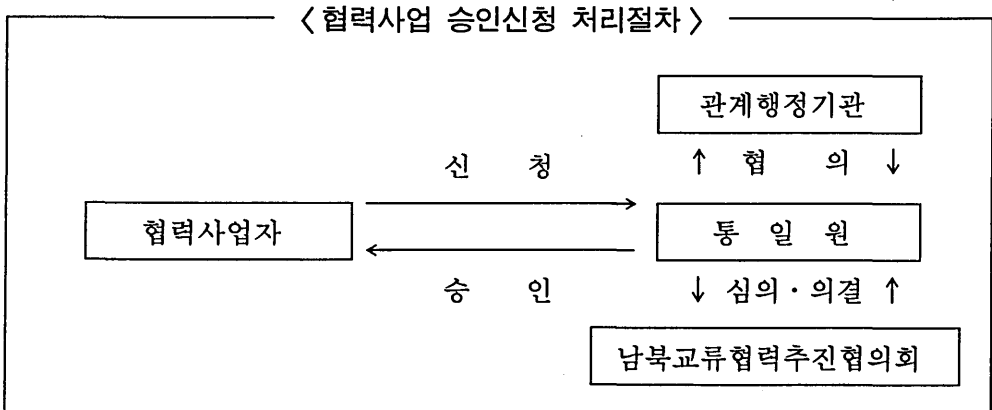
(1) 개 요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북한측 당사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협력사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협력사업 승인은 협력사업자가 실제 북한과 협력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대북투자 실행이 가능함.

(2) 협력사업 승인절차

-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7조제1항).

- 승인 신청시 본인(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이외에 대리신청 및 우편접수도 가능함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과 동일함.
- 통일원장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후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만으로 승인 가능
- 협력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함.
 -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지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구 비 서 류 〉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1부
-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단독투자인 경우)

※ 구비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①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제1항)

-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 생산 및 판매 계획
- 조직 및 인력 계획
- 추진일정 계획

②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 동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 조직, 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③ 협의서

- 협의서는 합의서, 계약서 등 용어를 불문하고 북한측 사업상대자와 추진예정 사업에 대하여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남북한 모두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당사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관장하는 대외경협창구 등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
 - 다만, 북한의 단순 경협증개창구와의 협의서 작성은 불인정
-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제3항)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 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 방법, 자재조달 방법
- 당사자의 임무
-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효력발생 조건
-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④ 북한당국의 확인서

- 확인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나진·선봉 지대당국 등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대외경제위원회, 시·도 행정경제위원회 등
- 신변 안전보장에 대한 확인은 북한의 사회안전부가 직접하거나 대외 경제기관 등이 사회안전부의 위임을 받았음을 명시 필요
 - 단순 남북경협 중개 창구, 당·군부는 작성명의자로 불인정
-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제4항)

-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⑤ 기 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작성시에는 투자 예정지역의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단독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업의 기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하는 기계설

비 및 주요 자재 명세, 투자자의 소재국 해당기관이 발급한 투자허가에 대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공업소유권·기술비결·저작권 설명서, 거래은행이 발급한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등임.

※ 세부 서식 및 포함내용은 「부록」 참조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기재 요구 가능

(3) 승인요건 및 검토기준

(가) 법적승인요건(시행령 제35조)

- ①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③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④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 ⑤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세부 검토기준(시행령 제34조 및 경협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중심으로 판단)

- ① 승인 및 투자시점에서 △시범경협 해당 여부, △협력사업자로서 자격·능력, △과당경쟁 여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 ②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i)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 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

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ii)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iii)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③ 「협의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④ 「북한당국의 확인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 투자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i) 사업의 수익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자금 조달·운용의 적정성

ii) 투자대상지역의 수송·전력·통신·용수 등 산업입지 조건, 산업입지 조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해결방안 확보여부 검토

⑥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체제 개방에 대한 기여도 등

(4) 사전 조정

(가) 직접 조정

○ 「협의서」 조정 : 협의서를 최종 체결하기 전에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함.

※ 협의서(계약서) 체결시 반드시 양측 당국의 승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사전조정

○ 승인단계에서 조정 : 협의서 체결전 조정이 안된 경우 또는 조정과 다르게 협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승인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내용은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함.

※ 「협력사업」 승인의 경우, 북한당국의 확인서와 북측기업과의 최종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협의서가 사전 조정되도록 함.

(나) 민간업계 자율적 조정

- 「협력사업자」 승인검토시 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민간업계 자율조정도 가급적 협의서 최종 체결전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함.

(다) 조정기준 및 방안(수개 기업 경합시)

- 조정기준
 - 남북교류협력 기여도(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처리, 인적 왕래 등)
 - 남북간 산업구조 조정 기여도(유휴시설 이전 등)
 - 제3국 수출 기여도 등
-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등 유도

대북투자 신고

(1) 개 요

- 정부는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포함)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 규정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재경원고시 1995-23 호, '95. 6. 28 시행)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
- 이에 따라 대북투자를 위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행위가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거, 외국환관리법상의 별도 허가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만으로 투자금의 대북송금이 가능함.
- 또한, 북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영업

활동자금 포함) 지급의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가능

- 북한내 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지급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가능

(2) 대북투자 신고 절차

○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 현지법인의 경우, 신고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 통보

〈대북투자 신고 구비서류〉

- 대북투자신고서 1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사본) 1부
-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사본) 1부
-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사본) 1부

(3) 투자금의 송금 등

○ 대북투자 신고를 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현물투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북한 노동력 고용에 따른 임금지급은 남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현지법인이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북한 또는 현지법인으로 송금 가능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내에 설치한 지점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기금 대신 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투자금 등의 회수

-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
 -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

(5) 현지금융

- 거주자 또는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장의 인

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북한의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함.

○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함.

-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필요

○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다. 사후관리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제3국 투자에 비해 투자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체제의 이질성,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초기단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부의 조정은 불가피함.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음(법 제18조제1항).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필요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정대상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①협력사업 및 사업관련 행위가 남북교류·협력 및 기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협력사업 승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투자규모, 투자비율, 경영참가권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국내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북한내 생산제품의 반입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 협력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복측 사업상대자와의 협력사업시행내용을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8조제2항).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로부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고용의 경우에는 외무부를 통해 현지공관에 북한 노동력 고용승인 사실을 통보하고, 현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 보고하여야 할 사항(시행령 제38조제1항, 경협처리규정 제12조)

-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 사업의 착수
- 사업진행상황
-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 회사 등의 규약
-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 취득 사항
-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
-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고시한

- 사업진행상황 :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
- 회사 등의 규약 : 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증명서 취득사항 :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사항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협력사업 보고서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외국환 관리상의 사후관리

-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 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 후 1월 이내
- ②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 ③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 ④ 청산보고서 : 청산 후 2월 이내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경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북한내 지점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①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 순이익금 처분내역 :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
- ② 지점설치 완료보고(등록증 사본 첨부) : 설치 완료후 20일 이내
- ③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취득·처분내용 보고 :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
- ④ 반기별 영업활동상황 보고 :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북한내 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점의 폐지를 재경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① 당해 북한지점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 ③ 기타 당해 북한지점의 현지 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및 승인취소

(1)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 변경승인은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과 협력사업 승인사항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가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31조제1항).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의 절차, 처리기간 등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구 비 서 류 〉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신청서 1부
- 구협력사업자승인증(원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구분 변경시에는 영 제30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증명 서류 1부

〈 협력사업 변경승인 〉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제1항).
- 협력사업 변경승인의 절차, 처리기간 등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구 비 서 류 〉

- 협력사업 변경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자 승인증 사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투자지역 변경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제2, 3, 4호의 서류 각 1부

(2)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사유

-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 ②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협력사업자 승인요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 ④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⑥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절차

-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30일 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예정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준용법규 및 특례, 제재조치

(1) 준용법규

-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법률을 준용함.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준용법률(법 제26조제3항)

- ① 외국환관리법
- ② 외자도입법
- ③ 한국수출은행법
- ④ 수출보험법
- 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⑥ 법인세법
- ⑦ 소득세법
- ⑧ 조세감면규제법
- 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용법률(영 제50조제3항)

- ①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세기본법
- ③ 국세징수법
- ④ 부가가치세법
- ⑤ 특별소비세법
- ⑥ 주세법
- ⑦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⑧ 교육세법
- ⑨ 식물방역법
- ⑩ 가축전염병예방법

(2) 특례규정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자에 관한 보조금 등 지원(법 제24조)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남북간의 반출·입 물품 등에 대한 과세(법 제26조제2항, 시행령 제51조)

-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함.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함.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함.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함.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함.

(다) 남북한 방문자 휴대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시행령 제52조)

-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함.

(라)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시행령 제53조)

-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법인세법) 내지 제8호(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을 준용함.
-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제재조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1항).

- 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 ③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북한주민 접촉,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 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의 미수범도 처벌함(법 제27조제2, 3항).

-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 ②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28조, 양벌규정).

3.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가. 사무소 설치 개요

(1) 사무소의 개념

-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함)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을 말함.

(2) 사무소의 기능

- 국내기업 등의 북한지역 사무소는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사무소」와 같이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영리적 활동을 주로 함.

-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 가능

— <사무소 업무활동 범위> —

- ①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 ②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 ③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 북한은 이와 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94. 2. 21, 정무원결정 제8호)

나. 기본방침 및 승인범위

(1) 기본방침

- 사무소 설치 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에 한정
 - 사회·문화분야 사무소 설치는 추후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허용여부 검토
- 주재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북한당국 보장이 전제
- 북한의 나진·선봉 이외 지역에도 사무소 설치 유도

(2) 승인범위

- △국내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비영업적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알선, 자문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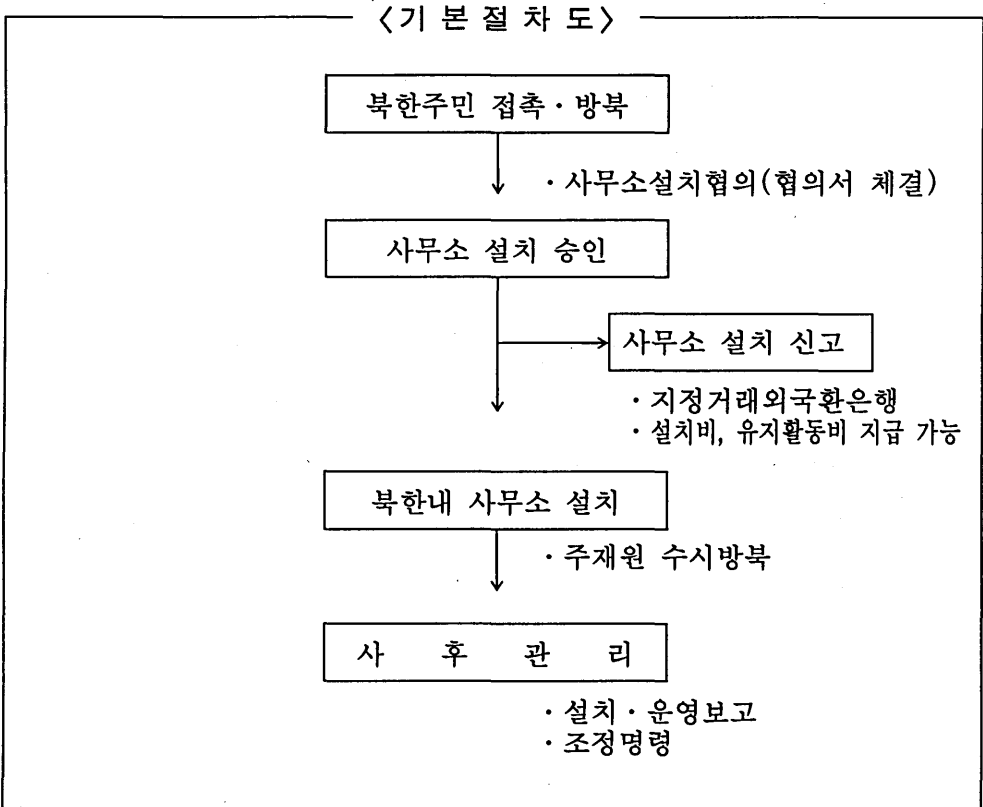
력사업의 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무소의 업무활동 범위는 국내 모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기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능에 한함.

○ 주된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승인 필요

- 합병·합작 등 주된 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소 설치에는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국내 모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보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 지역에 사무소 설치시, 국내 모기업이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세부 추진 절차

북한주민 접촉·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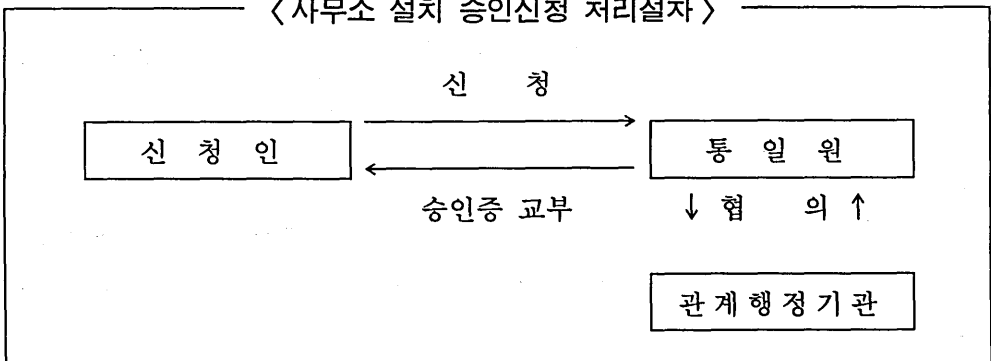
※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세부 추진절차중
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부분 참조

사무소 설치 승인

(1) 사무소 설치 승인 절차

-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통일원장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후 내부검토를 거쳐 지침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무소 설치의 승인을 하게 됨.
- 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무소설치 승인증」을 교부함.

〈사무소 설치 승인신청 처리절차〉



〈 구 비 서 류 〉

- 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서 1부
-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1부
-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1부
-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협의서) 1부
-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1부
-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등에 관한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구비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① 업무활동계획서

-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는 지침 제2조에서 정한 업무활동 허용범위 내에서 당해 사무소가 직접 수행할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② 협의서

- 협의서는 사무소 설치조건 등에 대해 북한 관계당국이나 대외경협창구등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한 서류로서 사업당사자간 계약관계와 구분 필요

○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무소 개요(설치장소, 기능, 기간, 주재원 명단 및 현지 고용인원 관련사항 등)
- 사무소의 설치·운영 관련사항(통신 등 업무연락 수단, 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통관방법, 사무실 및 주재원 주택 보장방법 등)
- 협의서의 효력발생 조건(당국의 승인 전제)

○ 작성 명의

- 우리측 : 실제 사무소를 설치할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
- 북한측 : 북한법령상 사무소 설치 승인권한이 있는 당국 또는 대외경협 창구로서 공식기관
예) 나진·선봉 지대당국, 정무원 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

③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등에 관한 북한당국의 확인서

-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내 사무소의 상주 유효기간 동안의 우리 주재원 및 관계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남북간 왕래, 통신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확인 명의 : 해당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식기관
 - 대외경제위 등 사무소 설치 승인기관이 사회안전부 등의 위임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확인을 하는 것은 가능

(2) 승인요건 및 검토기준

(가) 법적승인요건(지침 제4조)

- 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 ②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③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세부 검토기준(북한지역 사무소설치 지침 제3조의 승인신청서류를 중심으로 판단)

- ① 국내 모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자격·능력 여부 검토
 - △국내법에 의한 설립인가·등록 여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 거래처 해당 여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본능력 등 평가
 - ※ 제3국에서 경제목적의 현지법인,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험 여부 고려
- ② 사무소가 △남북경제교류협력 목적인지 여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기능이 비영업적인지 여부 검토
- ③ 「협의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남북간 왕래, 통신보장 등에 관한 북한 당국의 확인 여부

(3) 사전 조정

- 협의서 체결이전 단계에서 협의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함.

- 협의서 체결전 조정이 안된 경우 또는 조정과 다르게 협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승인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내용은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
- 조정대상 : △주재원의 규모 및 구성, △사무소 설치지역 및 설치기간, △업무활동 범위, △사무소 철수시 청산 절차, △분쟁 해결방안 등
- 수개 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동일지역·동일업무로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 공공기관, 공익단체, 정부투자기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
 - 민간경제단체, 조합 등 다수의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 중소기업공동사무소 등 2개 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남북교역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기업 또는 경제단체

(4) 사무소 상주기간 및 주재원의 수시방북

(가) 사무소 상주기간

-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상주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상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상주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주기간 연장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임.

○ 상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 상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1부
-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나) 주재원의 수시방북

- 통일원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허용함.
- 사무소 파견 주재원의 수시방북 승인신청시에는 일반적인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이외에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이 실제 방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방북시마다 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시방북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재원은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방북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음.

사무소 설치 신고

(1) 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

- 북한내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대북송금 등이 가능함.
- 북한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한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2) 북한사무소 설치비 지급

- 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현물반출의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의 경비를 말함.

- ①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 ③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④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⑤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 비용

○ 설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 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무소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함.

(3) 북한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

○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됨.

○ 기본경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① 전기, 가스 및 수도료
- ② 전신전화료
- ③ 동산 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 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④ 제세공과금
- ⑤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 ⑥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기타경비는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다만,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내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

보고사항·조정명령

(1) 사무소의 보고사항

-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북한 현지 법규에 의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사무소설치 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자는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사무소 주재원의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

〈반기별 활동상황 보고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 ②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 ③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 ④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 ⑤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 ⑥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2) 사무소에 대한 조정명령

-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단, 사무소의 설치 승인취소 등 중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조치 가능

내용변경·폐지

(1) 사무소의 내용변경 신고

-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설치목적,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임.
- 북한사무소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 사무소의 폐지

- 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원장관에게 폐지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사무소 폐지 신고시에는 폐지사유 및 폐지시기 등을 기록한 소정양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폐지신고를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임.

- 북한사무소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그 폐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북한내 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사무소의 폐지를 재경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① 당해 북한사무소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기타 당해 북한사무소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북한사무소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 사무소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사무소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사무소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 관리상의 사후관리

- 북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북한사무소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북한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사무소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사무소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채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사무소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4.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 개 요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관한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출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은 남북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반출·입 자금대출, 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
-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손실보전, 미결제채권 인수등의 방법으로 지원 가능

자금종별	지 원 한 도	지 원 조 건
반출·입 자금대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매 사업별로 결정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 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이자율 : 연 5.0% 기 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 관련 주식, 채권, L/C, L/G, P/N등
손실보조	교역·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의 90% 범위 내	업무취급수수료 : 0.1% 대금결제 및 사업기간 이내
채무보증	피보증인과 용자은행간 계 약상 보증한도 범위 내	이자율 : 통일원장관이 정함 기 간 : 당해거래 용자기간에 30 일 가산기간 이내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 관련 주식, 채권, L/C, L/G, P/N등
금융기관 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 내	
금융기관 용자자금 미결제 채권인수	용자취급 내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 채 권액 범위 내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북한원화 인수매각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주민왕래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무 상
문화학술 체육협력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무 상
민족공동 체 지원	남북한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정에 따름	

나. 손실보조

(1) 손실보조 대상

○ 기금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조 대상은 교역을 하는 자이거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한함.

○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제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투자원본,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배당금인 경우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2) 손실 인정범위

○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로

하고,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로 함.

-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에 따른 손실의 경우에는 주식 및 지분의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손실보조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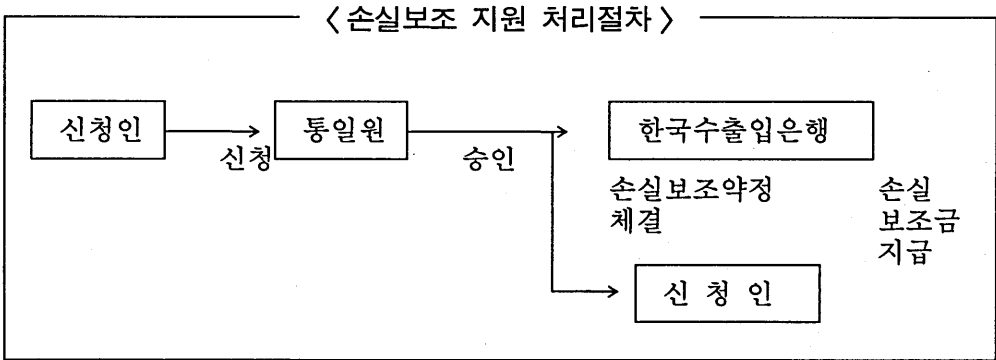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조약정 효력발생(업무취급수수료 납부)이전에 발생한 손실
-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손실보전을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청 및 약정 절차

-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손실보조약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동 신청을 받은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 신청자(이하 “피약정자”)와 손실보조약정

을 체결하게 됨.

- 피약정자는 업무취급수수료(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1부를 교부받음.



- 〈 구 비 서 류 〉
-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2부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 계약서 사본 1부
 - 손실보조약정 신청액 산출명세표 1부
 - 신청인,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1부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4)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피약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취급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약정 범위 내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피약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이 취소·해지될 수 있음.

-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약정체결 당시에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아니한 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 및 손실보조약정을 위반한 때

-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교역이나 용역의 제공·송금 등의 개시 자체가 피약정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5) 약정의 내용변경

- 피약정자가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와 당해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일원장관은 약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함.
 - 다만, 손실보조약정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손실보조약정 절차 준용

○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서에 약정 변경을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 교부 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함.

(6) 손실보조 신청 및 지급범위

○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 비 서 류 〉

- 손실보조신청서 2부
-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1부
-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손실보조금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범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함.

－ 다만, 통일원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음.

(7) 피약정자의 의무

○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약정 체결 후 준수하여야 할 약정 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물품의 반출·용역 제공·자금의 송금 등 이행통지
- ② 손실위험 발생 통지 및 미회수금의 회수 노력
- ③ 기금수탁관리자의 대위권 행사시 필요한 협조
- ④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 제출(매 6개월마다)
- ⑤ 손실보조금 반환 : 반환 통지후 7영업일 이내 납부
- ⑥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 보고 및 조사 협조

다. 자금대출

(1) 자금대출 대상

- 기금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간에 반출·입을 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임.
-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가능함.

(2) 대출비율 및 조건

- 대출비율 :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반출·입 및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 범위 이내임.
- 대출조건

- 반출·입 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통일원장관이 제정경제원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음.

- 대출형식 :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
 - ※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함.
 - ※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 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음.
- 이자율 : 연 5%
 - ※ 이자는 연 1회이상 정기 후취 원칙
- 대출기간 :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원금상환 : 연 1회이상 정기분할상환 원칙
 - ※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음.
- 담 보 : 남한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 제공
 - ※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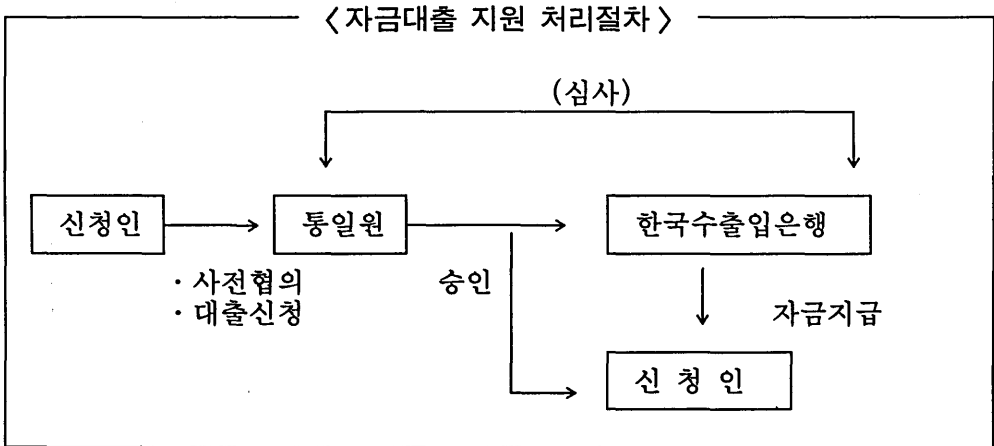
(3) 대출절차

① 사전협의

-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출 신청에 앞서 통일원장관에게 구비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함.

② 대출신청

-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일원장관은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함.
- 통일원의 지원방침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받을 수 있음.



〈자금대출 사전협의를 구비서류〉

- 자금대출사전협의를 2부
- 사업내용
- 대출신청 예상내용
- 추정수지명세서
- 차주, 제작자, 사업 상대자의 개요
- 협의서 또는 입찰안내서 사본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4) 대출금 상환

-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야 함.
- 북한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한 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기한 내에 조기 상환하여야 함.

-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 : 2 영업일 이내
- 물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 : 15일 이내

- 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정한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연체이자 징수

(5) 대출받은 자의 의무

-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정한 기한 내에 기금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식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4월 이내
-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증빙서 첨부) : 회수일로부터 2월 이내
- 청산예정보고서 : 청산결정 후 1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일로부터 2월 이내
-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해당 사실 발생 후 2월 이내

- 대출받은 자는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채무보증

(1) 보증대상

-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반출·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②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임.

※ 의뢰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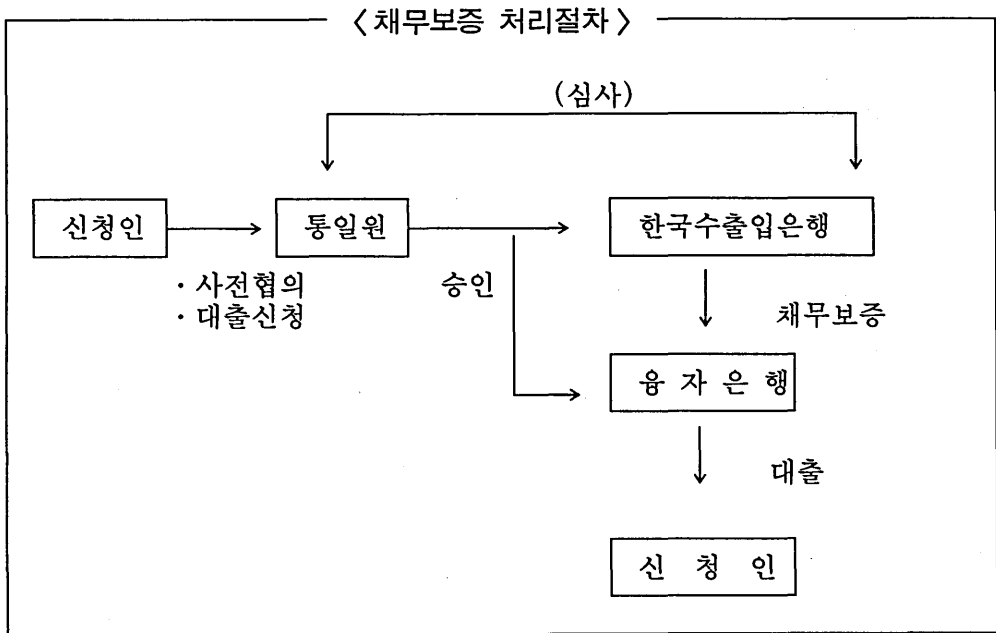
※ 수혜자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2) 보증조건 및 방법

- 보증형식 : 증서에 의한 보증
 - 보증금액 : 의뢰인과 수혜자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 내
 - 보증기간 :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보증 및 대지급 요율 :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
 - 담 보 : 남한내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 제공
- ※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음.

(3) 보증절차

-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한 후 기금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함.
 -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 지원방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하게 됨.
- ※ 통일원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융자은행 앞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함.



〈 구 비 서 류 〉

- 채무보증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 기체결의서 1부
- 담보제공 계획서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마. 금융기관 지원

(1) 금융기관 손실보전

-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②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 손실

③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 금융기관은 남북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환전업무, 융자 및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등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손실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있어 손실의 계산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 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2) 금융기관 융자자금 및 미결제채권 인수

○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융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남북한간에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대금결제계좌(청산계정)의 설치에 따른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자금을 집행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조건은 통일원 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3)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승인받음으로써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 가능함.

※ 북한원화의 인수·매각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바. 지원유형간의 관계

- 손실보조는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후적 손실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강함.
- 교역관련 손실보조약정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지원의 기본적 요건으로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의 직접계약과 직접수송에 의한 직 교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임.
- 자금대출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자금대출 한도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사업유형별로 결정되므로 대출신청 전에 자금대출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대출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함.
-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손실보조약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기금지원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여부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임.

Ⅲ.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북한내 절차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형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세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의 설립절차를 달리하고 있음.

가. 합영기업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나. 합작기업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다. 외국인기업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가능)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유형〉

구 분	투자방식	경영방식	분 배 방 식		중 국 三資기업
			이 의	손 실	
합 영	공 동	공 동	공 동 (지분율)	공 동 (지분율)	합 자
합 작	공 동	단 독 (북한측)	공 동 (계 약)	단 독 (북한측)	합 작
외국인기업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독 자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가. 투자당사자의 범위, 분야 및 우대 특혜조치

(1) 투자당사자의 범위

- 북한은 외국과의 합작 및 합영에 참가할 수 있는 북한측 투자당사자로서 개정 합영법('94. 1), 합영법 시행규정('95. 7) 및 합작법('92. 10)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과거의 합영법 및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투자당사자를 회사, 기업소로 한정하였다가 기관, 단체를 당사자로 추가했는데 특히 기관을 추가한 것은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적소유와 개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개인은 투자당사자가 될 수 없음.

-'95년 2월 제정된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가 된다.”(제3조)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외국측 투자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가능성 문제는 '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개정합영법에서는 외국측 당사자로서 외국의 법인,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과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 명시되어 일본, 미국 등지의 재외교포(기업)는 물론 한국기업들도 투자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92. 10월의 합영법 시행세칙이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합영법 및 외국인투자법 등 상위법들과 상충되어 한국기업의 투자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을 가져다 주었으나 '95년 7월 합영법 시행규정에서 '공화국 영역밖의 조선동포'라고 규정하여 한국기업도 합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따라 북한은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측 투자당사자 관련규정의 변천 및 한국기업의 투자가능성〉

법 규 명	외국측 투자당사자	한국기업의 투자가능성	비 고
합영법('84. 9)	① 외국법인 및 개인 ② 재일상공인 등 해외 거주하는 조선동포	×	-개정합영법 제정으로 사문화
합영법 시행세칙('92. 10)	① 외국법인 및 개인 ② 해외 거주 조선동포	?	-개정합영법, 외국인 투자법 등 상위법들과 상충 -합영법 시행규정 제정으로 사문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92. 10), 개정합영법('94. 1)	① 외국법인 및 개인 ②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	
합영법 시행규정('95. 7)	① 외국법인 및 개인 ②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	-합영법 시행세칙 대체

○ 그러나, 중국이 대만동포 투자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투자당사자를 둘러싼 북한의 규정들은 상황변화와 해석여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 투자분야

○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가능 분야, 투자장려부문 및 동 부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투자금지 또는 제한대상을 총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도 각각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북한 외국인투자법규상의 가능분야, 장려 및 금지·제한 부문〉

구분	가능분야	장려부문	금지 또는 제한부문
외국인 투자법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첨단기술 등 현대적 기술과 국제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민족경제발전과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상 낙후되고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부문
합영법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 등	첨단기술, 현대적 기술도입 부문, 국제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 부문,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금지 :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 국가안전과 사회공동이익 저해 부문 제한 : 환경보호기준 저해 부문, 설비, 생산공정 낙후 부문, 단순자원수출 부문, 경제적 효과 적은 부문
합작법	수출제품 생산분야, 선진 기술 도입·생산분야, 관광, 서비스분야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 투자부문, 국제경쟁력 높은 생산 부문	규정 없음
외국인 기업법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식료가공, 피복가공, 일용품 공업 및 운수, 서비스 분야 등	규정 없음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낙후된 부문 금지

-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94. 3월 제정)에서는 제한·금지분야를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단독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합영이나 합작기업보다 엄격한 승인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외국인기업의 설립요건(다음 조건 중 한가지는 만족시켜야 함.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8조)

- ①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함.
- ②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③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함.

▶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분야(동법시행규정 9조)

- ①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문
- ②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문
- ③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
- ④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은 부문
- ⑤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

▶ 설립금지부분(동법시행규정 10조)

- ① 출판, 보도, 방송부문
- ② 체신부문
- ③ 이밖에 국가가 금지한 부문

(3) 우대·특혜조치

- 외국인투자법은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보장, 은행대부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첫째, 국가가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과세가 면제되며, 둘째, 생산부문에서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 그다음 2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결산이윤의 14%가 적용되는 등 특혜를 받음.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서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을 1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합병법에서도 장려부문과 북한 밖의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병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설립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합병 및 합작기업인 경우와 외국인기업인 경우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합병 및 합작기업의 경우 대체로 북한측 투자자가 맡아 하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해당기관 또는 투자자가 선택한 북한의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1) 합병기업 및 합작기업

- 먼저 합병기업의 설립신청절차의 경우, 외국기업과 합병을 하려는 북한측 투자자는 외국투자자와 계약서초안을 작성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이후 북한 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 설립의 심사승인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시행정경제위원회, 이하 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Feasibility Study), 외국투자가측의 신용확인자료 등을 첨부해 합영기업설립신청서를 제출함.
- 제출시 모든 서류들은 조선어(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외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합영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

기 관	심사 및 승인대상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경제지대밖에서의 합영기업 설립 - 지대내의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부문, 하부구조건설 이외의 부문중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되는 합영기업 설립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 (지대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내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 대상, 하부구조건설 이외의 부문중 총투자액 1천만원까지의 합영기업 설립

※ 지대당국이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심의 대상인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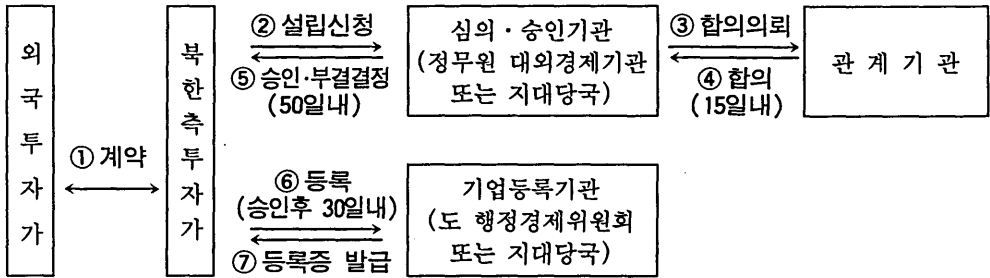
- 심사승인기관은 기업설립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서를 관계기관에 보내어 합의(협의)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계획기관 : 총투자액, 현물투자, 생산과 생산물처리, 소요조건,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 ▶ 재정기관 :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투자액, 자금원,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 ▶ 과학기술행정기관 :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자료
 - ▶ 환경보호기관 : 환경보호관련 자료

- 관계기관은 합의의뢰서를 15일 내에 검토하고 합의서를 심사승인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기간내 송부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내에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리게 되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결정을 내린 경우 합영기관은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에 합영기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날이 기업설립일이 됨. 합영기업은 기업등록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재정기관과 세관에 각각 세무등록 및 세관등록을 해야 함.
- 한편 합영계약서 및 기업의 기본규약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합영계약서 및 기업기본규약의 주요내용〉

합 영 계 약 서	기 본 규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명칭, 소재지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기업조직 목적과 업종, 경영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지분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지분의 양도 -이사회의 조직, 운영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 외국인종업원수, 노무관리 -직업동맹조직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구입, 기술이전 -재정부기 및 외화이용 -결산과 이윤분배, 기금조성 및 이용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명칭, 소재지 -합영당사자명, 소재지 -기업조직 목적과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존속기간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지분,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지분의 양도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식, 통지방 법, 기업의 법정대표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재정부기, 노무관리 -결산과 분배, 기금 -해산과 청산 -기타

〈합영기업의 설립절차〉



- 합작기업의 설립절차는 합영기업의 경우와 비슷하며 ① 북한측 투자자의 해당 상급기관과의 사전협의 ② 외국투자자와 합작계약 체결 ③ 정무원대외경제기관(또는 지대당국)에 합작신청서 제출(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첨부) ④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⑤ 기업소재지의 도(시)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승인후 30일 이내)

(2) 외국인기업

- 현재 북한은 외국인기업의 설립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투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신청을 지대당국(시행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기업설립신청서를 시행정경제위원회(지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Feasibility Study), 투자자의 자금신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인기업설립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이 함.

〈외국인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

기 관	심사 및 승인대상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대외경제위원회)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부문 및 하부구조 건설 이외의 부문중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기업설립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 경제위원회(지대당국)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부문 및 하부구조건 설 이외의 부문중 총투자액 1천만원까지의 기업설립

- ※ 1. 투자규모가 적더라도 투자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음.
 2. 지대당국이 대외경제기관의 심의대상인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부결결정을 내려야 함. 설립이 승
 인되면 외국투자자는 30일 내에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해
 야 하며 기업등록일이 외국인기업설립일이 됨. 그리고 기업등록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함.

다. 출 자

(1) 출자대상물 및 평가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법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대상물로 화폐자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토
 지이용권, 기술비결(이하 know-how) 등 재산과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출자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
 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에서는 출자물의 평가는 “투자자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

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약간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합병법시행세칙에서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know-how 등으로 출자할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병주관기관(즉 합병공업총국)이 평가한데 따라 합병당사자들이 합의로 결정한다”고 하여 북한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가격결정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합병법시행규정의 제정으로 이러한 조항이 소멸되었다는 점임.

- ▶ 화폐재산 : 해당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경우

- ▶ 부동산 :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이용권 이전수속을 끝낸 경우

- ▶ 부동산외의 현물재산 :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구내에 이전시킨 경우

- ▶ 재산권 :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관할에 넘긴 경우

- 출자지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가 단독투자이며 합병기업은 합병당사자들이 합의로서 정하며 합작기업의 경우 합병기업과 마찬가지로 될 것임.

(2) 등록자본의 규모 및 출자기간

- 합병법시행규정에서는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총투자액은 합병기업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이라는 것임.

-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 재산의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중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북한은 등록자본의 규모를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해두고 외국인투자자가 정해진 등록자본의 투자를 일정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자본의 규모는 합영기업의 경우 총투자액의 30~70% 이상이며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총투자액의 30~60% 이상

〈등록자본의 규모〉

	총투자액 규모	등록자본 /총투자액(비율)
합 영 기 업	300만원까지	70% 이상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외 국 인 기 업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900만원까지	410만원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2,7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950만원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7,700만원까지	2,600만원

※ 금액은 북한원화

- 한편 등록자본은 증자시킬 수는 있으나 감자시킬 수는 없음. 등록자본을 증자할 경우에는 기업설립 승인기관과 합의하고 합의가 되면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함.

- 합병법과 외국인기업법은 합병당사자 및 외국인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출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합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등록자본의 출자기간은 출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자본의 15%를 하고 다음번 투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내에 해야 함.
-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설립승인서는 효력을 잃게 됨.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가. 경영관리조직

- 합병기업의 주요한 경영관리조직으로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관리기구 및 재정검열원이 있음(합영법 및 시행규정)
 -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단독으로 경영하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100% 단독 투자하여 단독경영을 하는 관계로 해당 법규에서 경영조직에 대한 규정을 거의 두고 있지 않음.

(1) 이사회

- 합병법 및 시행규정에 의하면 합병기업의 최고의결기관은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의 구성, 회의 및 임무 등은 다음과 같음.

구 성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2명과 이사들

(부이사장과 이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결정)

임 기 :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 4년

임명방법 :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이 사 장 : 합영기업의 법정대표

부이사장 : 이사장 사업 보조, 이사장 결원이나 1개월 이상 없을 경우 대리

회 의 : 정기회의(연1회 이상)와 임시회의(필요시 소집)가 있음.

회의는 전체 이사 2/3 이상 참가시 성립

임 무 : 기업의 중요문제 토의 결정

(기본규약 수정보충, 기업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등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 증자, 출자지분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 변경,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위원회 조직 등)

- 이사회는 통상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안건을 채택하나 기본규약 수정보충, 출자지분 양도, 존속기간 연장, 기업 해산 등에 대한 결정은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함.
- 한편 합작법에 의하면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하여 동 기구에서 신기술도입과 제품품질 제고, 재투자 등 합작 경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음.

(2) 경영관리기구

- 합영기업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며 경영 관리기구의 구성은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및 필

요한 관리성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병법시행규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음. 기업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병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음.

- 기업책임자는 합병기업의 경영대표권을 행사하며 기본규약,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고 경영결과에 대해 이사회 앞에 책임을 지게 됨.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이사회 회의에서 정함. 기업책임자는 이사회 성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 한편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부책임자가 업무를 대리함.

(3) 재정검열원

- 합병기업은 재정검열원을 두며 합병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정검열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의 임무는 첫째, 합병기업의 경영활동을 일상적으로 검열하고 둘째, 이사회 회의에 제출되는 재정부기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임. 재정검열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재정검열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가능하며 경영관리성원은 재정검열원이 될 수 없음.

나. 구입·판매 및 수출입

- 북한 합영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과거 합영법시행세칙에 명시되었던 경영활동 필요물자의 북한내 구매원칙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우선 원칙이 새로 제정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합영법시행규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요물자의 수입과 생산제품의 북한내수판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만큼 북한내 구매 및 판매와 관련, 외국기업은 북한의 연간경제계획과 연계를 가져야 하며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하는 것임.

(1) 북한내 구입 및 판매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북한내에 판매할 수 있음. 북한내 구입이나 판매를 하려면 북한의 해당기관을 통해야 하며 이경우 정해진 기간내 해당기관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함.
- 수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명,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대상, 수량과 질 및 기술적 요구, 가격 및 지불조건, 계약이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 등이 있음.
- 또한 합영기업은 경영용 물자를 북한 상업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 북한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음. 이때 받은 북한원은 노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 등으로 사용가능함.

- 외국인기업의 북한내 구입, 판매도 합영기업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나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상업망을 통해 북한기관·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인기업의 북한내 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첫째, 지대내 판매의 경우 상품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지대 밖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가격과 지대내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함.

(2) 수출입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체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반출입승인만을 받으며 관세가 면제됨. 반출입승인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결정을 내려야 함.
- 한편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물자의 수입을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 합영기업의 생산용 물자, 생산제품의 수출입가격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함. 외국인기업의 경우도 합영기업과 거의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음.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규정은 북한내의 외국인투자기업(합작, 합영 및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그간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해온 노무관리를 종합화시켰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음.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 및 시행규정상의 노무관련 규정을 종합정리한 것임.

가. 채용 및 해고

-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음. 외국인을 관리인이나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면 정무원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노동알선기관과 노동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함. 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충당하며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력으로 보충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 알선기관 또는 주무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계약에 의해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은 채용단계에서 노동력의 질을 선별 채용하는 데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동맹, 해당 노동알선기관과 협의 후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음.
 -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다른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② 기업의 경영조건과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노동력을 축소하거나 기업해산을 선포한 경우
 -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어긴 경우
-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노동과정에서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②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수유기에 있는 경우
-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할 수 있음.
 -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
 - ② 전공이 맞지 않거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해고 및 사직시 노동알선기관에 1개월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함. 외국투자기업은 해고 또는 사직(개인사정의 경우는 제외)하는 종업원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함.
- 근무연한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노임액과 일한 연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함.

나. 노동시간

- 외국투자기업 종업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주노동일수는 6일, 주노동시간은 48시간임.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할 수 있음.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안에서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특히 폭행, 협박, 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의 노동을 강요할 수 없음. 그러나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동맹과 합의하고 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명절과 공휴일에 휴식을 주고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매년 관혼상제를 위한 특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왕복여행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각 휴가별 연간일수는 다음과 같음.
 - ▶ 명절 및 공휴일 : 15일
 - ▶ 정기휴가 : 14일
 - ▶ 보충휴가 : 7~21일
(보충휴가는 지하, 고열 및 유해노동부문과 중노동부문, 정신적 피로를 많이 받는 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직제, 직종에 따라 주는 것임.)
 - ▶ 산전·산후 휴가 : 150일
 - ▶ 특별휴가 : 1~3일

다.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보수에는 기본노임과 함께 보충적인 노동보수형태인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해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규정된 노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노임기준과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을 자체로 정함.
-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기본노임기준은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종전 환율로는 약 110달러(자유경제무역지대 약 80달러)가 됨.
- 기본노임외에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보조금, 휴일 및 야근시 가급금 및 휴가비 등에 대한 규정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휴업보조금 :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직업훈련)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함.

$$\text{즉, 휴업보조금} = \frac{\text{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text{시간당 노임액}} \times \frac{\text{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text{또는 시간}} \times 60\%$$

▶ 휴일 및 야근시 가급금 :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외 연장작업, 야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함. 한편 명절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시간외 연장작업을 한 경우에는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함.

▶ 휴가비 :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함.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 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

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됨.

-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매달 날짜를 지켜야 함.
-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함.

라. 사회보험·사회보장

-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종업원들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사회보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과 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함.
-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보조금에는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1년 이상의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종업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근하였을 때 일시적 보조금을 지불함.
 - ①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기거나 부상당하여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내고 결근하였을 때
 - ② 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치료예방기관에서 발급한 간호진단서를 내고 결근하였을 때
- 일시적 보조금은 종업원의 월노임과 근속노동연한에 따라 계산함. 6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은 월노임의 60%, 3년부터 6년까지 근속한 종업원은 50%, 3년이하 근속한 종업원은 40%로 계산함. 일시적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 월기본노임이 달라졌거나 근속노동연한이 달라졌을 때에는 달라진 월노임과 근속노동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계산함. 일시

적 보조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줄 수 없음.

- 외국투자기업은 여성종업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기간에는 산전산후 보조금을 주어야 함.
- 산전산후보조금은 근속노동연한에 관계없이 월노임의 100%를 주어야 함. 외국투자기업은 또한 종업원이 사업상 이유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장례보조금을 주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에게 보조금과 연금을 지불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고 은행기관에서 해당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함.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지급하고 후에 청산받아야 함.
 -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서류를 내어 수속한 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매월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함.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함. 사회보험기금은 외국투자기업과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됨.
-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음.

마. 직업동맹의 활동

-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종업원은 모두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짐. 북한의 직업동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근본적으로는 노동당의 외곽조직임.
- 외국인투자법령에 나타난 직업동맹의 주요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을 교양함.
 - ② 종업원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 및 과학지식보급을 하며 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함.
 - ③ 외국인기업과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함.
 - ④ 외국인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조정함.
 - ⑤ 종업원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함.
- 단체계약에서는 노동조직, 노동보호와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며 단체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두 당사자가 서명한 조건에서만 효력을 발생함. 단체계약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함.
- 단체계약은 노동채용계약의 기초로 됨. 단체계약에서 정한 노동조건 또는 노동자의 대우에 대한 기준에 위반되는 노동채용계약은 체결될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매월 직업동맹에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직업동맹에 대한 활동자금 지급기준〉

종업원수	활동자금지급기준
500명까지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2%
501~1,000명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1.5%
1,000명 이상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1%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관리

-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성격상 및 외화부족으로 매우 엄격한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취하고 있음. 외화관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단편적으로 다루다가 93년 1월 외화관리법, 94년 6월에는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함. 여기에서는 외화관리법 및 그 시행규정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외화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가. 개 관

- 북한이 규정하는 외화에는 ① 전환성 외국화폐 ②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 등 외화유가증권 ③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외화지불수단 ④ 기타 외화자금 ⑤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등 귀금속 등이 속해 있음.
 - 현재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전환성외화로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독일 마르크,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캐나다 달러, 오스트리아 쉐링, 호주 달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통화와 북한원간의 환율은 다음과 같음.

〈주요국통화와 북한원화의 환율〉

(1995. 6. 8 기준)

국 명	단 위	은 행 고 시		계 좌 이 체	
		매 입	매 도	매 입	매 도
U.S.A	1 USD	1.98	2.0696	2.000	2.0200
U. Kingdom	1 GBP	3.1631	3.2896	3.1790	3.2108
Germany	1 DEM	1.4105	1.4000	1.4175	1.4317
Japan	1 JPY	0.0235	0.0245	0.0236	0.2030
Switzerland	1 CHF	1.7123	1.7808	1.7200	1.7381
France	1 FRF	0.4024	0.4184	0.4044	0.4084
Hong Kong	1 HKD	0.2573	0.2676	0.2586	0.2611
Australia	1 ATS	0.1976	0.2055	0.1986	0.2006
Singapore	1 SGD	1.4214	1.4783	1.4286	1.4429
Canada	1 CAD	1.4483	1.5016	1.4511	1.4656
Australia	1 AUD	1.4632	1.5218	1.4706	1.4853
Netherlands	1 NLG	1.2624	1.3219	1.2687	1.2814
Sweden	1 SEK	0.2743	0.2583	0.2757	0.2785
Belgium	1 BEF	0.0680	0.0708	0.0684	0.0691

- 북한은 재정부, 중앙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북한내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의 외화관리수단으로는 ① 북한내 외화현금 유통금지 ② 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의 외국환업무 관련은행에로의 한정 ③ 외화관리기관의 환율 책정 ④ 외화관리기관의 결제통화 지정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내에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은행은 무역은행이며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참고로 북한의 외국환 업무 취급은행으로는 무역은행을 비롯해 대성은행, 금강은행, 창광신용은행, 조선합자은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의 외국환업무 취급은행〉

은행명	주요업무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기관에서의 외화획득과 지불에 대한 사용 업무 -북한원화와 외환의 교환비율 결정, 공표 -외화태환권(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외화와 바꿀 수 있는 돈표) 발행 업무 -무역기관, 기업소의 대외지불에 대한 재정적 통제업무
금강은행 (Kumgang Bank)	-기계제품, 금속제품, 광물, 화학제품 등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 업무담당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조선대성무역상사, 조선동해해운상사,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업무와 귀금속거래 취급 -외국환 업무수행

나. 외화의 이용

-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외 거래, 은행에서의 북한원 매매거래, 자본거래 등의 거래에 이용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에 따르는 외화거래와 결제에 있어 거래은행의 자기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북한은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 등을 들고 있음.
- 북한내에서는 외화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기업도 마찬가지이며 외화는 은행계좌에 넣고 사용해야 하고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원과 교환해야 함. 예를 들어 합영기업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와 외화현금 거래가 불가능하며 북한내의 소비상품을 구입할 경우 ‘외화와 바꾼 돈표’를 사용.
- 북한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 무역은행에, 또는 외화관리기관의 합

의하에 다른 은행에 북한원 계좌, 외환원돈 계좌,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외국에 있는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북한원 계좌는 북한내에서 경제활동 등 여러 활동으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입금시키며 이를 외화로 전환시킬 수 없고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함. 외환원 계좌에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는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시킬 수 있음. 외화계좌에는 외화를 그대로 입금하며 계좌는 화폐별로 개설할 수 있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원 계좌에는 북한내에서 얻은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를 외화로는 전환시킬 수 없다는 규정인데,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원 이윤은 외화로의 대환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분기 및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 북한 외화관리기관의 강한 통제를 받게됨을 알 수 있음.

다. 외화의 반출입

- 북한은 외화관리법에서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화의 반입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외화를 반출하는데에는 상당한 통제가 따름. 외화현금의 경우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서류나 입국시에 세관신고서상에 밝힌 금액내에서만 반출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고(입국시 세관에 신고했을 경우 승인 불필요),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으며 입국시 들여온 귀

금속은 세관 신고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 서류나 세관신고서 없이 반출할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및 동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송금, 이전 또는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외국투자기업은 국외로 기업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의 60%까지 국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는 것임.
- 국외송금 보장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첫째, 외국투자기업의 북한원화 수입은 외화로 태환할 수 없는 관계로 외화이윤이 아니면 사실상 송금이 불가능하며, 둘째, 북한의 외환사정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경우 외화예금에 대한 인출정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6.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관리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토지국유화제도를 취해오고 있음. 90년대 들어 외국자본유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92년 10월 채택된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토지임대를 처음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정을 차례로 제정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임대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였음.

가. 개 관

-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법인과 개인 및 북한영역밖의 조선동포들이 북한토지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북한의 기관 및 기업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음.
- 토지의 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지며 이는 임차자의 재산권이 됨. 단, 임대한 토지에 속한 천연자원과 광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는 지대당국)이 통일적으로 하고 있음.

〈국토관리기관〉

국토관리기관 { 중앙국토관리기관 : 토지임대차 감독통제, 도국토관리기관이 제안한 토지임대 계획 심사승인
지방국토관리기관 { 도국토관리기관 : 토지임차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이행
시·군국토관리기관 : 토지임대관련 등록업무

- 토지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장 50년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함.

나. 토지의 임대방법

- 토지는 협상,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입찰과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가능한 방법임. 각 방법을 통한 임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 협상을 통한 토지임대 절차

- ①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토지와 관련한 자료 제공
- ② 임차희망자는 기업설립승인서 또는 거주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기관에 토지이용신고서를 제출함.
- ③ 임대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승인 또는 부결결정을 통지함.
- ④ 승인시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토지임대차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토지위치와 면적 / 임대차 목적과 기간 / 토지용도와 이용범위 / 총투자액과 건설투자액 / 단계별 투자액 / 건설기간 /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 특혜조건 / 제재 및 분쟁해결 등
- ⑤ 임대기관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토지이용증을 발급함.

▶ 입찰을 통한 토지임대

- ① 토지임대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 송부함.
- ② 임대기관은 응찰대상자에 입찰서류를 판매함.
- ③ 입찰관련 상담
- ④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봉인입찰서를 입찰함에 넣음.
- ⑤ 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입찰서를 심사, 평가한 후 낙찰자 결정
- ⑥ 임대기관은 낙찰통지서를 발급함.
- ⑦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접수 30일 내에 임대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⑧ 낙찰자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함.

▶ 경매를 통한 토지임대

- ① 토지임대기관은 경매공고를 냄.
 - ② 임대기관은 공신토지의 기준가격을 기점으로 경매를 실시함.
 - ③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차희망자가 낙찰자가 됨.
 - ④ 낙찰자는 토지임대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으며 등록함.
-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함.
 -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함.

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 북한은 토지임차자의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임차자가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것을 허용함.
-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음.
 -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몰고 계약에 나와 있는 투자분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건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음.
-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들도 함께 양도됨.
- 토지이용권의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의 형식이 있음. 토지이용권의 판매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음.
 - ②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음.
 - ③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함.
-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임차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됨.
 - 저당시 저당자와 저당권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하며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서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토지이용권의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계약을 맺은날부터 10일내에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함.
 - 토지이용권의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부속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음.
 - 토지이용권 저당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권자의 승인없이 다시 저

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10일 내에 저당등록취소수속을 해야 함.

라. 토지이용권의 반환과 연장

-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됨.
 - 토지를 40년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줌.
 -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수속을 해야 함.
 -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함.
- 북한은 토지이용권의 연장도 허용하고 있는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 임대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거쳐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함.
- 토지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으며 토지임대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줌.

마.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 토지임대법은 토지임차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토지임대료와 사용료를 들고 있음.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며 토지임대기관에 납부하고 토지사용료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요금'으로 소재지 재정기관에 납부함.

(1) 토지임대료

-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가 협의하여 정함.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경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 및 경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낙찰자가 제기한 가격을 임대료로 함.
-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함.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2천만원 이상인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하에 5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한편, 협상, 경매를 통한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5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함.
- 토지임대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포함시켜 받으며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됨.
- 북한은 입지조건과 용도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다르게 설정하며 북한의 토지분류에 따른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 ①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

- I부류토지 : 상수, 하수 및 오수, 전기, 통신, 난방, 도로 등 하부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구역의 토지로 주로 도시중심구역과 항구주변구역의 토지. 이밖에 광천, 약수, 특산품 재배지, 관광지같은 지역의 토지도 비록 하부구조가 미비하더라도 여기에 속함.
- II부류토지 : 입지조건이 I부류보다 불리하지만 III부류보다 유리한 지역의 토지로 주로 도시주변과 I, III부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
- III부류토지 : 하부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개발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토지로 주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 미개발지인 산야, 습지같은 구역의 토지.

② 용도에 따른 토지분류

-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토지
- 주택 및 공공건물용 토지
- 공업 및 창고용 토지

〈토지임대요금〉

토지분류	구 분	단위	요금
I부류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토지	원 /M ²	64.50
	주택 및 공공건물용 토지	·	53.75
	공업 및 창고용 토지	·	43
II부류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토지	·	53.75
	주택 및 공공건물용 토지	·	43
	공업 및 창고용 토지	·	21.5
III부류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토지	·	43
	주택 및 공공건물용 토지	·	21.50
	공업 및 창고용 토지	·	10.70

-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임대받을 수 있으며 위탁건설도 할 수 있음.
- 임차한 토지 안에 있는 건물을 임대받는 경우에 토지임대와 함께 건물임대료도 동시에 납부해야 함.

〈건물임대료 및 위탁건설비〉

No.	지 표	단 위	요 금
1	공장건물임대료	원 / m ² , 월	2.00
2	주택임대료	"	2.30
3	사무실, 청사 임대료	"	3.00
4	창고임대료	"	1.70
5	공장건물위탁건설비	원 / m ²	450~500
6	주택건물위탁건설비	"	650~700

(2) 토지사용료

- 토지이용자는 소재지 재정기관에 매년 12월 20일까지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데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토지사용요금은 매년 평방미터당 1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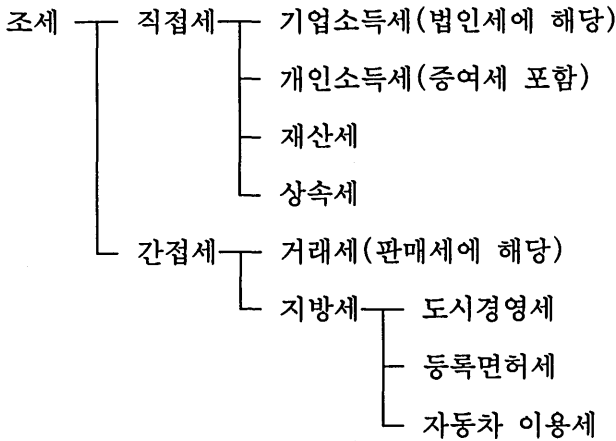
가. 개 관

- 북한은 93년 1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하 외국인세금법으로 약칭)을, 94년 2월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세제를 재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5년에 제정된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은 자동폐기.
- 외국인세금법이 구법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점은 첫째, 중국의 관련세제를 대폭 수용하여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외에도 거래세, 재산세 등을 도입하였으며 세율, 조세감면 등에 있어서도 중국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여타 지역투자기업에 비해 매우 유리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려부문이 아닌 경우 세금감면혜택은 오히려 삭제되었음.
- 둘째, 세제를 현실화하여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 인상시키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음.
 - 처음 외국인 소득세법을 제정한 85년도와 비교, 북한원화의 가치 하락 및 소득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세율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금감축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기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영역 밖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토록 하여 국외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였음.

- 마지막으로 북한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사유재산소유(건물, 선박, 비행기, 차량)를 허용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를 신설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음.
 - 외국인세금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법인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간접세로 일종의 판매세)가 있으며 그밖에 지방세가 부과됨.
- 외국투자가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외국투자가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기업을 설립,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및 취소 수속을 하여야 함.
- 외국인세금법의 적용범위는 북한내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

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으로 외국투자기업에는 북한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북한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포함되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야 함.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세금은 북한원화로 계산하여 자진 납부하거나 또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납부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으로 함.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세금과 관련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외국인세금법」에 우선하여 그 협정을 적용함.

나. 기업소득세

(1) 과세대상, 세율 및 납부

- 북한에서 기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은 ① 북한내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이하 사업소득으로 약칭, 사업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은 기타 소득임),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 및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know-how 및 경영관련 봉사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과 ② 북한영외의 지사, 출장소, 자회사 등에서 얻은 소득으로 대별됨.
-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은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식당과 같은 서비스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등이 속함.

- 기업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에 대해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기 업 소 득 세 율 〉

과 세 대 상	세율(%)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합영, 합작 기업의 결산이윤	25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	14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	10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소득	
-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소득	10
-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소득	20

※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은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등임.

-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하며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4분의 1을 예정납부함.
-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 기업소득세납부서와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한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의 재

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부터 15일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이 통합,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해 결산하고 통합·분리 선포일부부터 20일내에 소득세를 납부함.

-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발행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회사가 공제납부함.

(2) 기업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북한은 장려부문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표와 같이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음.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구 분	조 건	감 면
① 차관, 대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정부와 은행에 대한 차관제공 -외국은행이 북한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이자율, 상환기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② 장려부문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	-10년 이상 운영 -10년전에 철수, 해산할 경우 감면받은 소득세액 반납	-이윤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범위 감면
③ 서비스부문	-10년 이상 운영	-이윤발생년도로부터 1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범위 감면
④ 하부구조 건설부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북한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의 하부구조 건설부문	-이윤발생년도로부터 4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범위 감면
⑤ 기업이윤의 재투자	-5년이상 운영 -5년이전 재투자분 철수할 경우 반환받은 세액 환급	-하부구조건설부문은 기납부한 재투자분의 세액전부, 기타부문은 50% 환급

※ 장려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포함.

다.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의 과세대상, 세율

- 북한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의 득에 대하여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 근로소득 ② 배당소득 ③ 공업소유권과 know-how,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 이자소득 ⑤ 임대소득 ⑥ 재산판매소득 ⑦ 증여소득 ⑧ 개인기업소득 등이 포함됨.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근로소득 2천 원이며 2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액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다음표와 같이 적용하고 있음.

〈근 로 소 득 세 율〉

월 노동보수액	세 율
2,000원 이하	면제
2,001 ~ 3,000원	2천원 초과금액의 4%
3,001 ~ 4,000원	40원*+3천원 초과금액의 5%
4,001 ~ 5,000원	90원+4천원 초과금액의 6%
5,001 ~ 6,000원	150원+5천원 초과금액의 7%
6,001 ~ 7,000원	220원+6천원 초과금액의 8%
7,001 ~ 8,000원	300원+7천원 초과금액의 9%
8,001 ~ 9,000원	390원+8천원 초과금액의 10%
9,001 ~ 10,000원	490원+9천원 초과금액의 15%
10,000원 초과	640원+1만원 초과금액의 20%

※ *40원=(3,000-2,000)×0.04

-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임. 이자소득세는 은행예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인건비, 포장비, 수수료 등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함.
- 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증여소득 1만원 이하는 면제이고 1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표와 같음.

〈증 여 소 득 세 율〉

증여소득세(원)	세 율(%)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 이상	12

-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함.

(2) 개인소득세의 납부

- 노동보수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회사)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함.
- 수익인이 북한밖에 있으면서 북한내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10일 안으로 소득지불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북한내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함.

라. 기타 세제

(1) 재산세

- 외국인은 북한내에서 소유하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함.
- 외국인은 재산을 북한내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내에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대상액은 재정기관에 등록된 가격으로 함.
- 재산세의 세율은 건물은 등록가격의 1%이며 선박, 비행기의 경우에는 등록가격의 1.4%임.

(2) 상속세

- 북한 영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에 적용되며 북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함.
-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북한밖의 재산상속에도 과세한다는 조항이며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받은 재산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함.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후 3개월 내에

거주지 재정기관에 신고 납부함.

〈상 속 세 율〉

상 속 액	세 율	상 속 액	세 율
20만원 이하	면세	250만1원~400만원	16%
20만1원~35만원	6%	400만1원~800만원	18%
35만1원~60만원	8%	800만1원~2천만원	20%
60만1원~80만원	10%	2천만1원~5천만원	25%
80만1원~120만원	12%	5천만원 초과	30%
120만1원~250만원	14%		

(3) 거래세

- 생산물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거래세의 과세대상액은 ①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 수입금 ② 상업부문은 상품판매액 ③ 교통운수, 금융, 관광 등 서비스부문은 서비스 수입금임.
- 거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음.

〈거 래 세 율〉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1. 생산부문		12) 전자제품	4~14
1) 전기제품	4~10	13) 가죽 및 털 제품	5~8
2) 연료제품	2~7	14) 기타 공업제품	4~15
3) 광물제품	4~5	15) 식료품	3~20
4) 금속제품	4~5	16)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	21~60
5) 기계 및 설비	2~10	17) 농산물	3~4
6) 화학제품	2~13	18) 축산물	2~5
7) 건재제품	4~9	19) 수산물	4~10
8) 고무제품	1.5~10	2. 상업부문	2
9) 섬유제품	3~4	3. 봉사부문	2~4
10) 신발제품	3~15		
11) 일용제품			

(4) 지방세

- 도시경영세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함.
 -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임금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함.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 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 납부하며 180일 이상 거주 외국인은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회사가 공제납부함.

- 등록면허세 :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자동차 이용세 :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북한과 중국의 기업·개인소득세제 비교

- 참고로 북한과 중국의 기업 및 개인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 세율 및 조세감면기간 등에서 중국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북한-중국 소득세 비교〉

구 분	북 한	중 국	비 교
기업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이윤의 25% • 자유경제무역지대 14% • 국가 장려부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지방세 3% • 경제특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세율이 낮음.
해외취득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내 1년 이상 체류 /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6년째부터 북한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1년 이상 외국인 거주자일 경우 해외소득 전체가 과세 대상이나, 중국은 1~5년까지는 중국으로 송금되는 소득만 과세대상이고, 6년째부터 전체 해외소득이 과세대상이 됨.

구 분	북 한	중 국	비 교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부문과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생산부문에서 1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분야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기억소득세 면제, 3년째부터 5년째까지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은 장려부문과 자유무역지대내의 투자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중국은 대상제한이 없음, 감면혜택은 북한이 약간 유리함.
재투자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윤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50% 환급(하부구조부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환급율이 높음.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 (배당, 이자, 임대, 특허권 사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액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액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송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은 과실송금에 대한 세금 면제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점 : 월 2천원 세율 4~20% 최고세율 : 10,000원 초과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80원 5~45% 12,000원 초과시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세율이 훨씬 낮음.

8. 외국인 투자기업의 결산

- 북한의 회계제도는 국제기준은 고사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도 회계원칙 및 기준이 정비되지 않아서 매우 불투명한 점들이 많음.
-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재정부
기계산규범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단편적으
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임.

-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기업을 설
립한 해의 결산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분기결산서
는 분기종류후 다음달 15일 내에, 연간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기업
설립 승인기관과 재정기관 등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함.
- 연간결산방법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
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 원가
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것으로 함.
-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
법으로 함.

〈합영기업의 연간 결산 및 분배절차〉

절 차	비 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결산</div> <div style="margin-left: 20px;">결산이윤 확정</div> <div style="margin-left: 40px;">결산서 검열 재정검열원</div> <div style="margin-left: 40px;">결산서 비준 이사회</div> <div style="margin-left: 40px;">결산서 제출 기업설립 승인기관, 재정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10px; margin-bottom: 5px;">공제</div>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득세, 납부금 ├── 예비기금 ├── 기타기금 └── 전년손실보전 및 전년미분배 소득 포함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10px;">이윤분배</div>	<p>다음해 2월말 한, 부기검증사무소 검증보고서 첨부</p> <p>결산이윤의 5%(등록자본의 25% 적립시까지) 생산확대, 기술발전기금, 상금기금, 문화후생 기금 등, 적립한도는 결산이윤의 10%</p>

-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를 적립해야 하며 이는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증자하는 데에만 사용이 가능함.
 - 기타 필요한 기금으로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 상금을 위한 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등이 있으며 이의 적립한도는 결산이윤의 10%이며 기금의 종류,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의 결정함.
- 외국인기업의 결산절차 및 방법 역시 합영기업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외국인기업이 100% 단독투자라는 점에서 이윤분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기업은 예비기금 이외의 필요기금의 적립한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9.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 및 분쟁해결

가. 해 산

-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영계약에 정한대로 하며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등록일부터 계산하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 ① 존속기간종료 6개월전에 기업설립심사 승인기관에 존속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심사승인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승인해야 하며 ③ 승인시 합영기업은 20일 내에 기업등록기관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 합영기업의 경우 기업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①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함. 해산신청서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이사회결정서를 첨부함.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기업해산 사유〉

합 영 기 업	외 국 인 기 업
1.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자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기업설립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이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6. 기업설립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 ② 심사승인기관은 해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심사하고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린 다음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③ 승인시 합병기업은 승인일부터 15일 안에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함. 청산위원회에는 합병기업 책임자, 채권자 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됨.
 - ④ 청산위원회는 조직일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 해산을 통지하고 고시함.
 - ⑤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못받았으면 해산 공시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⑥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함. 청산위원회성원들의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이사회 또는 재판소, 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함. 합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 성원의 보수, 종업원들의 노동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합병당사자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함.
 - ⑦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났을 경우 10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함. 파산에 의한 청산일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제출함.
 - ⑧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나는대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거래은행에 계좌취소신청을 함.
 - ⑨ 기업등록기관은 합병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함.
- 한편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와 기업설립 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이 청산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며 이하의 절차는 상기절차와 동일

함.

-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연장 절차는 합영기업의 경우와 같으며 해산절차에 있어서도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나. 분쟁해결

-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모두가 의견의 충돌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합영법 시행규정('95. 7)에서는 더 나아가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IV.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1.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 현재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유일한 개방지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경협사업을 위한 현실적 대안의 하나
- 한국의 참여 없이는 나진·선봉이 개발될 수 없다는 단정은 내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국이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투자유발효과는 다른 나라가 투자할 때 보다는 클 것

가. 나진·선봉지대 개황

(1) 일반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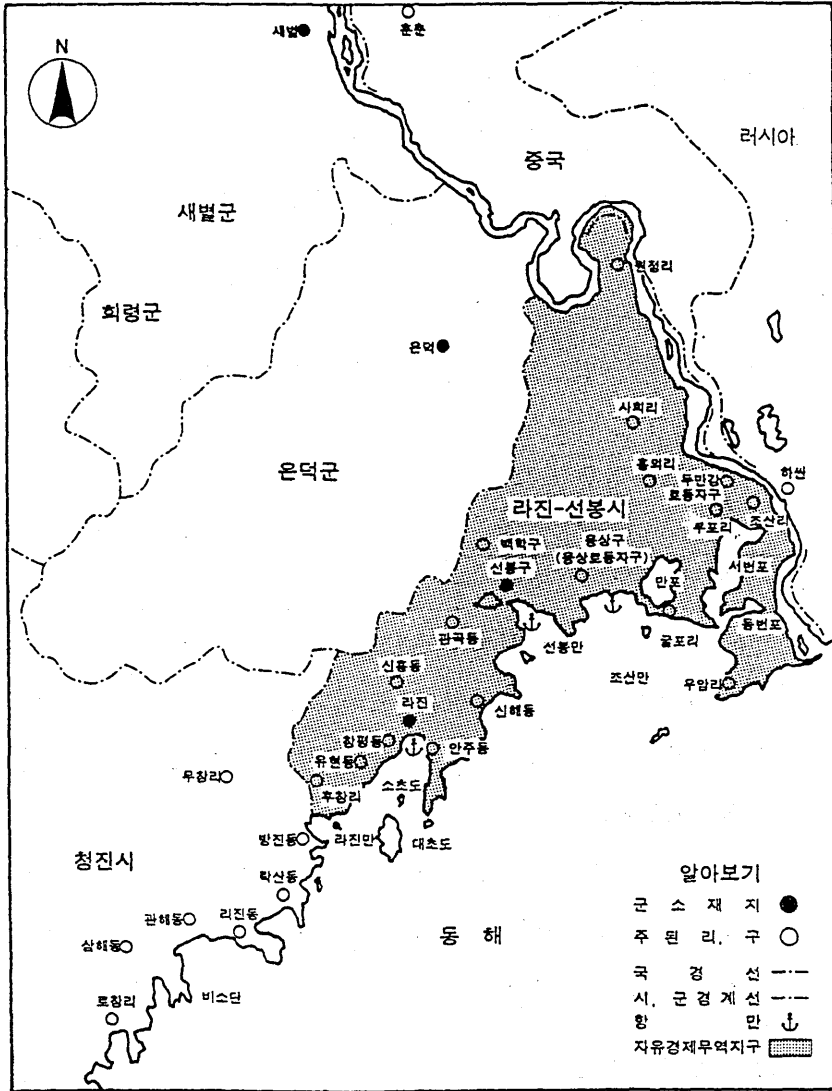
가) 행정구역과 인구

구역

- 함경북도 <<라진-선봉지역>>에 망라되는 아래의 27개의 리, 동, 구로 구성되며 면적은 746km²

지 구 명 칭		
나 진 · 선 봉 시	선 봉 구 역	선봉구, 백학구, 사회리, 홍의리, 부포리, 조산리, 굴포리, 우암리, 응상구(응상노동자구), 하회리, 두만강노동자구, 원정리
	나 진 구 역	후창리, 관곡동, 신해동, 신흥동, 창평동, 안주동, 유현동, 청계동, 역전동, 신안동, 남산동, 동명동, 지경동, 안화동

〈자유경제무역지대 행정구역구분도〉



인 구

- 지대내 인구는 현재 약 13만9천명, 이중 도시인구는 10만6천명, 농촌인구가 3만3천명
- 주요 지역별로는 나진이 6만3천명으로 최대규모이며 선봉 2만6천명, 웅상 8천명, 기타 두만강지역에 9천명이 거주
- 노동가능 인구는 7만6천명으로 보고있는데 연령별 주민구성을 보면 1~15세까지가 32%, 16~59(여자는 55세)까지가 58%, 60세 이상(여자 56세)이 10%
- 현재 인구를 10년내로 35만명 수준으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나) 교 통

나진·선봉지대안의 교통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교통은 자동차가 중심
- 나진시내의 도로는 너비가 18~20m정도로서 여유를 가지고 가설 되었으며 대부분 포장되어있으나 시외에 나가면 도로폭이 좁고 대부분 비포장으로 도로가 평탄하지 못함.
- 나진시와 선봉시의 주요노선에는 일부 시내버스가 운행중이나 운행횟수가 적고 운행구간도 제한적이어서 지대내에서는 자동차, 택시가 교통수단의 중심

나진·선봉지대로 가는 교통

■ 베이징-평양경유-나진

- 베이징-평양 사이는 제트기(비행거리 약 799km)로 1시간 30분, 국제열차(약 1,350km)로 약 23시간이 소요.

- 서울-베이징 사이는 복수의 항공회사가 매일 운항
- 베이징-평양사이는 고려항공이 주 2회, 국제열차가 주 4회 운항
- 평양으로부터 나진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철도, 자동차
 - ① 철도 : 평양으로부터 청진을 경유하여 나진(약 799km)까지 약 19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80원, 청진-나진은 81km로 기차로 2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불명확
 - ② 자동차 : 불명

■ 베이징-연길경유-나진

- 베이징-연길을 경유하여 나진으로 들어가는 경우 베이징-연길 사이는 제트기(비행거리 약600km)로 약 1시간 30분이며 중국의 민항이 매일 운항
- 연길로부터 나진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철도, 자동차
 - ① 철도 : 연길-도문은 52km, 도문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러 남양교를 건너서 남양에 들어감. 도문-남양은 3km, 남양으로부터 두만강을 따라서 새별, 홍의, 선봉을 경유하여 154km. 소요시간, 요금, 운행회수는 명확치 않음.
 - ② 자동차 : 연길로부터 도문에 가서 두만강에 이르러 남양교를 경유하여 나진까지 130km, 소요시간은 약 4시간

■ 블라디보스톡-두만강경유-나진

-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나진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철도, 자동차
 - ① 철도 :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는 하싼을 경유하여 친선교에서 두만강을 건너 두만강, 선봉경유 나진까지의 노정. 블라디보스톡-나진사이의 거리는 약 380km, 소요시간은 10시간이상

② 자동차 :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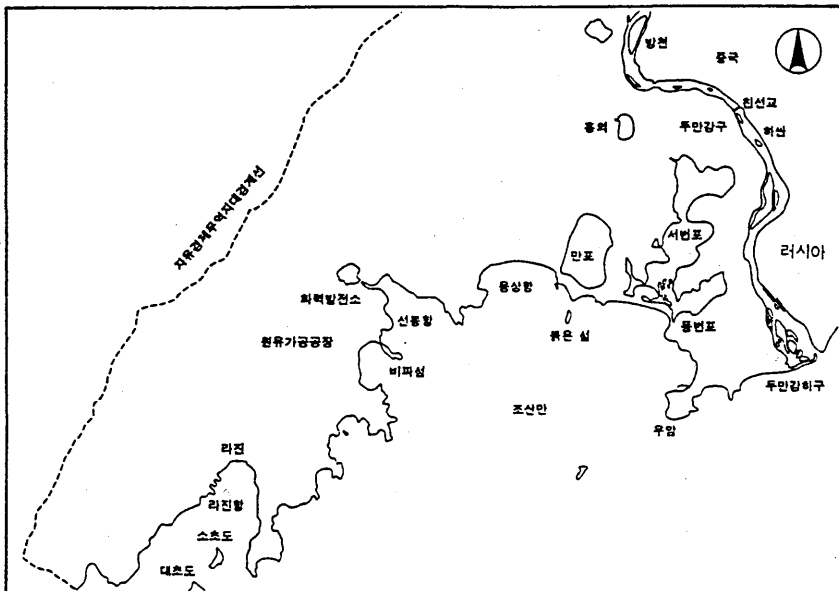
■ 기타 : 1995년 10월에 부산(한국)-나진의 정기화물항로 개설

(2) 자연지리

가) 지리적 입지

- 두만강을 국경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있으며 동해에 면해 있는 이 지역은 북한 최동북단에 위치
- 평양에서 철도로 19시간이 걸리는 이지역은 북한 동해안의 중화학공업중심단지인 “청진공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대내 자체는 북한에서도 오지로 기존 공업기반은 미미
- 나진은 러시아의 태평양국가 수출용 부두로 활용되어왔던 나진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지대내 최대규모의 도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주요지명〉



나) 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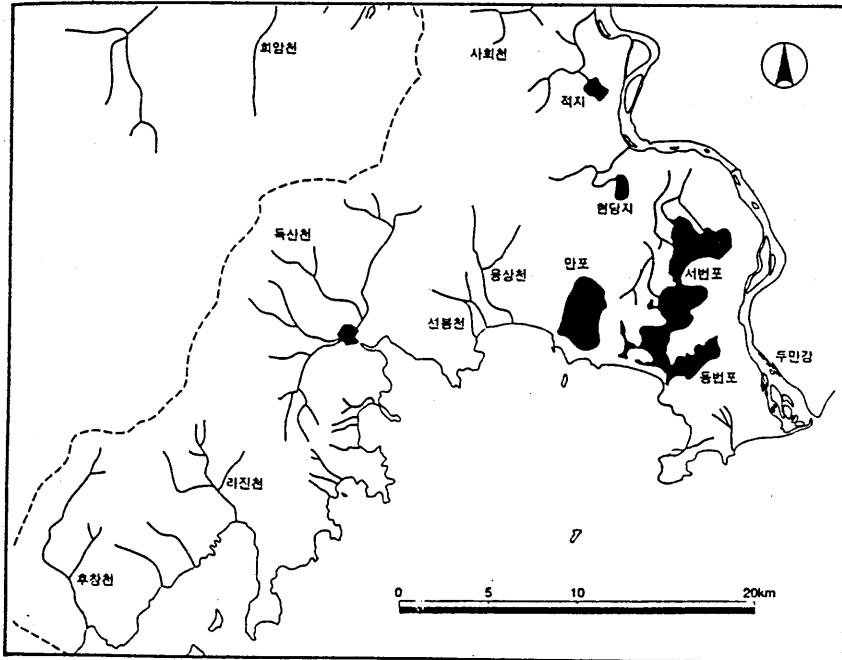
- 이 지대의 서쪽북부의 높이 1,146m(지대바깥)을 최고봉으로 하여 지대 서쪽은 500~600m급의 산악이 둘러쌓여 있음.
 - 라진구역은 300~400m급의 산악, 선봉구역은 500~700m급의 산악이 둘러쌓여 다같이 분지모양의 지형을 형성
 - 만포로부터 동쪽지역은 만포를 중심으로 북쪽에 높이 384m를 최고로 하는 산악, 동북쪽은 270m를 최고로 하는 산악, 그리고 동변포의 북쪽에는 178m의 산악이 있음.
- 이 지대의 총면적은 746km²중에서 20도 이하의 경사도를 가진 토지, 개발대상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30km²

다) 하 천

- 지대안에 19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중 유역길이가 50~10km의 하천은 12개이며 나머지 하천은 10km이하의 오룡천과 이보다 작은 사회천이 있으며 또한 북부 국경지대에는 두만강이 있음.
 - 지대안 소하천의 년평균 흐름량은 0.14~1.47 m³ / 초, 오룡천의 년평균 흐름량은 13 m³ / 초
- 두만강은 547.8km로서 압록강 다음으로 북한에서 2번째 강임.
 - 유역면적은 중국측이 발표한 자료는 33,269.5km²(북한측 10,743.5km², 중국측 22,526km²), 북한측이 발표한 자료는 32,920km²로서 압록강, 한강다음의 3번째
 - 두만강 하구에서 대체로 11월 7일경부터 얼기시작하여 완전결빙(물 전체가 얼음으로 덮이는 것)은 12월 2일경, 해빙은 대체로 3월 29일경부터 시작되며 완전해빙은 4월 5일경
- 호수는 지대동쪽의 동변포, 서변포, 만포가 대표적

- 서번포는 면적 16.12km², 물깊이 약 0.7~1.0m이며 수질은 담수이나 1%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음.
- 1~2월에 걸쳐 약간 얼고 호수바닥은 중심부가 니질로서 주변으로 가면서 모래-감탕-사질로 변하며 수계는 없으며 현재 오리양식, 담수양어, 담수어업이 진행
- 또한 굴지의 물새보금자리와 증계지로 유명
- 동번포는 면적 3.612km² 수심 1.2~1.5m이며 수질은 담수이나 2%이상의 염분을 포함, 겨울철(12월~3월)에 얼며 일부는 바다와 연결
- 둘레는 9.5km, 길이 3.5km, 너비 1km이며 호수바닥은 대부분이 부식성니토이며 일부는 사질

〈하천과 호수 위치도〉



라) 기 후

○ 연평균 기온은 6.3도로 북한내에서도 추운지역

-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은 -8.8도, 가장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0.9도
- 강수량은 770mm로 북한평균 강수량보다 연간 200mm정도 적은 편, 일조율은 53%, 평균습도는 70%

〈나진·선봉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나 진 향	청 진 향
기 온	년 평 균	6.6℃	7.4℃
	년 평 균 최 고 (8월 평균)	12.3℃ 20.9℃	12.4℃
	년 평 균 최 저 (1월 평균)	2.5℃ -8.8℃	4.0℃
	년 최 고 년 최 저	31.3℃ -21.5℃	32.6℃ -22.3℃
강 수 량	년 평 균 강 수 량	813.3mm	671.8mm
	년 최 대 강 수 량	1,321.1mm	972.4mm
	년 최 소 강 수 량	406.1mm	303.4mm
특 정 온 도 지 속 기 간 (일 평균기온)		10℃이상 156일 5℃이상 205일 0℃이상 121일	
일 평 균 일 조 율		53%(최저 7월, 최대 1월)	
강 수 일 수		97일(강수일수대 6, 7, 8월)	
강 수 량 계 절 분 포		봄 20~25% 여름 55~60% 가을 10%정도	
평 균 강 설 시 기		11월초부터 4월중순까지 (가장 빠른 경우 10월중순)	

구 분	나진항·청진항
일 최 대 적 설 량	70cm (1972년 2월 10일, 1983년 2월 18일)
최 대 적 설 량	93cm (1973년)
서 리 내 리 는 시 기	10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작성, “나진·선봉경제특구핸드북”, 1996년 11월

마) 토양과 지질

- 이 지대 토양의 대부분은 사토질 충적토양
 - 서쪽으로부터 웅상항 주변까지는 흑운모화강암, 화강편마암, 화강편록암 등으로 구성
 - 지대의 동쪽 즉 만포, 동변포, 서변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는 안산분암, 순회질사암, 전판암 등으로 되어 있으며 두만강의 퇴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
- 동변포, 서변포의 호수바닥은 감탕질 혹은 부식성니토가 중심
- 두만강의 서쪽, 우암반도는 화강암계통으로 구성, 지진기록은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

바) 해 류

- 지역 앞바다의 기본해류는 한류이지만 이 한류의 흐름은 여름과 겨울에 차이이며 여름에는 한류가 연안앞바다로 흐르고 겨울에는 연안으로부터 멀어짐.
 - 청진-무수단 앞바다에서 형성된 더운물이 연안으로 흘러 나진-선봉지구 앞바다까지 올라가며 다시 청진앞바다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며 더운물의 이러한 흐름으로 나진항, 선봉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음
- 나진-선봉지구 앞바다의 바다물 온도는 12월 평균치로 +1.4℃

- 바람은 나진항에서는 가을철, 겨울철, 봄철에는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며 년평균 풍속은 2.8m/s(청진항에서는 2.1m/s)
- 조차는 0.2~0.3m이며 파도는 여름철에 태풍이 접근할때 바깥바다에서는 최고 5~6m 정도 높이의 파도가 출현하는데 파도의 평균높이는 0.3m
 - 나진항에서는大潮도와 소초도가 자연방파제의 역할을 하여大潮도 안쪽의 만안에서는 파도가 매우 잔잔함
- 선봉항에서는 수역의 남동방향으로 바깥바다에 면하고 있어 항만 수역 전면에서 나뭇날씨 때 2.0~2.5m정도의 파도가 밀려들어 옴
- 해저지형을 보면 나진항의 상황으로 보아도 수심 -10m, -20m 선이 바다가 가까이에 접근해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30m선도 기대할 수 있어 심수항의 건설에는 매우 뛰어난 지형

(3) 경제지역으로서의 나진·선봉

가) 중공업

- 나진·선봉지역은 북한 굴지의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생산단지인 청진공업지구의 일부이기는 하나 주력공장은 청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대내에 공업기반은 미약

석유화학

- 선봉에는 구소련과의 “조·소경제과학기술협정”에 의해 세워진 북한 최초의 석유정제시설인 승리화학공장이 있음
- 1976년 연 200만톤 원유정제능력을 갖추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원유공급을 받아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를 생산하고 인근화력발전소에 화력발전용 경질유를 공급하였으나 구소련의 붕괴이후

원유공급이 중단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1995년 9월 이후 가동이 중단

- 지대밖 인접지역에서는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석유화학제품, 유안),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스프, 인견사)등이 대표적인 공장

조 선

- 나진에는 종업원 1,000명을 두고 3000톤급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조선소가 있으나 현재 건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의 경우에는 1만톤급까지 가능
- 지내외 인접지역으로는 청진조선소가 있어 최대 12,000톤급까지의 선박의 건조가 가능

나) 경공업

- 인접한 중국의 발전, 러시아의 잠재적 약진 속에서도 이 지대의 경공업수준은 아직 미약
- 지방공장 차원의 식료, 일용품, 모피가공, 피복공장 등 50개 공장이 있다고 하나 시설이나 기술수준등은 국제경쟁력이 없음
- 다른나라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비교할 때 경공업 입지의 면에서 특이한 우월성은 찾기 어려우며 계획된 10개의 공업단지 중에서도 나진지역에 있는 일부공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리나 하부구조정비가 되어있지 않음.
- 그러나 상당히 대규모 공업단지 계획이 실현되어 계획대로 경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지대외부로부터 질 높은 저임금의 노동자가 지대 내로 유입되고 컨테이너 수송 인프라정비나 인접한 중국, 러시아의 경공업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이 가능

〈나진·선봉·청진 일원의 중공업·경공업 기업현황〉

기업소명	소재지	설비규모(연간 생산능력) 및 생산제품
〈중화학공업〉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나진시	석유정제능력 200만톤
스타렌공장*	나진시	6,000만톤
無水프탈산생산공장*	선봉군	12,000톤
나진조선소	나진시	2만 배수톤급 60척 수리
응기탄산소다공장	청진시	
선봉정유공장*	청진시	200만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시	철강 240만톤, 압연능력 10만톤
청진제강소	청진시	입철 39만톤, 강제, 규사
청진철도공장	청진시	각종화차, 연 8,000량
청진조선소	청진시	화물선 최대 2만톤급, 함정 3,000톤급 건조
나남기계공장	청진시	권양기, 컨베이어, 제초기
청진종합기계공장	청진시	탈곡기, 양수펌프
나남탄공기계공장	청진시	채탄기, 견인차, 권양기, 컨베이어
나남제약공장	청진시	군용약품 50여종
청진화학공장	청진시	카바이트
부령크롬강공장*	부령군	크롬강 25,000톤
부령금속공장*	부령군	페로티타늄 1,500톤
아오지암모니아공장	은덕군	암모니아 5만톤
〈경 공 업〉		
나진직물공장	나진시	작업모
응기합판공장	선봉군	합판 50만 m ² , 목재 7천 m ³
청진화학섬유공장	청진시	인견사 5천톤, 스프 2만5천톤, 비스코스 1.8억 m ²
청진피복공장	청진시	학생복, 아동복
나남피복공장	청진시	성인복
청진식료품공장	청진시	콩기름, 간장, 된장
청진수산물가공공장	청진시	수산물, 통조림

주 : *는 북한의 합작·합영 희망기업

다) 수송중계업

- 이 지대내에 있는 나진항(연간 통과능력 300만톤)과 이 지대의 밖에 있으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청진항(연간 통과능력 800만톤)이 있으며 종래부터 러시아 및 중국의 중계항으로서 기능
- 소규모이나 컨테이너 수송도 실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항만, 하부구조, 유통하부구조를 기반으로 발전이 기대
- 지리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국제화물중계기지로서 잠재성이 있음.
 - 이 지대내외의 교통망이 확보되고 자유로운 화물왕래가 이루어질 것
 - 러시아 및 중국과 통하는 교통망이 확보되어 많은 화물수송이 이루어질 것
 - 러시아 원동, 중국 동북지방의 물자를 수송할 것
- 경쟁력을 높여 중계를 위한 운임, 원가를 경감시킬 것
- 그러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수송, 육상수송, 항만인프라건설, 컨테이너취급, 창고분야등의 투자가 필요

라) 관 광

- 이 지대에는 귀중하게 남아있는 자연을 포함하여 150km에 달하는 풍치수려한 해안선이나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이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있음.
 - 동, 서번포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되는 수심이 비교적 낮은 호수이며 두만강 하구의 광대한 경치와도 조화를 이루어 전경이 좋고 수평선이 오르는 해돋이, 지평선으로 지는 해의 모습은 매력적
- 그러나 관광 하부구조로서의 교통기관이나 숙박시설, 명물, 명산

품류는 적으며 지리적으로는 냉한대에 속해있고 겨울은 길고 가혹한 기후임

- 관광이 적합한 시기는 년중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정도이고 자연 조건, 지리적조건, 현재의 하부구조 조건에서는 경제적 효과성은 적음.
- 인근에 백두산, 칠보산 등 명산이 있으나 역시 교통이 불편하고 숙박, 오락시설 부족으로 현재 중국의 조선족 관광객들을 주대상으로 한 관광정도임.
- 지대내에서는 응상해수욕장, 청학약수, 선봉샘물, 비파섬 인근의 바다낚시 등이 현재 관광거리
- 인접지역, 배후지역의 공업화에 따라 관광수요가 파생하면 잠재성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미약
- 또한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야영장, 승마구락부, 골프장, 유희 및 체육시설, 오락장, 식당 및 음료점 등 서비스 시설에의 투자가 필요

마) 수산업

- 나진에는 북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나진수산기지가 있음
 - 봄과 여름에 꽁치, 고등어, 정어리, 멸치, 오징어, 방어 등이 주로 어획되며 가을과 겨울에는 송어, 명태, 대구, 청어, 게, 새우 등이 어획
 - 연해에서는 다시마 양식이 성행

바) 지하자원

- 나진의 부해광산에서 니켈, 낙산광산에서 은이 생산된다고 하나 그 규모 및 생산현황은 알려지지 않음.

- 인근지역중에는 무산의 철광, 은덕군(구지명은 아오지)의 유연탄, 부령·회령의 석회석 등이 유명하나 지대외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연결은 곤란

〈나진·선봉 배후지역의 주요지하자원〉

기업소명	소재지	설비규모(연간 생산능력) 및 생산제품
부해광산	나진시	니켈
낙산광산	나진시	은
무산광산	무산군	철광석 정광 650만톤(매장량 11~12억톤)
연천·청진광산	청진시	망간
부윤광산	청진시	니켈 5만톤, 동
나남광산	청진시	유연탄
은성탄광	은성군	유연탄 100만톤(매장량 2억톤)
고점탄광	명 윤	유연탄 70만톤(매장량 0.04억톤)
새별·하면탄광	새별군	유연탄 200만톤(매장량 3억톤)
학포·궁심탄광	회령시	유연탄 120만톤(매장량 1.4억톤)
고무산광산	청진시	석회석
아오지탄광	은덕군	유연탄 200만톤
은성동광산	은덕군	동광 600만톤
생기림점토공장	경성군	점토 5만톤
은성고령토공장	은성군	고령토 5만톤

자료 : 고일동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남북한경제협력」, 『남북한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1992. 6., pp.30~31. : 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 박정동, “북한의 경제특구”, KDI 1996에서 재인용

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실체

(1) 단계별 개발목표

-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당면한 건설단계 및 전망적 건설단계 등 2단계로 나누어 ①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② 수출가공기지 ③ 관광·금융업기지의 기능을 가진 중계형 수출가공지대로 개발한다는 구상

- 우선 1단계(1993~2000)에서는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정비하여 국제화물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2001~2010)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 제1단계(1993~2000) : 당면 단계

- ▶ 나진지구를 집중 투자개발하여 지대의 거점으로 육성
- ▶ 중국, 러시아와 도로, 철도를 연결하여 중계수송망체계를 형성
- ▶ 현존 도로, 철도, 항들을 정비·확장하여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의 화물처리능력을 3천만톤 이상으로 확대
- ▶ 기존 인프라망을 이용, 가공수출산업기지 건설사업 전개
- ▶ 지대안의 산업기지를 전문화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수출가공지대 형성
- ▶ 국제적인 관광기지 개발

－ 제2단계(2001~2010) : 전망 단계

주요내용은

- ▶ 자유무역항들의 능력을 계속 확충하여 1억톤 이상의 화물 중계능력 완비
- ▶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봉사, 관광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 21세기에 상응하는 시설과 산업구조, 제분야 서비스의 고도화, 현대화

(2) 도시건설계획

- 현재 지대내 인구는 약 14만명이며 이중 노동가능인구는 약 7만6천명에 불과, 개발이 활성화되면 인구의 대폭증가가 필요하여 인구가 주 및 주택계획을 세워두고 있음.

○ 도시주민지구건설 선행

- 도시주거지는 나진시 안주동부터 우선 건설하여 다른지구와 선봉군 백학리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도시건설지구는 나진시 후창리, 신해동지구와 선봉군 웅상노동자구, 두만강노동자구, 홍의리, 사회리 일대
- 동 개발지구의 주민수는 1단계로 30만명, 2010년까지는 100만명 규모로 늘릴 계획

○ 현대적인 주택과 제반 서비스시설 건설

- 우선 나진선봉개발촉진센터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동 센터의 기능은 외국투자가와 국제기구, 두만강개발관련 실무자들의 활동기지로 통신, 무역, 정보, 금융 등 종합적인 서비스기지로 이용
- 그 밖에 여관, 식당, 상점, 실내오락장, 체육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

(3) 공단배치계획

- 북한은 1단계에서 현존 5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이용하여 외국과 합영, 합작에 주력하면서 도시구역에 있는 신흥공업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10여개의 전문적인 수출가공기지들을 개발할 계획
- 그밖에 동명, 청계, 두만강 등과 새 도시구역안에는 중소규모 공업구를 형성하여 여기에는 식료품, 생필품, 피복, 신발, 수산물가공 등 경공업공장들을 배치할 계획

〈지역별 공단배치계획〉

공업지구	면적	배치내용
신흥(나진시 신흥동)	60만평	· 투자시범지역으로 먼저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우선권 부여 ·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업종 배치
후창(나진시 후창리)	30만평	· 식료공업 및 보세창고구역
창평(나진시 창평리)	12만평	· 현존 선박수리 및 건조기지를 이용하여 5~10만톤급 선박수리 도크 설치 · 해양구조대 설치
관곡(나진시 관곡동)	165만평	· 원유가공공업, 석유화학공업
백학(선봉군 백학리)	60만평	· 전자자동화공업 집중배치로 종합적인 전자자동화 지구로 개발
웅상(선봉군 웅상노동지구)	·	· 목재가공공업 및 건재공업 · 초대형 배수리기지
홍의(선봉군 홍의노동지구)	54만평	· 자동차 조립 및 부품공업, 경공업
우암(선봉군 우암리)	90만평	· 서비스 부문 종합경공업공장
사회(선봉군 사회리)	105정보	· 자동차조립 및 부품공업
원정(선봉군 원정리)	42만평	· 변경무역에 필요한 경공업공장 · 첨단과학기술분야 공장

(4) 관광개발

- 북한은 동 지역을 중계무역 및 수출가공기지로서 뿐만아니라 관광단지로서 중점 개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관광호텔, 관광별장, 야영소, 휴양소, 요양소 등 대대적 건설
 - － 호텔건설 : 나진, 대초도, 선봉, 굴포, 우암, 웅상, 두만강에 건축부지 30만평, 2만명의 수용인원을 가진 호텔건설
 - － 별장건설 : 비파, 안주, 동변포, 웅상, 굴포, 우암, 청학, 대초도에 건축부지 90만평, 시설부지 73.2만평의 면적으로 1,200여명 수용인원의 별장건설
 - － 야영소, 휴양소, 요양소 건설 : 우암과 굴포지구에 총부지면적 81

만평, 수용인원 2,700명 규모로 건설

- 관광의 다양화, 다각화, 국제화
 - 동해안 관광을 위한 대형관광유람선 운영
 - 육지관광 및 비행기에 의한 관광
 - 일반관광과 학술관광, 스포츠관광의 연계
 - 지대박 및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관광

(5)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과 개발계획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동 지역의 인프라구축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나 현상항은 매우 열악하며 이는 외자유치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가) 항만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국제적 화물중계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에 따라 항만개발에 특히 중점
- 나진·선봉지대에는 현재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 3개의 자유무역항이 있는데, 이들 무역항들은 겨울철 난류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포시에트항과 가까이 있지만 부동항임.
- 항만개발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항만의 특화계획인데 나진항은 「컨테이너전문항」, 선봉항은 「유류전문취급항」, 청진항은 「중화학제품취급항」, 웅상항은 「목재취급항」으로 전문화

□ 나진항

- 나진항은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나진만입구에 대초도, 소초도 두개의 섬이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어 항구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현재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300만톤이며 주요 취급

화물은 석탄, 비료, 강재, 원목, 기계류, 잡화 등임

- 이곳에는 연간 100만톤능력의 살화물(비료) 상선설비와 창고가 새로 건설되어 조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며,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회사들이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계화물수송을 하고 있음
- 나진항은 북부철도윤환선 및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화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고, 철도인입선의 총 길이는 16km이며 그중 11.7km는 표준궤와 광궤와의 혼합선
- 북한은 나진항이 향후 나진·선봉지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화물수송량 증가에 상응하게 항만건설을 확대하고 설비를 현대화할 계획
 - 이에따라 1단계인 2천년까지 7천~5만톤급배 23척을 동시 접안가능토록 하여 화물통과능력을 1,700만톤으로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70여척 이상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하여 2010년에는 화물통과능력이 1억톤에 달하도록 할 계획
- 한편, 부산-나진간에는 이미 95년 10월부터 컨테이너화물전용 직항로가 개설되어 컨테이너선이 운항되어 있음

〈나진항 능력〉

부두	년간통과 능력(만톤)	접안능력		안벽길이 m	부지면적 ㎡	창고면적 ㎡	야적장면적 ㎡
		7천톤급 (척)	1만톤급 (척)				
총계	300	8	15	2,515	380,000	26,000	177,000
1 호	50	2	3	970			
2 호	150	2	3	965			
3 호	100	4	9	580			

□ 선봉항

- 선봉항은 원유전문취급항으로 나진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4마일 떨어져 있으며 배후에는 북한의 2대 화학공장의 하나인 승리화학공장과 선봉화력발전소가 있음
 - 총 부지면적은 약 20만㎡이며 원유입하부두와 원유제품출하부두로 구분
- 원유입하부두에는 3,263m의 해저송유관이 설치되어 25만톤급까지의 유조선이 정박하여 승리화학공장으로 송유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현재 선봉항의 연간 원유취급량은 200~300만톤인데 취급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송유관 증설공사를 완료했으며, 1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출하부두가 건설중
 - 이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단계에서 400만톤, 2010년까지는 1,500만톤의 원유취급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청진항

- 청진항은 나진·선봉지대 밖에 있는 항구이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청진항은 동항과 서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거리는 2.9마일 정도이며, 부두 총연장은 2,138m로 7개 부두로 구성
 - 5천~1만톤급 선박 1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연간 하역능력은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으로 총 800만톤
- 청진항에는 연간 250~300만톤의 자철광을 처리할 수 있는 화학회전기와 상선설비가 있고 연간 100만톤능력의 살화물(양곡) 상선설비와 창고가 갖추어져있음.

- 동항은 주로 곡물과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김책제철소 가까이 있는 서항은 철강제품, 기계류, 광석, 석탄 등을 취급

〈청진항 능력〉

항 부 두	년간통과 능력 (만톤)	접안능력		구 조 물		부지면적 m ²	창고면적 m ²	야적장 면적 m ²
		5천톤급 (척)	1만톤급 (척)	방파제 m	안벽길이 m			
총 계	800	5	8	18,000	2,138	1,013,750	27,000	99,000
동 항	계	87	3	2		754	192,500	
	1호	20	2			210		
	2호	37	1	1		392		
	3호	30		1		152		
서 항	계	713	2	6		1,384	821,250	
	1호	100	1			176		
	2호	150		2		308		
	3호	300	1	2		413		
	4호	163		2		487		

- 청진항의 철도와 도로는 북부지구유환선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광궤철도선을 배합한 혼합선이 항까지 들어와 있고 인입선의 총길이는 21.6km임.
- 앞으로 청진항의 화물처리능력을 1단계에서 700~1,000만톤, 2단계에서 1,500~2,000만톤으로 확장시키려는 계획

나) 철도

□ 북부지구 철도망

- 북한의 함경북도 북부지구(청진 이북)철도는 함북선(청진-회령-남양-선봉-나진) 및 평라선(평양-나진)중 나진-청진구간이 연결되어 총연장 405km의 순환철도망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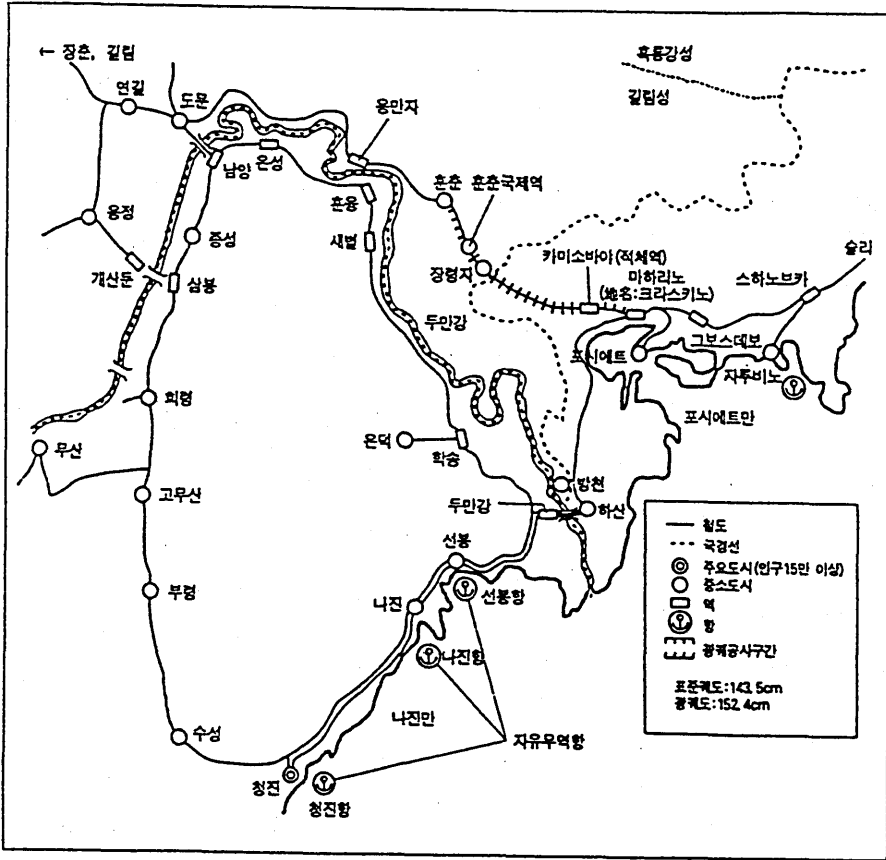
- 이중 중국과 연결된 곳은 북한의 남양역과 중국의 도문역 사이로서 복선화
- 이밖에 삼봉과 개산둔, 혼용과 훈춘 사이에는 이미 교각이 있어 철도를 건설하는데 용이
- 러시아와는 핫산과 두만강역사이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광궤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혼합궤(표준궤+광궤)구간이 나진을 거쳐 청진까지 연결

〈철도 현황〉

총 길이	북부환상선 : 청진-회령-남양-혼용-선봉-나진-청진 총 405km이며 전구간 전철화가 완료됨
복선화 구간	수성-고무산간 34km(전구간 대비 8.4%)
혼합선 구간	청진-나진-선봉-두만강까지 134km(광궤와 표준궤 혼합)
중국과 연결구간	남양-도문(남양철도교) 삼봉-개산둔간과, 혼용-훈춘간에는 철도교각만 있음.
러시아와 연결구간	두만강-핫산(친선교) 길이 565m(북한영역 465m, 러시아영역 100m)

- 남양역과 두만강역의 화물통과능력은 각각 1,200만톤 규모로서 이곳을 통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화물수송
- 95년 10월에는 남양-학송간이 전기화됨으로서 북부순환철도망 전구간이 전기화
- 수성에서 고무산까지 34km구간은 복선구간으로서 북부순환철도망 전구간의 8.4%만이 복선화

〈나진·선봉지대 철도망〉



□ 나진·선봉지대내의 철도망

- 지대안에는 평라선(평양-나진)의 일부와 함북선(청진-회령-남양-선봉-나진)의 일부 그리고 두만강선이 있음.
- 지대내에 있는 평라선의 구간거리는 11.7km이며 평라선의 지선인 나진향선(2.3km)과 송학선(1.3km)이 있음.
- 지대내의 함북선 구간거리는 58.2km이며 지선으로 두만강선(9.4km), 승리선(4.2km), 송학선(1.3km), 홍의선(1.1km) 등이

있음.

○ 두만강선은 함북선의 물골역에서 갈라져 러시아철도와 연결

□ 철도부문계획

○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화물수송에 있어 철도를 중시해 왔으며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들 나라들과의 수송연계에 철도가 기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도부문계획을 추진

- 1단계(당면단계)

- ▶ 북구지구 순환망철도의 두만강역을 자동화, 현대화
- ▶ 훈음-훈춘 사이의 철교건설
- ▶ 두만강역-햇산 사이에 590m 복선철교, 조산리역(조차장), 나진까지 50km의 광궤 신설

- 2단계(전망단계)

- ▶ 나진-구룡평-훈음 사이 120여km 표준궤철도의 복선화
- ▶ 조산리-구룡평-나진 사이 광궤의 복선화
- ▶ 북부지구철도의 중량화, 자동화로 연간 5~6천만톤의 중계 화물통과능력 구비

다) 도로

1) 현황

- 북한 함경북도 북부지구의 도로는 나진·선봉지대를 통과하여 청진-나진-새별-은성-회령-청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384km의 순환도로망이 형성
- 순환도로망 안에는 순환망체계의 호환성을 위해 158km의 도로가 회령에서 각각 새별, 은덕, 선봉을 연결하고 있으나 나진,

선봉을 거쳐 두만강, 우암(서수라), 홍의(사회), 원정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있음.

- 순환도로망은 회령, 삼봉, 남양, 새별, 원정 등 5개의 다리로 중국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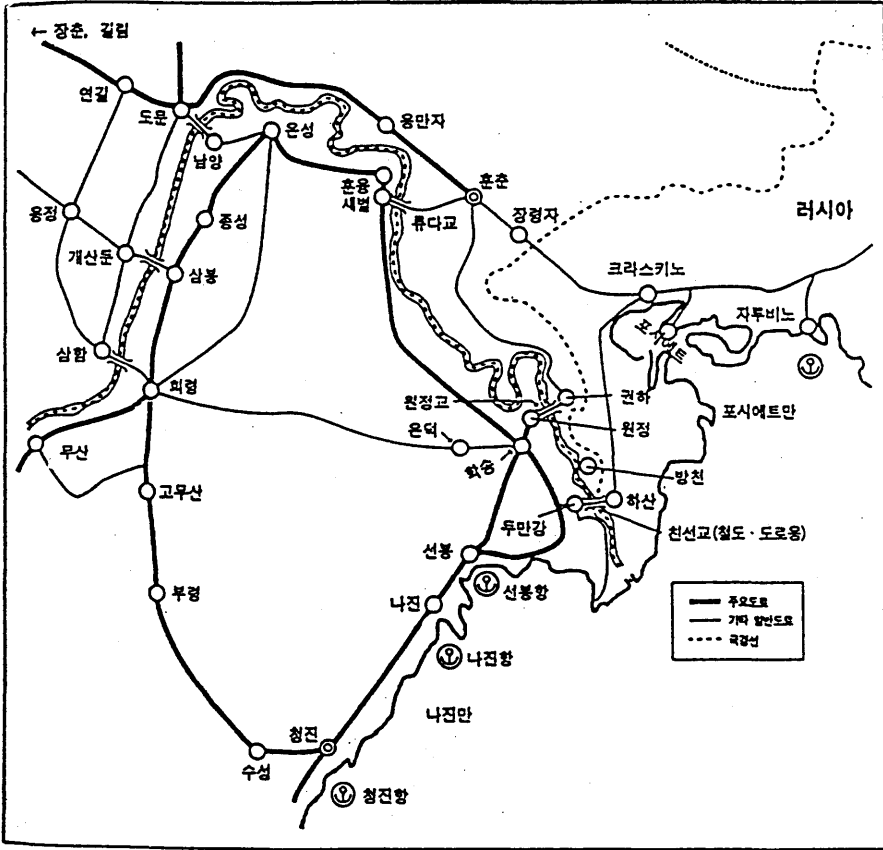
- 나진, 선봉을 거쳐 두만강을 연결하는 43km의 도로는 두만강-햇산 사이의 친선교로 러시아와 연결

○ 95년에 도로부문계획의 일환으로 나진-원정간 40km도로폭을 12m로 확장

<도 로 현 황>

총 길 이	385km(이중 95년에 나진-원정구간 40km의 도로폭을 12m로 확장공사 완료함)
중국과 연결구간	회령-삼합, 삼봉-개산둔, 남양-도문, 새별-훈춘, 원정-권하간의 5개의 다리로 연결 온성, 훈융 2곳에는 교각은 있지만 통행은 불가능함.
러시아와 연결구간	두만강-햇산간 친선교로 철도와 도로 모두 연결됨

〈나진·선봉지대 도로망〉



2) 도로부문계획

- 1단계(당면단계) : 기존도로의 정비·확장
 - ▶ 청진-회령(80km), 어랑-청진-나진(158km), 나진(사회)-새별(70km), 홍의-두만강(9km) 도로들의 폭을 12m로 확장(현재는 6~7m)
- 2단계(전망단계) : 고속도로건설
 - ▶ 청진-회령(82km), 나진-새별(76km), 청진-나진(67km),

새별-남양(43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

고속도로의 폭은 러시아와 중국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나진-은덕간(28km)만 21~24m로 하고 나머지 노선들은 19m 폭으로 건설할 예정

- 2단계가 마무리되면 신설 고속도로 총연장이 약 290km에 달해 나진·선봉지대와 중국 연길, 훈춘, 러시아의 핫산, 포시에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가능

라) 통신망

1) 현황

- 나진-선봉지구의 국제통신은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쪽으로는 평양-청진-나진-블라디보스톡 사이 마이크로파 통신으로 지역간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평양-청진-나진과 나진-선봉-원정-중국 훈춘 사이에 광섬유케이블이 연결되어 지역간 통신망을 형성

2) 통신부문계획

○ 1단계

- ▶ 나진시 안주동과 신흥동 일대에 통신센터 및 위성통신지국 건설
- ▶ 선봉군 선봉읍과 응상, 홍의지구에 통신분국, 원정리에 통신취급소 건설
- ▶ 나진, 청진,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광섬유통신케이블 설치
- ▶ 나진·선봉지역에 각각 기지소를 가진 500~1,000 가입자망 운영

○ 2단계

- ▶ 통신분국 추가건설
- ▶ 통신교환능력을 5만회선으로 확대하여 전화보급률을 인구 100명당 50대 수준으로 올림
- ▶ 위성통신지구국과 광섬유케이블 설비를 확충하여 종합적 ISDN망 구축

마) 공 항

- 나진·선봉지대에는 청진교외(나진에서 150km)에 어랑공항(국내 공항)이 있으나 국외와 연결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함.
- 지대내 공항건설이 완공되기전까지 나진-남양, 연길간(상황에 따라 훈춘과 블라디보스톡까지)에 헬리콥터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95년에 나진에 헬기장이 완공되었으며 97년말부터 운용개시 예정
- 향후 지대의 전망과 입지조건,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선봉군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
 - 선봉군 부포리, 굴포리 일대에 2,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여 경비행기부터 운영하며 수송량의 증가와 상응하게 확장해갈 계획
 - 관광 등의 목적으로 평양, 청진, 백두산, 금강산 등 국내지역을 연결하며, 장기적으로는 선봉-니이가타, 선봉-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 선봉-연길, 심양 등 국제항로를 개설할 계획

바) 전력 및 용수

1) 전력

- 나진·선봉지대에는 현재 북한에서 유일하게 중유를 사용하는 20만kw 능력의 화력발전소가 선봉에 있고, 15만kw능력의 청진 화력발전소(갈탄)와 42만kw능력의 3월17일발전소(수력) 등 3

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총발전능력이 77만kw임

- 북한은 그동안 원유수입의 격감으로 석유에 의한 발전이 곤란하였으나 95년부터 KEDO로부터 중유를 공급받음에 따라 석유에 의한 화력발전이 행해지고 있음.
- 앞으로 1단계에서 선봉화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을 40만kw로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100만kw능력의 중유발전소를 신설할 예정

2) 용수

- 나진·선봉지대의 용수원천은 두만강물 70억m³와 중소하천의 물 2억m³를 합쳐 72억m³로 추산
- 현재 지대안에는 하루 2만m³의 도시주민급수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하루 300리터정도의 물이 공급
- 향후 새로운 수원지건설계획을 보면 1단계로 소청천 상류 무창리에 2천5백만m³의 저수지를 건설하고 2단계로 소청천 중류 청암구역 나석동에 4천5백만m³, 오룡천에 2억6천만m³의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

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나진·선봉지대

(1) 추진경위

(가) 초기단계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UNDP 주관하에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 성장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두만강지역의 인프라와 산업을 개발하여, 21세기에는 이 지역을 '극동지역의 로테르담'으로 발전

시키려는 원대한 계획하에 논의되고 있는 다국간지역개발협력사업 (Multilateral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임.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7월 중국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가 발표한 두만강 하구, 블라디보스톡, 청진의 “황금의 삼각주”개발구상에서 시작
- 이후 동북아 각국의 학계차원에서 논의되다가 91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UNDP의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정부간회의」에서 UNDP가 비준한 4개의 동북아지역협력사업 ① 두만강유역개발 : 무역과 투자진흥(Tumen River Development : Promotion of Trade and Investment), ② 석탄활용과 대기오염(Coal Utilization and Atmospheric Pollution), ③ 온대지방 식량증산(Expansion of Temperate Zone Food Crops) 그리고 ④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가운데서 참가당사국 모두가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합의

(나) PMC설립이후 단계

- 곧이어 91년 10월 평양예비회의에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정부차원의 협의체인 「계획관리위원회」(PMC :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를 설립하였음.
- 제2차 PMC까지는 TRADP에 관한 논의의 중점이 훈춘-나진-포시에트를 잇는 소삼각(TREZ : Tumen River Economic Zone)의 공동개발에 있었는데, 제2차 PMC이후에는 법·제도 조화의 문제점, 경제협력 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중점개발 대상지역이

소삼각에서 대삼각(TREDA :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확대

- 제3차 PMC에서는 TRADP의 법적·제도적 틀에 관한 초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Commission, Committee, TRADCO 등 3개 기구를 설립키로 합의
 - 즉 5개 회원국간에는 ‘정부간 위원회’(Commission)를 설립하여 TREDA개발에 관한 관계국간 의견을 조정·협의하고 잠재투자자에 대해 동 계획을 홍보하고, 중·러·북한 3국간에는 ‘두만강 위원회’(Committee)를 설립하여 3국간의 출입국 절차, 세관, 관세, 외환제도를 점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며, 상업적인 실체로서 두만강지역 개발회사(TRADCO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 점경국으로부터의 토지임차 및 재임대, 투자수익운용 등 실제적 경영업무를 수행토록 하자는데 합의
- 제4차 PMC에는 북한이 김일성 사망으로 불참함으로 북한의 사후 동의를 필요한 잠정합의문만 내게 되었으며 러시아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TREDA의 러시아 지역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나훗트카·보스토치니로 확대
- 두만강지역 개발은 주로 법적·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95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PMC회의에서 향후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에 기초가 될 3개 협정문에 5개 회원국이 가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일단 구체적인 추진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 즉, 두만강유역 3개국(북한, 중국, 러시아)의 주권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두만강지역 개발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설립협정」, 5개 정회원국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 지원 및 주요분야 협력을 위한 「두만강경제개발 지역과 동북아지역 개발을 위한 협의회(Consultative Commission) 설립협정」 및 「두만강경제개발지역과 동북아 환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다국간 개발사업에서 초기단계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음.

- 95년 1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PMC회의에서는 5개국 Commission 설립협정, 3개국 Committee 설립협정 및 환경양해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Commission 산하에 실무협의기구(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형태) 및 통신·인프라·환경 등 3개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Commission과 committee의 통합사무국을 설치하였음.

(다) Commission 설립이후 단계

- 제1차 Commission회의가 96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단계에서 실질적 투자를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단계(Phase II)로 진입하게 되었음.
 - 사무국 소재지 결정,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 사무국장 선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중기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
- 제2차 Commission 회의는 96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어 Commission 의사규칙 채택과 일본의 Commission회의국 가입 권유안 채택 등 TRADP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 특히 접경3개국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조달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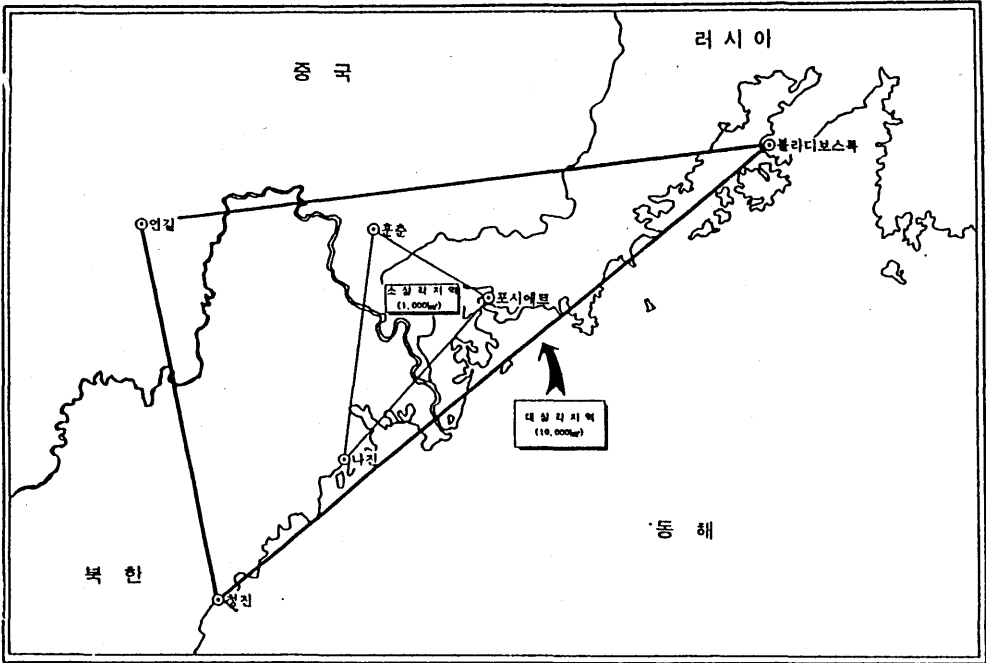
- 97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Commission 실무조정자회의에서는 제 3차 Commission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협의로 이루어졌음.

(2) 중·북·러 3국의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가) TRADP의 지역적 범위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서 지역적 범위는 두만강하구의 3국간 인접지역인 훈춘-나진-포시에트를 잇는 소삼각 지대(TREZ : Tumen River Economic Zone)와 두만강을 중심으로 연길-청진-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대삼각 지역(TREDA :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임.
 - 한편, 한반도, 몽골,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을 포함하는 동북아개발지역(NEARDA)은 TRADP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배후지원 지역임.
- TRADP에서 중국은 소삼각의 훈춘-방천을 중심으로 하고 대삼각의 연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개발전략을, 북한은 TREZ의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하고 TREDA인 청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개발전략을, 러시아는 TREDA의 블라디보스톡-나홋카를 중심으로 하고 TREZ인 자루비노-포시에트지역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음.

〈TRADP의 지역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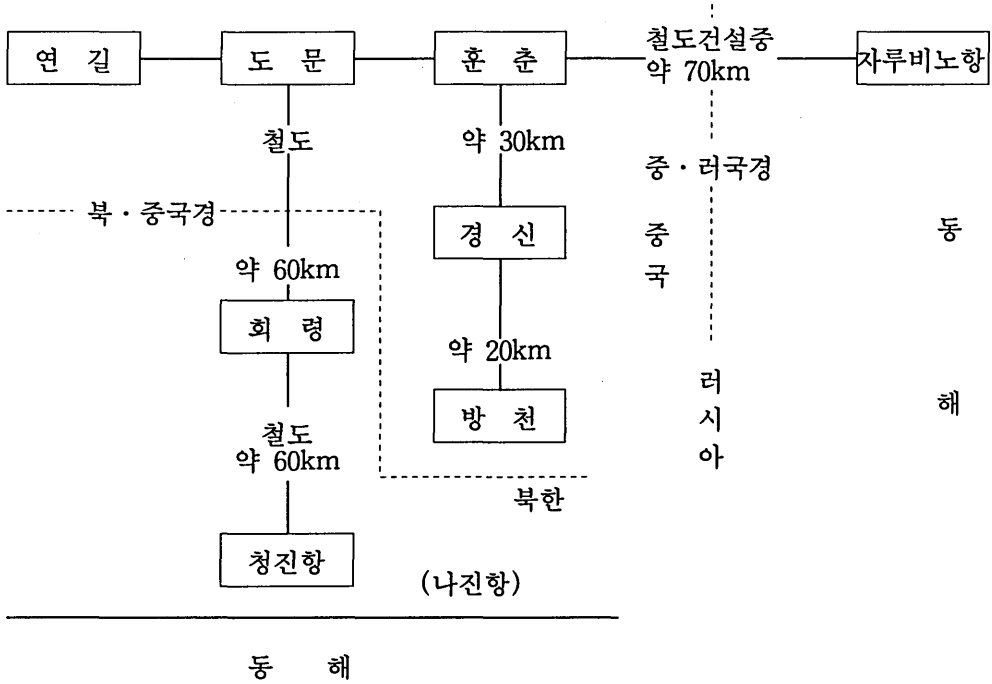
(나) 중국의 훈춘·방천 개발계획과 현황

○ 중국은 훈춘지역을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항, 북한의 나진-선봉-청진항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륙 항구도시로, 중기적으로 길림성의 중심공업도시로, 장기적으로 두만강지역 내지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전략하에 1992년 3월 9일 훈춘을 「변경개방도시」로 지정

- 훈춘지역 개발구상은 기본적으로 훈춘시의 독자적인 계획이 중심이 되어 길림성 정부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접경 3개국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 자원집약적 내지 노동집약적인 산업건설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는 훈춘 개발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
 - 제1단계(1990~1995)에서는 훈춘을 내륙항구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훈춘-장령자간 러시아접속철도 건설, 방천항 건설 등 기초인프라를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건설을 확대하여 주요산업간 연관효과를 제고하며, 제3단계(2001~2010)에서는 도약단계로 훈춘 경제특구를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한편, 동북지역의 철도망을 보강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륙연계 수송루트로 발전시킨다는 것임.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은 훈춘·방천지역을 6개의 경제개발단위로 나누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은 92년 12월 러시아와 자루비노-훈춘 철도건설합의를 통해 컨테이너 항구인 자루비노항과 훈춘의 환적장까지 철도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공사가 96년 중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94년 4월 북한과는 「두만강개발에 관한 협력합의서」를 통해 북한 나진·선봉지역의 개발과 이용을 꾀하고 있음
- 이외 연길시 선호기업 집단은 북한과 청진항 확장공사 및 청진-회령간 도로확장공사에 투자키로 하고 청진 동항 사용권을 50년간 갖기로 했었음.

〈두만강 부근 요약도〉



(다)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국제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무역·금융·관광기지로 개발한다는 전략하에 1991년 말 나진시와 선봉군의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아울러 동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100%의 외국인기업 및 외국은행 설립, 무사증출입 등 여러 우대조치를 담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을 제정·공표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지정에 따른 정부의 법적·제도적 조치를 보장
- 또한 1993년 3월에는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완성하

여 정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나진-선봉지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의 경신평원(Jingxin Plain) 방향의 125km² 지역을 추가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편입시키는 한편, 1992년 후반기부터 나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대의 개발에 착수

○ 자유무역항을 가진 중계형 수출가공기지 건설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다고 2단계로 통합 조정.

- 1단계(1993~2000)에서는 나진-선봉을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시설을 정비하며, 국제화물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주도형 제조업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며,

- 제2단계(2001~2010)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수출가공기지로 육성키 위해 10개의 공업지구로 구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성을 쏟고 있음.

(라) 러시아의 대 블라디보스톡지역 개발계획

○ 러시아는 아직 확정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UNIDO에 의해 준비된 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구상이 러시아의 발전계획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이러한 계획을 러시아측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나훗트카는 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확정되어 개발계획

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소삼각에 해당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3) 각국의 입장

- UNDP가 1991년에 작성한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에 의하면 총 300억불을 투입,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인접지역 일대를 산업지역으로 조성.
- 이 개발계획이 입안된지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한 편인데, 이유는 UNDP의 협력사업개발에 개발당사국들은 총론에서는 일치하나 각론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임.

(가) 중 국

- 중국은 TRADP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개발구상의 가장 큰 동기가 육지로 둘러싸인 중국 동북부 지역개발을 위해 “동해로의 출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훈춘을 변경개방도시로 지정하고 러시아와는 자루비노-훈춘간을 철도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나진·청진항 개발협조를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음.
 - 도로의 경우 청진-회령-삼합간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음.
- 중국은 북한의 청진항·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동해로의 출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동해안 두만강 입구에서 15km 떨어진 방천지역을 개발하여 자체항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길-훈춘-경신-방천간 철도건설을 위해 연길-훈춘간 철도공사를 94년 10월에 준공했었음.

(나) 북 한

- 북한은 UNDP가 주관하는 TRADP에 적극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 나진·선봉지대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임.
- 또한 개발에 있어서 영토주권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어느정도 조정을 통해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임.
- 이와 관련 북한은 중국정부의 두만강을 통과한 동해로의 출해권 요구를 거부했었음.
 - 출해권을 허용하게 되면 외국자본이 북한의 나진·선봉지대보다 투자여건이 양호한 중국의 동북부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다) 러시아

- 러시아는 두만강 접경지대에 치중한 소삼각지대(TREZ) 개발보다도 블라디보스톡을 중추로 하는 나훗트카, 보스토치니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소삼각지대인 핫산, 포시에트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연해주 정부가 이 지역개발에 관심이 적으며, 개발에 따른 중국인 대량이주,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특히 두만강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나훗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중국 및 아시아지역을 통과하는 새로운 철도가 건설됨으로써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감소되어 극동러시아 항구들은 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철도부설에서 자루비노항은 중국의 동해쪽 진출창구로 되어있음.

(라) 한국, 몽골

- TRADP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경제적·정치적 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TRADP는 우리기업의 북한 나진·선봉지대 진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경제활동영역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 도문, 훈춘, 용정 등)에만 조선족 208만명이 살고 있어 우리기업이 활동하는데 좋은 인적자원이 될 것임.

— 북한 및 중국의 국경지대에 우리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몽골은 석유, 석탄, 각종 비철금속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수송루트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자국의 자원개발과 교역확대를 위해 두만강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동해로의 진출이 가능해지기를 희망.

라. 나진·선봉지대 개발 현황

(1) 일반현황

면적	○ 746km ² (서울시 보다 약간 넓음) ○ 개발대상 토지는 약 1/3에 해당하는 230km ²
인구	○ 13만 9천명, 노동가능 인구 7만 6천명 ○ 2010년까지 1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리적 조건	○ 나진·선봉항은 북동향(12월 평균 1.4℃) ○ 중국·러시아와 인접, 동북아 물류 요충지
주요산업	○ 중화학공업 기반(승리화학, 선봉화력발전소 등) 존재 ○ 원료 기지화 정책으로 경공업 취약(제지, 펄프, 수산업 중심) ○ 중계수송업 발달: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접근통로	○ 현재 공항은 없으며 청진교의 어랑공항을 대체 이용중(어랑 → 나진, 150km) ○ 도로·철도를 이용한 국경 통과 가능하나 시설 열악 ○ 부산~나진간 부정기 화물선 운행 ※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애로
기타	○ UNDP 두만강개발계획 소삼각지역(나진-훈춘-포시에트) ○ 지대를 746km ² 로 확대하면서 정무원 직할시로 승격

(2) 투자 환경

(가) 법적·제도적 환경

1) 관련 법규 제정

가) 현 황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총 48개
- 이중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만 관련된 법규: 총 20개

나) 지대와 북한내 여타 지역과의 차이점

-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
 - 기업경영방식에 있어 투자기업의 자율권 일부 보장
 - 가격규제의 부분적 철폐
 - 외환거래의 부분적 허용
- 특혜사항
 - 출입국 관리의 완화(자유무역항, 무사증제도)
 - 특혜관세 및 조세제도의 실시
 - 투자장려부문에의 특혜

다) 평 가

북한당국의 잇따른 법규 정비와 보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투자보장 장치 제시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 해석 가능성 큼
- 북한측의 토지, 건물 등 출자시 자의적 과대평가 가능성 및 지적 재산권 투자시 평가방법 애매
- 각종 경영활동의 제약(채용·해고의 자율성 제한, 비현실적 최저임금)
- 토지이용권 양도시 북한당국에 우선권 부여로 사실상 자유로운 양도 제한
- 외국인 노임은 60%까지만 해외 송금 허용

2) 담당조직

기 관 구 분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 경제협조국	라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성 격	비정부조직	정부조직 (중앙대외경제기관)	정부조직 (지대당국)
위 원 장	김 정 우	이 성 대	김 경 운
담당업무	외국기업 접촉 투자 유치	거시적 지도·통제	지대의 관리·운영
심의·비준	독자적 집행 능력 없 음	총투자액 1,000만원 북한원 이상, 인프라 건설 2,000만원 북한 원 이상	1,000만원 북한원이 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 ▲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 해석 가능성
 - 「공화국 영역밖의 거주하는 조선동포」(외국인투자법5조, 합영법2조, 합작법5조), 「공화국에 해로운 산업」(외국인투자법11조, 합영법시행규정11조)등
- ▲ 북한측의 토지, 건물 등 출자시 자의적 과대평가 가능성, 지적재산권 투자시 평가 방법 애매
- ▲ 경영활동 제약
 - 채용, 해고의 자율성 제한(외국인투자법16조, 합영법27조,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등), 비현실적 최저임금(동규정26조), 직업동맹 조직 활동 보장(합영법32조, 동법시행규정94조)
 - 북한내 물자구입의 적시성 확보 곤란 및 국가계획에 미리 반영 필요(합영법시행규정75조)
 - 이윤분배 산출 불합리(결산이윤을 기준으로 기금이나 기업소득세를 제한후 이윤 분배, 중국은 납세후 결산이윤으로 계산)

▲ 토지이용권 양도시 북한당국에 우선권 부여로 사실상 자유로운 양도 제한(외국인투자법15조)

- 이용권 반환시 투자한 건물 및 부속물은 무상 반환

▲ 북한 내수판매로 얻는 원화는 교환성 통화로 태환 불가능(합영법시행 규정84조)

▲ 외국인 노임은 60%까지만 해외송금 허용(외화관리법28조)

(나) 임금 및 노동력 수준

○ 북한의 최저임금 : 160원(75달러)

- 두만강지역 경제특구중 최고수준

○ 시간당 노동비용 : 0.4달러(중국, 러시아 : 주 5일 근무 북한 : 주 6일 근무)

○ 같은 6일근무제인 베트남의 경우 최저임금이 4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높지 않음

※ 북한측은 남한기업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 북한 노동력은 교육수준은 높으나 자본주의식 교육 부족

- 숙련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용 불가능

- 남한기업 진출시 별도의 교육훈련 필요

○ 직접 고용이 가능한 중국, 베트남과 달리 노동력의 고용은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직업동맹 본래의 역할인 노조활동 수행이외에 자칫 사상교육의 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다) 토지비용

- 토지개발비와 임대료를 포함한 토지비용은 훈춘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1급지의 토지임대료(20.98달러 / m² / 50년)는 주변의 훈춘지역(22.84달러 / m² / 50년) 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비슷한 여건의 여타지역 토지비용과 비슷함
 - 훈춘지역은 기반시설이 완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진·선봉지대가 토지비용이 낮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토지 임대기간은 경쟁국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
 - 북한(최고 50년), 중국(40~70년), 베트남(50~70년)

〈중국·베트남 특구와 투자여건 비교〉

- 임금,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중국, 베트남 지역에 비해 불리
- 토지비용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임
- 노동력 수준,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유리함

(라) 지대에 대한 접근성

- 경제특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중국, 러시아와 달리 접근이 어려움
 - 공항이 없어 직접 접근 불가
 -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육로에 의존해야 함
- 북한체제 특성상 자유로운 인적 접근이 통제
 - 초청장 소지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토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지대에 대한 접근로 미개발로 사실상 비자 필요
 -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유로운 조사활동이 거의 곤란한 상태

※ 중국측은 권하세관에 대해 제3국인의 통행이 가능한 1급 국경세관으로 승격('97. 2.1) 및 북한은 한국인에 대해 초청장을 소지할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마) 인프라 부문

- 수송·통신·전력 등 전반적 시설미비로 정상경영 불가능
- 인프라시설 개선에 대한 외자유치 실적 저조로 투자 부족
- 최근 기존의 합작·합영 방식 이외에 민자유치가 용이한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도입 가능성 시사

(바) 종합 평가(경쟁 특구와 비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의 중심지로 국경지대의 중핵에 위치 · 약간의 시설투자로 기초 인프라확충 가능 · 세금감면, 특혜조치 등 제도상 우대 · 남한, 일본, 대만, 홍콩에 인접 · 노동력의 질에 대한 평가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투자여건 미조성 · 미·일 등 주요시장에 접근 곤란 · 인적·물적 왕래가 자유롭지 못함 · 남북긴장상태로 인한 투자 리스크 ·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난망

- 나진·선봉은 중국 훈춘, 러시아 나호트카 등 경쟁지역에 비해 다음 측면에서 유리
 - 세금 감면 등 여러 특혜 조치
 - 근로인력의 우수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는 투자환경 악화에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 일본, 미국시장 접근에 대한 제약 상존

(중국,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은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로 외국자본의 투자위험성 증가
- ADB, IBRD 등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곤란
- 현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 인프라, 시장접근, 자유왕래 측면에서 열세이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인 환경이 개선된다면 투자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 됨

(3) 투자 유치 현황

- 우선유치목표 : 119개 사업 총 47.33억 달러('96.7. 대경추 발표)
 - 제조업 : 101개 사업, 36.43억 달러
 - 전기·전자부품(27건), 의류·섬유(14건), 화학제품(17건), 식음료부분(14건) 등
 - ※ 31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정제, 반도체 등 3개 사업 투자액을 제외하면 건당 투자규모는 500만 달러 내외
 - 인프라·봉사부문 : 18개 사업, 10.9억 달러
 - 항만(9개사업 7.1억달러)
 - 철도(4개사업 0.7억달러)
 - 도로(2개사업 2억달러)
 - 호텔 및 투자촉진센터건설(3개사업 1.1억달러) 등
- 투자 실현
 - 투자계약 : 65개사업, 3억7천만달러('91.12~'97.10)
 - 투자이행 : 3,200만 달러('97. 10월까지)
- 투자 예상액
 - '97년말까지 1억 5천만 달러
 - '98년말까지 2억 5천만 달러

※ 출처 : 두만사무국 투자진흥담당 통계('97. 5)

(4) 기업진출 현황

(가) 외국기업

1) 중 국

- 연변해운항만공사, 연변용흥무역집단총공사 등 14개 기업 진출
- 투자된 사업은 주로 숙소, 식당, 상점업 및 중계무역업, 택시 운송업 등임.
- 투자계약규모는 2,056만 9천달러에 실제 투자가 이행된 실적은 337만 5천달러(16.4%)임.

2) 홍콩

- 타이슨 기업, 페레그린투자, 엠퍼러 그룹 등 4개 기업 진출
- 투자된 사업은 주로 여관, 상점, 식당업 및 합작은행 설립 등이며 호텔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투자계약규모는 2억 7,610만 8천달러에 실제 투자가 이행된 실적은 1,604만 2천달러(5.8%)임.

3) 미 국

- 재미동포 기업이 일부 투자했으나 대부분 기업은 타당성 조사중
- 협의중인 기업은 스탠튼 그룹(선봉화력발전소, 승리화학원유공장 가동), AT&T, MCI(통신분야) 등임.

4) 일 본

- 주로 조총련계 기업들이 택시업, 관광봉사업 및 중계무역업 등에 진출하였으며, 순수한 일본 기업의 대북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기 타

- 셸퍼시픽사(영국)가 원유저장·공급시설에 200만불 투자 예정,
ING은행(네델란드)이 나진·선봉지점 개설 계약, 록슬리그룹
(태국)이 나진·선봉지역 전기통신사업에 300만불을 투자

(나) 국내기업

-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없음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4개사업임.
 - ▲ 삼성전자 : 나진·선봉통신센타 건설 (700만불)
전전자 교환기 등 통신설비 생산(500만불)
 - ▲ 동양시멘트 : 시멘트 싸이로 건설 (300만불)
 - ▲ 동룡해운 : 크레인, 지게차 등 하역설비 투자(500만불)
 - ▲ 신일피혁 : 피혁가공 및 의류제조·판매 (300만불)
 - ▲ 한국토지공사 : 시범공단 조성(투자규모는 추후 확정)
 - ▲ 대상물류 : 국제물류유통기지건설운영(420만불)
 - ▲ 삼천리자전거 / LG상사 : 자전거 조립·생산(800만불)
 - ▲ 태영수산 / LG상사 : 가리비양식생산(200만불)

(5) 최근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조치 관련 동향 및 평가

(가) 관련 동향

다음의 내용은 '97. 6. 1부터 북한의 나진·선봉지대당국에 의해 실시된 경제 및 화폐 개혁조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북한은 지난 4. 20부터 5월초 까지 3주동안 부총리 공진태와 몇몇의 부부장급 고위층 인사들을 대경추 위원장 김정우와 함께 동지대 조사단으로 파견하여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

1) 화폐개혁

- 북한의 UNDP 관계자에 의하면, 나진·선봉시 당국은 6. 1일부터 동지대 내에서의 '외화와바꾼돈표' 사용을 폐지하였다고 함.
 - 지대내에서는 일반화폐만이 사용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될 것이라고 함.
 - 외화교환비율은 US 1\$=200~210원(현재 암거래 시세 반영)이며, 향후 외화교환 비율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외환가격의 변동에 따라 동 지대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과 물건 가격도 북한원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추정
 - ※ 다만 상기조치에 따라 달러화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월브을 달러등 외화로 취급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 가능

2) 자유무역시장 개장

- 중국과 북한 주민간의 물물교환을 위하여 원정-권하다리 북한측 세관건물 옆 부지에 중국과의 변경무역을 위한 자유시장 개설('97. 6.17)
 - 국경 통행증을 소지한 중국과 북한주민은 매일 장사를 하기 위해 통행가능하며, 중국은 하루 중국돈 1천원까지 관세없이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시장면적은 사방 50m×100m 정도로, 약 100명 정도의 상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현재 판자로 담을 두른 상태이며, 창고·식당 등 부대건물도 구비되어 있음.

3) 개인사업(자영업) 허용

- 북한 나진·선봉지대 당국은 6. 1일부터 나진·선봉시 주민의

자유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일반 주민은 연간 고정적인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유영업을 할 수 있음

○ 나진·선봉지대의 국영기업의 구조 재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사람들과 여가시간 활용 가능한 농민들의 부업으로서 가내공업 형태의 제조업, 상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이 허용됨.

— 의류, 가공식품, 가재도구 및 가구, 수제품, 농촌 생산물, 재활용품, 잉여농산물을 사고 팔거나 가내수공업, 수선 및 운송업, 건축업, 식당, 행사, 어업 등 영위 가능

— 특히 잉여농산물은 중국 훈춘인근의 북·중 국경의 원정교를 중심으로 개장된 자유 물물교환시장에서 교역이 허용됨.

4)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 국영기업은 1980년대 중반 중국의 경우처럼 '97. 6. 1부터 독립된 경제 실체로 전환(독립채산제 실시)

— 이윤 및 손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

— 국가보조금 및 재정 관련 중앙 혹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이들 기업은 이제 자기 책임하에 구조 조정, 기업규모 조정, 합병(합작)사업 전환 등의 경영을 해야 함.

5) 나진·선봉 인프라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 북한 당국은 97년 후반기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에 국가재정 분배 대폭 증가

— 동 지대의 원정부터 나진까지 도로 포장(금년내 완공 예정)

— 두만강 계곡을 경유한 원정~선봉간 신설도로 건설(금년내

완공 예정)

- 기타 주택 및 도시건설 사업 등

6) 함경북도 철도 체계 재조정

○ 제한된 기관차와 철도차량을 놓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4~5개의 철도국을 『나진철도국』 하나로 통합

- 두만강(러시아 국경)으로부터 남양(중국 도문시)까지 철도 운송, 철도 차량 및 청진까지의 철로를 책임

○ 북한은 러시아 혹은 중국으로부터 중고 디젤·전기 기관차를 구입 또는 빌리기를 희망

- 중국의 한 기업은 연료보장과 운송 속도 향상을 위해서 연길~도문~나진 구간에 그들 소유의 기관차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참여한다는 입장임.

7) 나진~선봉간 항로의 오사카까지 확대

○ 나진항은 일본 오사카까지의 두 번째 컨테이너 항로를 곧 확보할 계획

- 연변해운항만공사는 '97. 7월부터 부산부터 오사카까지의 해운수송을 확대

8) 나진 상업 연구소 설립

○ UNDP / UNIDO의 자금과 전문기술 지원을 받아 나진 상업 연구소 설립에 착수

- 현대화된 나진·선봉 행정을 위한 학생, 관리, 경영인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진해양대학을 나진 상업연구소로 전환

○ 교육과목은 『현대 재정관리와 세금』, 『기업의 효율성』, 『합작(합영)사업』, 『외국인 투자 관리』, 『투자확대 및 유치』, 『국제

무역』, 『해운수송』, 『컴퓨터』 등임.

9) 외국인 투자 확대

- 올해 동 지대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엠퍼러 그룹의 호텔 및 카지노를 포함하여 약 1억달러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올해 말쯤 동 지대에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액은 모두 1억 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나) 평 가

1) 화폐개혁

- 나진·선봉지역에서의 '외화와바꾼돈표' 사용 폐지
 - 외환의 자유교환은 암시장 유통 달러 화폐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의 일환임
 -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편의 제고를 통해 북한내의 일본 북송 교포와 중국 조선족들 개인자산의 동 지대로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많은 외국인들의 투자와 교역활동을 활성화 시킬것임.
- 1달러당 교환비율을 200~210원으로 조정
 - 외국투자자들은 지대 밖에서 보다 지대 안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외환이 지대내로 이동, 투자확대 예상
 - 지속적으로 달러가 유입될 경우 이러한 환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앞으로 몇 개월내에 북한 일반화폐의 상당한 평가절상이 예상된다.
 - 지금까지 합영·합작시 불합리한 환율로 북한측 실물 투자분이 과대평가되어 왔으나, 이제는 투자액 산정이 정상화되어 외국투자자에게는 긍정적 영향
 - 그러나 환율개혁의 실질적인 파급효과 및 의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기업과의 임금협상, 물가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평가가 가능할 것임.

○ 지대내 노동자 임금 및 물품가격 등의 대폭 조정

- 환율인상에 따른 지대내 가격(임금·임대료·물가)의 조정은 아직도 계획경제의 틀속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임
- 동 지대가 타지역과 완전 차단되어 물자 및 노동력의 이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북한 타지역에서 물자 구입 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는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북한 전역에 걸쳐 상당한 인플레이가 예상

2) 변경무역을 위한 자유시장 개설

○ 동 조치는 우선적으로 북·중 양국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무역 및 밀무역의 제도화를 통해,

- 밀무역과 각종 탈법행위 등을 막고, 수출입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으로서는

- 나진·선봉지대의 무역거래 및 왕래 활성화를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은 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 유치를 계속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실현 가능하고, 향후 투자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해 상업 및 물류 활성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 재조정

3) 나진·선봉시 주민의 자영업 허용

- 나진·선봉 주민의 자영업은 식당, 상점, 간이매점 등 협동적 상업형태로 운영되던 분야에 한해 허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는 그동안 당국의 묵인하에 일부 허용되던 소규모 상업을 제한된 지역이나마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 기존의 상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

- 북한이 취한 상기 조치들은
 - 경제개혁·개방을 앞두고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나마 시장경제 원리를 부분적 수용 및 시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 조치들은 나진·선봉지역과 타지역의 완벽한 격리를 전제로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 특히 '외화바꾼돈표 폐지, 임금 및 가격 조정' 조치로 인해 타지역과의 현격한 소득 및 가격 격차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할 것이고 여타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마.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 현황

(1)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 북한은 91년 12월 나진·선봉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후 동 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대개발계획 및 투자유치프로젝트 작성,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및 투자사절단 유치를 통한 對外정보 강화 등
- 의자유치활동과 관련,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개발초기인 92~94년 중에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규정 및 개발계획 작성에 중점
 - 나진·선봉지대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인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93년 1월 제정된 후 외국인출입규정 등 세부규정들이 지속 제정되어 97년 10월 현재까지 지대법의 하위규정은 17개로 늘어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북한의 외자관련 법체계는 92년 당시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사실이며 일부법규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외국인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구축
- 북한은 북미 제네바협정 체결(94.10) 직후인 95년도부터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해외 각국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투자유치사절단의 파견, 서방기업대표단의 방북초청 등 외국인자본유치를 위한 대외홍보활동에 특히 주력
 - 95년 이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소규모로 개최되던 북한투자설명회는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북한정부 인사가참가하면서 점차 대규모화
- 이러한 움직임은 96년 9월, 북한 최초의 국제투자회의라고 할 수 있는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The Rajin-Sonbong Zone Int'l Investment & Business Forum)이 개최됨으로써 정점에 달함.
 - 올해 9. 16~10. 17일 동안 대경투관계자들은 UNIDO와 함께 일본니이가카를 중심으로 동경, 오오사카, 나고야, 토야마등에서 투자 상담회 개최

(2) 외국인투자 현황 및 문제점

(가) 개관

- 북한당국의 발표는 총투자건수, 총투자액, 실제투자이행액 등의 사항만을 발표하는데 그쳐 세부적인 기업별 투자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 특정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것이 계약체결 사항인지 또는 합의서 교환사항인지 등이 모호한 경우가 태반
 -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북한측의 발표내용과 외국기업 및 조사기관 등의 발표내용을 종합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정도
- 북한은 96년 9월 13일~15일중 나진·선봉에서 개최된 「나진·선봉지대국제투자포럼」에서 96년 상반기까지 49건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22건 3천4백만 달러에 대해 실제로 투자가 이행되었다고 발표
- 상기 투자포럼에서 북한측은 이례적으로 투자유치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인
 - 계약실적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점
 -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적은 반면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점(3천4백만 달러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53만 달러에 불과)
 - 순수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비해 中小규모의 해외교포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50% 상당) 등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현황(96년 6월기준)〉

(단위 : US \$ 백만)

구 분	내 용
투자계약 규모	350(49건) * 95년중 60%, 96년 1~5월중 30% 체결
투자실행 규모	34(22건) * 부문별 규모 제조업 : 0.53 인프라 : 13.5 상업, 수송, 서비스 : 11.2 관광업 : 1.0 금융업 : 7.6

- 상기 외국인투자규모는 매우 부진한 것임
 - 북한은 지난 93년 5월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유치희망분야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36억 6천만 달러, 인프라부문 33억 3천만 달러 등 총 69억 9천만 달러의 투자유치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외국인투자부진이 상당히 심각함.
- 외국인투자유치 부진으로 당초의 나진·선봉개발계획이 크게차질을 빚게되자 북한은 개발계획·전략 및 투자유치대상 등을 수정
 - 당초 3단계로 설정되었던 개발계획이 96년들어 2단계로 변경되는가 하면 투자유치희망리스트도 현실을 반영, 수정과 변경을 거듭
-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보, 대대적인 대외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투자분위 기 냉각,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등으로 인해

나진·선봉지대의 투자환경이 아직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데
있음

(나) 부문별 외국인투자 현황

인프라부문

-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비중이 높음
 -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북한당국이 인식
 - 나진·선봉을 중계수송기지로 개발한다는 북한의 정책방향과 부합
- 인접지역이면서 東海로의 통로가 막혀 있는 중국 동북지역이 나진·선봉지대를 일본, 한국을 잇는 주요 수송루트로 인식
 - 중국(특히 연변지역)은 나진, 청진항 개발 및 도로, 철도, 해운로 등 수송망 확충에 있어 주요 투자국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홍콩

- 「신동북아(주)」는 선봉국제공항 건설 투자를 추진중이며 나진에 헬리포트를 이미 건설완료
- 「타이슨사」는 나진-원정간 도로확장공사 및 나진항 시멘트저장고 건설 등에 650만 달러를 투자키로 계약

▶ 중국

- 연변항운공사와 한국의 한국특수선(주)이 합작으로 서울에 설립한 「동룡해운」은 북한의 해양무역회사와 95년 6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6일 최초의 남북한 정기컨테이너 항로를 나진-부산간에 개설

- 중국국적의 선박에 의해 운행되는 동 항로는 주로 중국 동북 부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96년 1월에는 KEDO가 북한에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자재를 운송
- 현재 5,000톤급 선박 투입
- 「연변항운공사」는 나진항에 110톤 규모의 이동식 컨테이너 크레인을 임대, 설치하는 등 컨테이너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계획
- 연길의 「선호기업집단 공교물자총공사」는 50년간 청진 동항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진 동항의 개발과 청진-회령간 도로확장공사 등에 총 3천4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철도항구유한공사」도 지난 93년 9월에 북한측과 철도, 항구, 도로, 통신 등 4개 부문에 대한 합작사업 추진합의서를 교환
- 중국 「길림성정부」는 북한 훈흥과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철교 건설을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

- 9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진항 3호 부두의 설비도입, 4호 부두 건설 및 나진-두만강역간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투자규모는 1천5백만 달러로 알려짐

▶ 일 본

- 제일 조총련기업인 「미나미 프로젝트」는 94년 11월 북한의 조선삼해진흥회사와 협력관계를 맺은데 이어 95년 5월에는 중국의 운길림집단운수공사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600톤급 북한선박을 이용, 동년 6월 북한 청진항(원산, 홍남항도 이용)과 일본 니이가타 및 마이즈루항을 잇는 컨테이너선을 시험 운항중

▶ 영 국

- 다국적 에너지회사인 「셀 그룹」은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선봉항 부근에 약 1.7ha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96년 1월 체결
 - 임차지는 나진·선봉 개발을 위한 비투멘(아스팔트 원료), 윤활유 및 기타물품들의 저장장소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셀은 원유저장·공급시설 건설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태 국

- 「록슬리그룹」은 95년 9월 록슬리가 70%, 북한측이 30%를 출자한다는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나진·선봉지대에서 통신센터 건설, 전화회선망 설치 등 통신네트워크 건설을 추진
 - 이미 3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98년까지는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미 국

- 「스탠턴그룹」은 94년 11월 선봉중유화력발전소의 발전능력(20만kw)을 2배로 확장하고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원유정제능력(연 200만톤)을 확장하여 원유가공품을 생산하기로 합의
 - 북한측과 ‘조선설비·스탠턴개발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미국기업과 북한측의 최초의 합영기업
 - 동 사업은 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로부터 특별히 승인받은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속도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연계될 것으로 추측

서비스부문

▶ 재미교포

- 「동북아시아개발회사」는 500만 달러를 투자, 북한측과 합영으로 나진국제호텔(8층, 100실 규모) 건설
 - 동 호텔은 완공 직후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 참가자들의 숙소로 사용

▶ 중 국

- 연변의 「용흥집단공사」는 한국기업과 합영으로 자본금 220만 달러의 「조선나진용흥집단공사」를 나진·선봉지대에 설립했으며 현지에 10층 건물을 건설하고 사무실 임대, 식당, 호텔, 무역, 건설, 택시 등의 업무에 종사
 - 95년중에는 자동차 15대를 한국에서 수입하였는데 나진·선봉에서 관광영업용으로 운행

▶ 네덜란드

- 「ING은행」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합영으로 「ING 동북아은행」을 나진·선봉지대와 평양에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
 - 95년 12월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자본금을 1천5백만 달러, 초기 납입자본금은 2백만 달러로 ING가 70%에 해당하는 140만 달러를 투자

▶ 홍콩

- 종합금융그룹인 「페레그린」은 75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대성은행과 합영은행을 설립키로 계약하고 96년 2월 평양에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을 설립, 상업 및 투자은행 역할을 담당
- 「라선투자자문유한공사」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합영

으로 '나진상업센터개발운영회사'를 설립하고 나진상업센터를 건설

- 나진상업센터는 400개 점포 규모로 건립되는데 우선 1동(20개점포)이 건립되었고 해외교포등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

제조업부문

-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나진·선봉지대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96년 6월 현재 5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대내 총투자액 3천4백만 달러의 1.6%에 불과

▶ 홍콩

- 「신동아주(주)」는 200만 달러를 단독투자하여 주류, 청량음료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5천㎡의 토지를 임대, 현재 건설

- 이는 나진·선봉 최초의 단독투자

▶ 러시아

- 북한 대외경제위원회간의 합영상사인 '조·러상업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억 루블

▶ 미국

- 「머피 오버시즈사」는 1억 달러를 투자해 목재종합가공공장 건설 및 응상항 준설 등을 추진중

(다) 외국인투자의 부진요인

- 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후 북한의 4년여에 걸친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외국인투자는 3천4백만 달러에 불과한 등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나진·선봉에 대한 외자유치의 부진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 미흡한 인프라스트럭처, 불리한 시장환경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에 기인

-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 부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많은 외국기업들은 남한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정치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유보할 것으로 보임.
- 대북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부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정치·경제적 불안정

- 기업이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국가신용도는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
 -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난의 심화, 대외채무의 누적과 사회주의 폐쇄체제 고수 등으로 대외신용도가 매우 낮음
 - 비록 최근 김정일이 최고권력을 승계하였지만, 권력집단간의 갈등, 6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등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식량난 → 체제붕괴'가능성 또한 큼.
- 남북한 관계의 긴장지속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더욱 높이는 요인임.
 - 외국인투자자들은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산의 몰수, 수용, 훼손 등을 우려

인프라스트럭처 미비

- 나진·선봉지대의 인프라는 현재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외자유치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북한당국도 지대내 철도, 도로개선/신설, 항만확장 및 하역설비 도입 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
- 철도의 경우 높은 전철화 비율에도 불구하고 전체노선이 대부분 단선(91.6%)이며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열차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침묵, 노반, 기관차 등의 노후화로 속도가 매우 느림.
 - 평의성(평양-신의주)의 평균속도는 63km/h, 평남선(평양-남포)은 38km/h, 평개선(평양-개성)은 37.4km/h이며 평라선(평양-나진)은 25km/h에 불과
- 도로의 경우 포장비율이 매우 낮고(북한전역의 도로포장율 8%대) 나진·선봉지대의 도로폭도 대부분 6~7m정도이며 특히 연료문제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어려움.
- 항만의 경우 화물처리능력과 하역설비가 취약한 실정이며 나진·선봉지대내의 컨테이너 취급설비는 최근 나진항에 소규모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함.
- 북한의 전력생산은 석탄생산 감소 및 탄질저하, 수력자원 한계, 발전소 추가건설 부진, 기존설비 노후화 및 관리기술 낙후, 송·배전상 비효율 등의 요인으로 감소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임.
- 통신부문은 가장 낙후된 분야로 국제통신 및 지대내 통신 등이 취약한 실정임.
- 인프라와 관련해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문제임.
 - 이를 북한이 자체조달할 길은 없으며 국제사회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요원한 상황

- 북한은 70년대 초반 서방에서 도입한 차관을 상환치 않아 대외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차관도입이 불가능한 상황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가입국이 아닌 관계로 이들 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어려운 실정임.

불리한 시장환경

- 기업의 해외투자동기에는 투자대상국의 내수시장 접근 및 제3국 우회진출을 노리는 '시장접근형 투자'도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우선 내수시장으로의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임.
 - 첫째, 북한주민의 낮은 소득수준과 악화일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구매력이 매우 낮을 것이며
 - 둘째, 관련 북한 법규가 내수판매의 국가계획과의 연계, 해당 북한기관의 경유 등 조항을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내수시장 접근이 통제될 것이기 때문임.
- 현지생산제품의 제3국으로의 수출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 실정인데 특히 세계 3대시장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에 걸림돌이 많은 실정임.
 - 미국은 지난 50년 이후 북한을 적성국,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하고 對적성국교역법(Trade with the Enemy Act)과 그 시행령인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및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거하여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대북 경제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대미수출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최근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대북경제제재의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국의 북한원산지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GSP수혜제공 여부 등이 대미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현재 별다른 대북경제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EU로의 수출여건은 역시 좋지 않은데 북한 등 WTO 비가입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와 가입국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북한이 GSP 등 특혜관세의 수혜대상도 아니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수출여건이 미국, EU보다는 다소 유리하나 특혜관세를 받지 못함.

(3) 향후 외국인투자 전망

- 지금까지 나진·선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중국, 홍콩, 일본, 미국 등지의 해외교포에 의한 중소규모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당초 북한이 기대했던 서방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는 몇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해외교포 및 중국, 홍콩기업의 투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나진·선봉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남한기업은 물론 자본력이 풍부한 서방기업들의 진출이 필수적임.
- 따라서 남한 및 서방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유리한 투자환경조성에 주력함이 바람직
 -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노력, 남한기업을 위한

투자우대규정 제정, 인프라의 건설 및 재원확보, 제3국 수출여건 개선노력 등이 시급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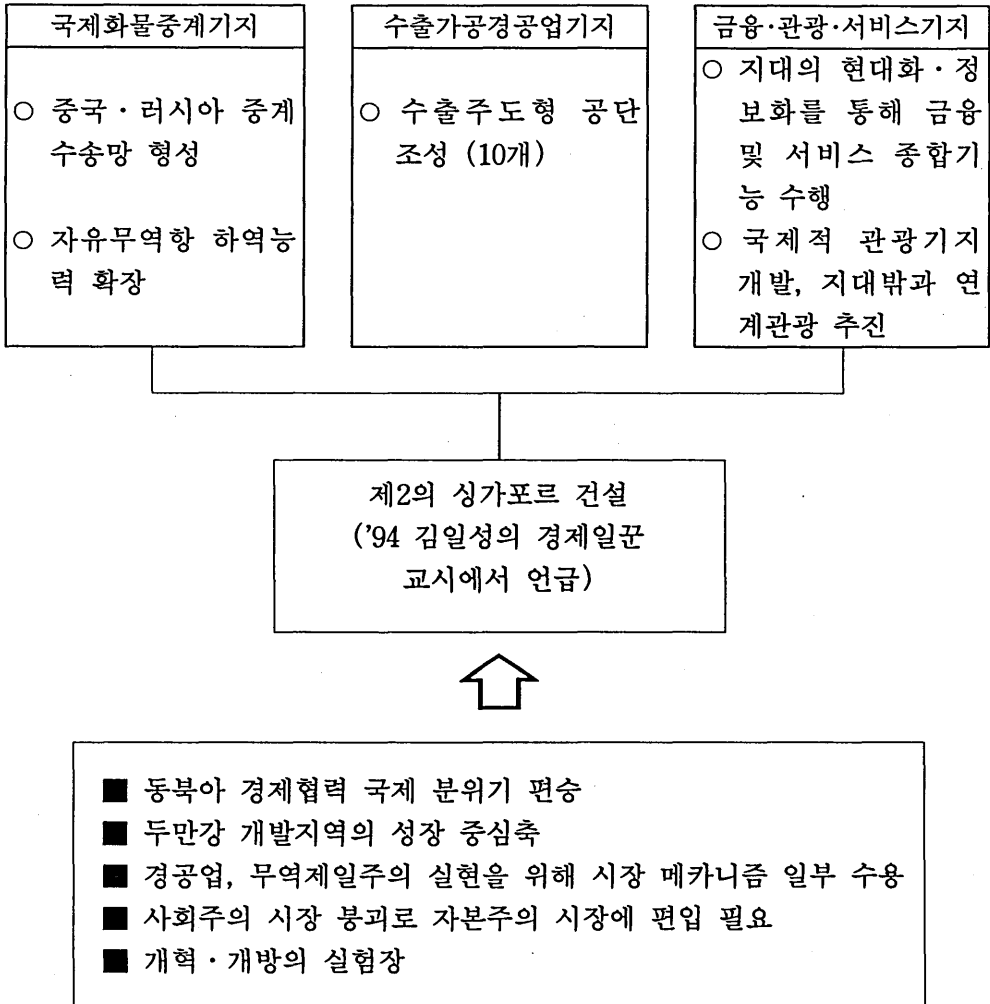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제한적 개방정책)의 고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나진·선봉지대개발을 통한 본격적인 외자유치 및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진일보한 개혁·개방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바. 나진·선봉지대 개발 방향 모색

(1) 북한측 개발전략

(가) 기본구상

나진·선봉 3단계 개발계획 ('93. 6 발표)



(나) 지대 개발 전략 수정('96 투자포럼 전후)

1) 공업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희망 규모 대폭 축소

- 최근 북한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 유치희망 프로젝트를 보면 특히 공업(제조업) 부문에서 희망 외자유치규모가 대폭 축소

2) 당초 3단계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2단계로 변경

▲ 제1단계(~2000)

- 인프라 확충에 주력, 국제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관광 개발에 역점

▲ 제2단계(2001~2010)

- 무역·제조·금융의 기능을 가진 종합적·현대적 국제 교류의 거점도시로 개발

3) 중계수송업 최우선 개발

- 기존 시설의 최대한 이용, 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 우선, 단순하고 쉬운 사업의 우선 추진 방침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중계수송업 지목

4) 관광업의 가능성에도 기대

- 대초도, 비파도, 우암-굴포지역과 지대밖 백두산, 칠보산, 경성온천과의 연계관광

(다) 북측 개발전략에 대한 평가

1) 정책적 측면

- 체제개혁적이기 보다 체제유지적 성격을 갖음
 - ▶ 국내 경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근본적으로 차단, 내수시장 기대 곤란
 - ▶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경제정보 절대 부족

- 남한 민간기업 투자는 환영하되 정부당국간 대화 배제
 - ▶ 다자간 대화채널(UNDP 등) 활용 대화 모색
 - ▶ 남한기업 직접진출보다 제3국 법인 명의 간접진출 희망
- 국내 투자자에 대한 투자보장장치 결여
 - ▶ 중국의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과 같이 법령의 형태로 남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 남한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 자본, 기술 네트워크 미활용
 - ※ '95 중국 외자유치액중 화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름

2) 경제지리적인 측면

-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지대개발계획의 성공여부는 해외요인에 의거 좌우될 것임
 - ▶ 북한국내의 내수시장 진출 기대곤란으로 투자촉진의 장애
- 두만강 개발계획상의 중국 훈춘개발계획과 러시아의 나호트카-블라디보스톡 개발계획과의 상호경합 관계
 - ▶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중국·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기대 곤란
 - ▶ 두만강개발계획상의 중국·러시아 경제특구와 상호보완관계 모색 불가피

3) 개발전략·계획측면

- 국토개발 계획적 성격이 강함
 - ▶ 경제계획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투자우선 순위, 자금조달 계획 결여
- 나진·선봉의 경제지리적 잇점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

획 미흡

- ▶ 수출가공경공업에 치중하면 지대를 왕래하는 인원은 대부분 고정된 관련 인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 경공업단지로 전락할 경우 『싱가폴·홍콩』과 같은 활발한 자유무역, 화물중계 및 상업기지로서의 발전 기대 곤란
- 자유경제무역도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결여
 - ▶ 유통상업지구와 문화·예술, 휴식공간 조성 계획 등의 미흡
 - ▶ 항만 및 교통체계의 확충 정비로 자유무역항 개항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필요(로테르담)
 - ▶ 쇼핑, 관광, 문화, 예술 및 소비성향이 강한 자유시장으로 개방 필요(홍콩, 싱가포르)

4)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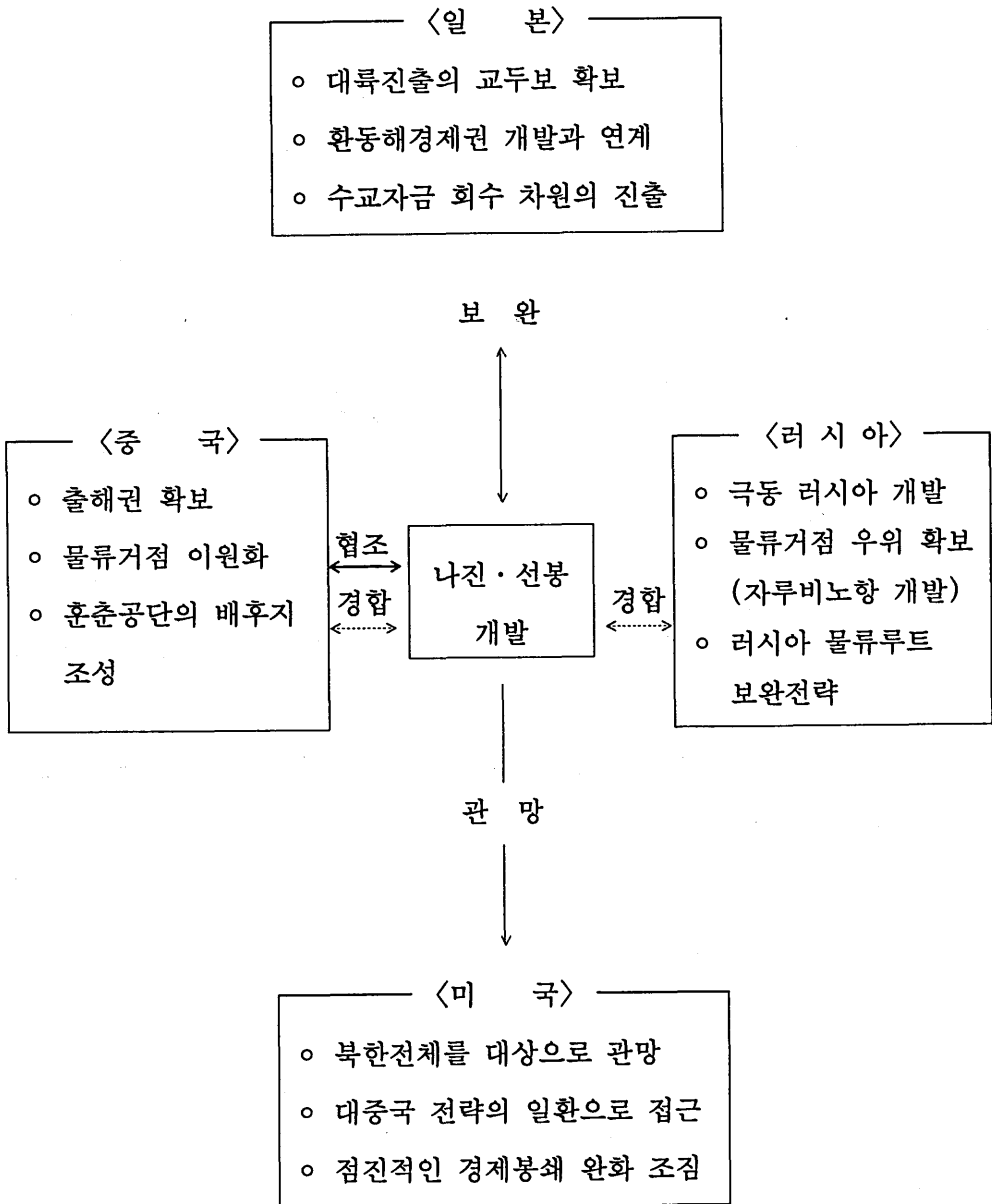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 ▶ 외국인기업의 자유로운 지대접근을 위한 교통체계 한계성(인적·물적 수송 등)
 - ▶ 외국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 숙박, 주거, 휴식, 위락 시설 등 미흡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미비
 - ▶ 시설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로 조달 시도
 - ▶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는 장기간의 투자비 회수로 능동적인 투자결정 곤란
 - ▶ 북한의 법규 및 제도상 투자회수 미보장시 민간투자 가능 불

확실

5) 투자여건 조성측면

-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진·선봉은 세계 여러 투자대상 지역중 하나에 불과
 - ▶ 동남아 국가와 투자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분위기 조성 필요
 - ▶ 저렴한 임금과 토지비용 등 경쟁우위 요소 활용 미흡
 - ※ 베트남 수준으로 임금 현실화 필요
- 서방식 기업경영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비정상적 상관행
 - ▶ 원자재 구입과 제품 판매는 북한당국의 통제로 자유경쟁체제 결여
 - ▶ 인사·경영상의 마찰, 전력·원자재 부족, 노력동원 등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 ▶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 대금지불 지연 등 대외신용도 결여

(2) 관련국 동향파악 및 평가



일 본

(가) 향후 대륙진출의 교두보 확보

- 원산을 중국의 대련으로 보고 있음
 - 금강산, 평양, 청진과의 연계에 있어 최적지로 판단
- 향후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로 진출시 나진·선봉 활용

(나) 배상자금 활용과 연계

- 북한에 제공될 배상금(또는 청구권 자금)에 대한 투자회수 입장
 -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시 패턴과 같이 일본자본의 대북투자 진출 모색
- 일본의 환일본해 경제권내 북한 동해안 벨트 편입 전략의 일환
 - 북한의 경제회생 전략에 따른 자본과 기술수요를 일본이 충족
- 일본은 실제적인 투자없이 나·선개발 마스터플랜 제공을 통해 북한 당국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다) 중화학 공업지대 개발에 관심

- 원산을 중심으로 동해안 전역을 중화학 공업지대화하려는 계획
 - 북한의 물류거점 구상에 회의적
- 일본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경쟁력 하락 부문 해외 이전
 - 기존의 공업지대(석유화학: 나진·선봉, 제철: 청진) 활용, 일본 공해산업 유치

중 국

(가) 동해출해권 확보전략

- 훈춘을 두만강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고, 안정적인 해상루트 개발 확보
- 페리호를 이용한 동해출해권 및 청진항 이용루트 확보
 - 권하~원정 루트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연동

(나) 훈춘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조성

- 홍콩기업을 앞세워 서비스·도박산업을 중심으로 진출
 - 훈춘공단을 제조업의 거점으로 하고 나진·선봉을 배후도시화
 - 서비스·도박산업에 대한 독점권 획득 (통일후의 기득권) 시도

(다) 물류거점의 이원화 전략

- 나진·선봉과 자루비노항을 동시 지원하여 루트 이원화
 - 자루비노항이 개발될 경우 훈춘과 경합관계인 나진·선봉개발 견제 가능
 - 나진의 물류거점 역할 상대적 약화 예상
 - 현재 길림성의 물동량 대부분은 북한으로 흐르고 있음
(도문~남양노선)
 - 독점 물량 상실한 북한은 신규물량 미확보로 기존 항만 근대화 및 확장 애로 예상
- 물동량 전략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중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간에 50:50의 균형유지
 - 향후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 물동량을 두고 치열한 경쟁예상

(라)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

- 두만강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TRADP의 실질적

인 최대 수혜국으로서의 지위 유지전략

러 시 아

- (가) 러시아 물류루트의 보완기능
 - 러시아에서 청진까지 직운송 희망
 - 청진까지 광궤가 이미 들어와 있음
-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비전략
 - 통일한국보다는 통일전의 약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수월
 - 승리화학·김책제철소 등이 주된 관심대상
 - 러시아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해결 수단
 - 북한에 대해서 지분획득 희망(토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
 -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연계 희망
- (다) 승리화학등 정유시설의 활용
 - 노후화된 러시아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대체 이용 희망
 - 자금문제로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음

미 국

- (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
 - 나진·선봉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관된 시각 유지
 - 단기간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보다 지역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입장
- (나) 점진적인 대북 경제봉쇄 완화전략 추진
 - 베트남식 경제봉쇄 완화 패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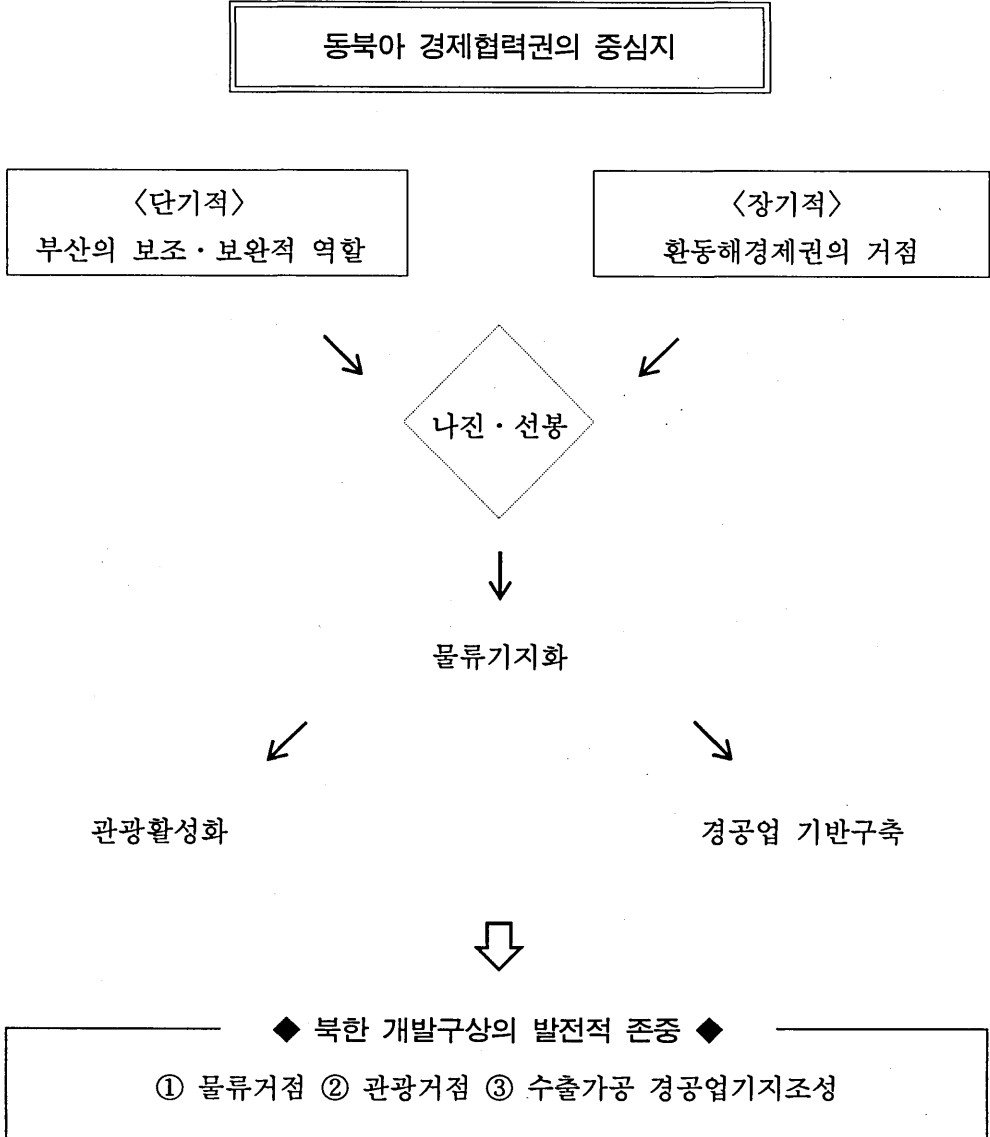
-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있더라도 미국기업이 바로 진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당분간 한국진출과 동반 진출 희망
- (다) 재미동포 기업 활용
 - 정보수집 및 협상창구로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중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평가

- (가) 두만강지역을 둘러싼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주목 필요
 - 물류거점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경합
 - 현재 라진항 우위(나진~훈춘간 도로 개통, 물동량 우위)
 - 공단거점은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경합
 - 훈춘 공단 우위(공단 기조성, 인프라 시설 완비)
- (나) 일본의 중화학공업 지대화 구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경공업의 바탕없이 경쟁력 있는 중화학공업의 건설 불가능
 -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고 경공업이 약한 북한경제 모순을 오히려 심화
 - 북한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수출산업이지 중화학공업과 같은 수입 유발형(자본재, 중간재 등) 산업은 아님
 - 북한은 현재 단기간에 외화획득이 가능한 산업이 필요하지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불확실한 중화학공업 긴요치 아님.
 - 국제분업구조에서 북한이 경쟁력을 아직도 가질 수 있는 산업은 노동집약적 분야임

(3) 우리측 개발 방향(안)

(가) 개발방향



<현 황>

<조 건>

<개발방향>

물류유통

- 인프라 시설 미비
- 북한 자체해결 능력 없음
- 외자유치 곤란

- 최우선사업으로 적합
- 동북아물류의 중심 위치
- 최소투자로 인프라 제고 가능

⇒

- ▶ 동북아 「상업자본」 흡수
 - 북한 자체 인프라 해결능력 배양
 - 나진항의 중계무역 가능성 제고
 - 인프라수요 적은 물류·용역·서비스사업 중점육성
- ▶ 동북아 물동량장악

관 광

- 현재 북한 경유관광 희망
- 남북간 합의필요

- 물류활성화를 통한 「상업자본」 축적
- 상업활성화로 부수적인 관광수요 증대
- 물류유통에 따른 초보적 시설조성 (통신·숙박)

⇒

-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본·중국·동남아 등의 관광자본 흡수
 - 관광시설 투자(호텔·센터 등)
 - 금융등 관광서비스 개선
- ▶ 상업자본과 관광자본으로 제조업 기반 조성

경 공 업

- 내수시장 빈약
- 서방수출시장 접근 한계
- 공단조성에 막대한 개발비용

- 자유무역, 유통시장 발전, 관광활성화로 제조업 수요 증대
- 기초인프라 부족 어느정도 해소

⇒

- ▶ 공단 조성
- ▶ 제조업 진출 활성화
 - 「산업자본」 형성
- ▶ 중계무역·관광·제조업의 종합적 기능 육성

(나) 개발시 유의점

1) 통일이후를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방향 설정

- 남북한 산업의 효율적 배치
-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계성 고려
- 환경친화적 지역으로 조성

※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공단 부지 확보 필요

(외국에 50년 장기 임차를 허용할 경우 통일이후 우리측에 부담)

※ 통신사업과 같은 전략사업 우선 지원 필요

2) 21C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와 연계추진

- 중국, 러시아와의 중계수송을 위한 연결 프로젝트 우선 추진
 - 차관 제공에서 우선순위 부여
- 장기적으로 남북간 인프라의 효율적 연결을 통한 상호 의존성 극대화

3) 나진·선봉지대 개발의 효과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나진·선봉 진출 기업의 지사(지점)는 평양, 남포, 신의주 등 거점지역에 설치 유도
 - 나진·선봉지역에 적용되는 외자 관계법령이 지사(지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임금 등)
- 나진·선봉 진출 기업은 북한의 여타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유도
 - 북한 내수시장 확보 및 역외 가공제도 활용 등

4) 민간부문의 협력으로부터 정부 부문의 협력으로 이행

- 물류유통단지 건설, 공단건설, 관광 등 패키지형 사업의 추진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북측과 협의 진행
- 당국간 대화전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준당국간 협
의 채널 확보
-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당국간 협의에 대한 수요 증대시 당국간 협의
로 유도

2.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관련 환경

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규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무역항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점 임대자대리업무규정 등.

나. 기업의 설립절차

- 지대당국의 투자신청, 투자총액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서는 2천만 북한원 이하이거나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 북한원 이하일 경우 지대당국이 승인.
-상기 규모 이상의 투자총액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여 지대당국에 심의 결과 통보.
-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신청접수일로부터 합영 또는 합작기업은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외국인 기업은 80일이내 승인여부 통보.

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1) 외국인 단독기업 설립

-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인 외국인기업은 지대내에서만 허용되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및 100%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 설립 허용.

(2) 세제혜택

- 지대내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은 14%(일반지역 2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조세감면 혜택이 폭넓게 주어지고 있음.
 - 제조업분야 : 10년이상 운영시 처음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가능
 - 서비스분야 : 10년이상 운영시 처음 1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가능
 - 총투자액 6천만 북한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투자시, 처음 4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가능
- 서비스부문의 거래세도 다른 지역 세율의 50%만 부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면제.
- 특혜관세(관세면제)
 -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어오는 상품
 - 투자용으로 들어오거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및 생산한 수출상품
 -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3) 토지임대

- 지대내 장려부분, 즉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 경제력 높은 제품생산, 하부 구조건설,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등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 유리한 입지조건외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 제공.
- 토지임대 방법도 다른지역은 토지 임대기관과 협상에 의해서만 임대

하지만, 지대내에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 가능.

- 토지사용료는 최장 10년까지 감해주거나 면제.

(4) 기타 우대조치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적 대부, 무사증제도와 유효기간 30일의 복수비자 발급, 최저임금기준 160북한원(다른지역은 220북한원),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을 입증서류나 세관신고서 없이 반출 가능, 일부대중 필수품을 제외한 지대내 상품가격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하는 자유재량권 부여.

라. 지대 출입국

- 외국인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대로 들어오는 경우와 지대안에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외국인 투자기업의 초청장이 있으면 비자없이 입국.
- 다만 도착 5일전까지 초청기관은 지대당국에 입국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 북한의 재외공관을 통해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비자없이 지대내로 들어갈 수 있음.
- 지대당국으로부터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육로로 직접 지대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지대를 출입하는 경우 30일 유효기간의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음.
- 북한의 다른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나라로 출국하는 경우 사증없이 출국 가능함.
- 북한의 다른지역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5일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함.

- 지대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 출발 5일전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마. 지대내 외국인 체류 및 거주

- 지대에 들어온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안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체류등록, 숙박업소등록을 해야 함.
 - 단, 체류기간이 48시간 이내이거나 외국선박의 선원, 외국의 고위급 대표단원, 북한 주재 외국대표부의 주재원은 체류등록 불필요.
- 90일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을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해야 함.
 - 체류증 및 거주등록증은 17세 이상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며 17세 이하는 동반자로 등록해야 함.
- 체류증 및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연장해야 하며, 소지자는 북한 다른지역을 거치지 않는다면 수시 왕래 가능.

바. 자유무역항

- 지대내의 나진항과 선봉항, 지대밖의 청진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되며 항지역에는 부두, 야적장, 보관창고와 같은 보세지역이 해당됨.
- 항관리운영기관은 화물의 적하, 운반, 재포장, 배 및 설비의 수리, 항 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세창고운영을 담당하며, 항사업감독기관은 입출항의 승인, 육상출입증 발행을 담당, 항건설기관은 항시설물의 신설, 확장, 보수 등을 담당.
- 외국투자기업은 항에서 부두, 창고, 배수리소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자유무역항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에 대한 자료, 화물명세서, 선원명단, 배길안내지점, 도착·출발예정시간이 표시된 문건을 항사업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입출항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유무역항 이용선박은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화물보관료, 하역·선적료, 운반료를 지불해야 함.
 - 항구에 보관하는 화물은 10일간 보관료를 면세.

사. 관 세

-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별관세율을 적용함.

<관세면제 대상>

- i)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 ii) 지대건설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 iii) 지대에서 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 iv) 지대안의 비생산기관이 자체수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에서 들어오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 v)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자
- vi)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일정한 수량의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 vii)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통과집

<관세부과 대상>

- i) 다른 나라로부터 지대안에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 ii) 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 북한 영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 iii)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온 물자를 지대안에서

나 지대밖의 북한영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iv)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v)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로 들여오는 물건이 자체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 지대에서 관광업, 여관업, 상업, 서비스업을 위하여 들여오는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에 대해서는 영업 개시 후 5년간 관세 50% 감면, 그 다음 해부터는 30% 감면
- 수입제한 품목을 허가 받아 들여오는 경우 50% 감면
- 면세,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을 이용한 생산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다른지역 판매시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면제하며, 보세기간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는 2년으로 하고, 보세전시장은 지대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함.
- 관세기준가격은 수입물자는 국경도착가격으로 하고, 수출물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함.
- 관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며, 당시의 외화 환산율에 의함.
- 관세의 납부는 관세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

3. 투자기업 설립의 제반조건

가. 투자업종 및 투자방식

(1) 투자업종 선정

- 북한이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① 최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국제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문에

의 투자 ② 외화수입을 늘리고 국가의 외화수지균형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투자 ③ 자연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투자 ④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 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투자 등임.

-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면, 노동력, 원료, 재료 등에 대한 유리한 구입 조건의 우선적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특별한 우대를 할 예정이라고 함.
-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산업기술적으로 낙후되어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투자는 금지 혹은 제한.
-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 후에는 북한이 발표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 희망리스트(부록 4)를 참조.
- 이와 함께 남한경제의 산업구조 조정, 수출입 구조상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진출 시도.

(2) 투자방식 결정

-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개정하여 기존의 합영방식에서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투자형태를 확대하였음.
- 합영투자는 양측 당사자가 공동출자하여 공동경영하고 이익 및 손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
 - 법적으로는 지역제한이 없으나 북한 당국은 남한측과의 합영회사의 설립시에는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나 남포공단으로 한정하는 등의 자의적인 설립인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합작투자의 경우 공동투자하고 이익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향유하

나 경영 및 생산활동은 북한측이 담당.

-이는 주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추정.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국인기업의 단독투자로 투자, 경영, 이익 및 손실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한정하여 설립 가능.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별 장단점〉

구 분	경영 및 인사	당지행정처리	정치적리스크	모기업연계	당사자분쟁
합 영	△	○	×	△	×
합 작	×	○	△	×	×
외국인기업	○	×	×	○	○

※ ○ 장점, △ 보통, × 단점

(3) 파트너 선정

- 북한과 같이 행정운용에 있어 자의성이 높은 곳일수록 현지의 협력자는 더욱 절실하며 합영이나 합작투자를 결정한 업체의 경우 파트너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100% 단독투자의 경우 파트너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진행을 위해서는 파트너(협력기관이나 대리인)가 필수적.
-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온 관계로 기업 임원들로 경영능력보다는 당성을 위주로 결정하므로 파트너 선정시 파트너의 정치력 및 영향력 등도 고려.

나. 출 자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법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대상물로 화폐자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토지이용권, 기술비결(이하 know-how) 등 재산과 재산권을 명시.
- 출자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
 - 단,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에서는 출자물의 평가는 “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약간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
- 합병법시행규정은 화폐, 부동산 등 현물재산 및 재산권의 경우 출자인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 화폐재산 : 해당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경우
 - ▶ 부동산 :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이용권 이전수속을 끝낸 경우
 - ▶ 부동산외의 현물재산 :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구내에 이전시킨 경우
 - ▶ 재산권 :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관할에 넘긴 경우

다.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 총투자액은 합병기업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중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으로 정의.

- 북한은 등록자본의 규모를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해두고 외국인투자자가 정해진 등록자본의 투자를 일정기간내에 하도록 규정.
- 등록자본은 증자시킬 수는 있으나 감자시킬 수는 없으며 등록자본을 증자할 경우에는 기업설립 승인기관과 합의하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함.

〈등록자본의 규모〉

	총투자액 규모	등록자본 /총투자액(비율)
합영기업	300만원까지	70% 이상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외국인기업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 금액은 북한 원화

-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은 합영당사자 및 외국인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출자해야 할 의무를 규정.

-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등록자본의 출자기간은 출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자본의 15%를 하고 다음번 투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내에 해야 함.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설립승인서는 효력을 상실.

라. 자금조달

- 북한법규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
- 북한측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용자의 종류는 단기 및 중기대부로 고정자산대부, 유통자금대부 등이 있으며 외화를 담보로 할 수 있다고 함.
-외화대부의 경우 이자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대부이자율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행하게 되며 북한원에 관한 대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자율에 기초하여 그 범위내에서 이를 행하게 됨.
- 북한은 외국투자은행법('93. 11) 및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94. 12)을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국제은행(ING) 및 홍콩의 페레그린사가 북한내 사무소를 운영중임.
-이들 은행은 주로 북한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신용장 관련업무 등 북한의 대외거래,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금융서비스업무를 취급할 예정.
-본격적인 영업활동은 한국 및 서방기업들의 대북투자 진출이 본격화된 이후가 될 것임.
- 북한의 열악한 외화사정을 감안할 경우 북한은행에 의한 대부는 거의 불가능하며 외국투자가는 자금조달선으로 주로 자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마. 이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 이사회는 합병, 합작기업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관의 변경, 증자, 양도, 해산, 생산계획, 기업발전계획, 사업수지예산, 이익의 분배, 노무임금 및 일상경영관리기구의 관리직(총사장, 부사장, 감사·회계 관리직 등)의 임면·대우 등 경영에 관한 중대업무를 결정.

합영기업의 이사회

- 구 성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2명과 이사들
(부이사장과 이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결정)
- 임 기 :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 4년
- 임명방법 :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 이 사 장 : 합영기업의 법정대표
- 부이사장 : 이사장 사업 보조, 이사장 결원이나 1개월이상 없을 경우 대리
- 회 의 : 정기회의(연1회 이상)와 임시회의(필요시 소집)가 있음. 회의는 전체 이사 2/3이상 참가시 성립
- 임 무 : 기업의 중요문제 토의 결정
(기본규약 수정보충, 기업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등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 증자, 출자지분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 변경,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위원회 조직 등)

- 합영기업은 상시 경영관리기구를 두며 경영관리의무를 수행함.
 - 책임자는 대외적으로 이사회로부터 수권된 범위내에서 합영기업을 대표하고 기업내에서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회의 결정을 실행.

바. 토지임대

- 북한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토지는 임대하는 방법 또는 북한측 현물출자로서 사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음.
- 나진·선봉지대의 토지임대료는 인프라스트럭춰 구비여건, 사용용도에 따라 임대료가 정형화되어 있음.
- 토지 임대료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대당국에 납부하는 임대료와 국가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있음.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 토지임대료(50년까지)

부 류	용 도 구 분	단 위	요 금
I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원 / m ² / 50년	64.50
	주택 및 공공건물용		53.75
	공업 및 창고용		43.00
II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上 同	53.75
	주택 및 공공건물용		43.00
	공업 및 창고용		21.50
III	금융, 상업, 호텔, 오락용	上 同	43.00
	주택 및 공공건물용		21.50
	공업 및 창고용		10.70

◎ 토지사용료

토 지 사 용 료	원 / m ² / 1년	1.00
-----------	-------------------------	------

- ※ 1.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가격임. 임대료는 장려부문 등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임대기관과 임차인이 협의, 결정하여 일괄 지불함.
2. 토지는 입지조건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됨. 부류 I의 토지는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중심구역과 항 주변구역임. 이밖에 광천, 약수, 특산품 재

- 배지, 관광지 등의 지역은 비록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도 I부류의 토지에 속함.
 부류 II의 토지는 부류 I 보다는 조건이 불리하지만 부류 III 보다는 유리한 지역의 토지로 주로 도시의 주변으로 부류 I, II에 속하지 않는 토지임.
 부류 III의 토지는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개발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토지로 주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미개발상태의 산하, 습지 등이다.
3. 토지사용료는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가 소재지 재정기관에 매년 납부하는 요금임.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시에는 인상상한선(20%)을 넘지 못함.

○ 외자기업의 토지임대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외에 토지개발비가 있음.

-토지개발비는 토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의 건설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프라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토지에 적용.

○ 토지개발비는 부류와 용도에 관계없이 1㎡당 53.80원임.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과 같은 인프라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된 요금 전액을 적용함.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과 같은 인프라중에 1개만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정요금의 20%, 2개, 3개, 4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40%, 60%, 80% 납부해야 함.

○ 토지임차인은 개발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토지개발비를 포함시켜 납부해야 함.

사. 생산과 판매

(1) 생 산

○ 합영·합작기업의 생산계획은 합영·합작계약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범위와 생산규모에 기초하여 결정됨.

-기업은 생산조건을 감안한 후 자체적으로 그 해의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거친 후 그 생산계획을 지대 기업소관부서(행정경제 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일반 북한기업과 같이 기업주관정부부서 및 계획부서에서 생산임무의 지시, 생산수량 등에 관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기간 산업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과 가전제품 등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경제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

(2) 판 매

(가) 북한내 판매

- 합영기업 등은 외화수지균형을 맞출 것을 조건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를 북한내에 판매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 단, 내수판매는 원칙적으로 무역기관이나 여타 합영·합작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재공급기관이나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내수판매의 경우 국가승인 필요.
- 상품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여(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결정) 초보적이나 시장가격의 형성은 허용하고 있으나 지대밖의 내수판매의 경우에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규정.(외국인 기업법 시행세칙 제40조)

〈합영회사의 판매순위〉

우선순위	제 품 판 매 처	조 건
1	수출(직접, 위탁)	-반출승인(수출허가 불요)
2	무역회사, 합영·합작회사	
3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등	-국가승인 필요
4	합영자재상사를 통한 국내판매	-영업허가후 1년 이내에 한정 -생산제품의 질 또는 그밖의 사 정으로 수출불가시

○ 그러나 법적인 제약이 해소되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북한의 국내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침체와 서비스판매의 취약성 등으로 내수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내 원자재 구매나 노임지급정도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임.

(나) 남한 반입

○ 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경우 원자재는 북한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천연자원을 제외하고는 초기단계는 남한산 원자재를 투입하는 위탁가공형식이나 중·러로부터 원자재 조달을 고려.

○ 남한 반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물품반입이 국내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임가공에 의한 시범적인 반입의 경우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향후 교역 및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값싼 북한산 물품의 반입은 국내경제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중국산과는 달리 반입시 내부거래로 무관세반입이 가능하므로 일부 사양산업과 단순 노동자임금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

- 향후 북한산 반입이 증가할 경우 업체의 경쟁적인 북한진출과 이에 따른 대량 물량반입은 기존의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처(특히 중국산) 뿐만 아니라 북한 투자기업간의 과다경쟁 유발 우려.

-실례로 북한산 목장갑의 반입으로 기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 (대부분 경쟁력 상실로 국내생산업체는 소멸하고 기존 생산업체가 중국산을 수입하려는 형태로 운영)의 심한 반발이 있었음.

(다) 제3국 수출

- 생산품은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우선 목표시장을 선진국으로 할지 후진국으로 할지를 결정.
-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구사회주의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내수사정을 고려하여 저렴한 중하급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원자재도 중국, 러시아산의 저렴한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
- 목표시장을 일반이나 서방제국으로 선정할 경우 우선 품질은 상·중급 이상으로 하고 원자재도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만 북한산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해외조달방안을 강구.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엠바고문제(미국의 경우 Trade With The Enemy Act에 의해 북한산 반입 원칙적 금지), 당해국의 원산지 규정과 GSP 수혜여부 등의 외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

〈생산제품의 판매루트〉

구분	원자재	품질	고 려 사 항
북한내수	북한내부조달 중·러 반입	하	① 북한법규상 내수판매 가능여부 ② 북한내의 잠재수요
남한반입	남한·일본· 아시아 반입	상·중	① 산업에의 파급효과 ② 경쟁관계(특히 중국산과의 경쟁관계)
제3국 수출	중국·러시아	중·하	① 우대제도 활용 여부(원산지, 특혜관세) ② 잠재수요
	일반·서방	상·중	① 엠바고, 원산지, 섬유쿼타, 관세율 ② 품질, 납기문제

아. 원재료·부품의 조달

- 합영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품을 북한내 또는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가능.
- 특징으로는 내부경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북한은 오히려 수입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북한내에서 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북한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루트로는 2가지가 있음.
 - ①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구입 :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구입계획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국가생산계획에 반영한 후 조치
 - ② 직접구매 :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원재료·부품을 북한의 무역상사, 다른 합영·합작회사,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및 상업망을 통해 직접 구매
-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내부경제와의 직접거래를 차단하고 있고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거래가 아닌 국제간의 무역거래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 수출의무 및 외화균형

- 합영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외화수지균형(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화는 기업자신이 획득하는 것)을 맞출 것이 요구됨.
- 외화수지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합영기업 설립시에 소관기관의 심사사항중 중요한 항목.
- 수출의무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항은 없으나 생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사실상 내수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거의 전량을 수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① 제품의 수출비율이 높은 업종, ②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분야에의 투자진출이 유리.

차. 조세와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등이 부과됨.

카. 외화관리

- 북한의 외화관리는 외화관리법('93. 1) 및 그 시행규정('94. 6)을 기초로 하여 관리.
- 합영기업 등은 지대당국이 발행한 허가서를 갖고 북한은행 또는 합영은행에 조선원예금구좌, 외화원화예금구좌, 외화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감독을 받음.

-합영기업 등의 외화지출은 외화예금구좌로부터 지출되며 외화로부터 조선원예금구좌, 외화원화예금구좌로의 태환은 자유로우나 조선원으로부터 외화 또는 외화원화로의 태환은 불가능함.

- 합영기업 등의 재무·회계제도상에는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부기검증 사무소의 확인필), 손익계산서, 외화수지보고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북한의 외국환업무 취급은행〉

은행명	주요업무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기관에서의 외화획득과 지불에 대한 사용업무 -북한원화와 외환의 교환비율 결정, 공표 -외화태환권(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외화와 바꿀 수 있는 돈표) 발행 업무 -무역기관, 기업소의 대외지불에 대한 재정적 통제 업무
금강은행 (Kumgang Bank)	-기계제품, 금속제품, 광물, 화학제품 등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 업무담당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조선대성무역상사, 조선동해해운상사,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업무와 귀금속거래 취급 -외국환 업무수행

- 환율은 '환자지세'라고 하며 공정환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 등 3가지 환율을 사용.

-공정환율 : 북한의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입상품의 대내가격으로 환산시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결정근거가 불명확한 채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조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음.(1990년 이후 미1\$당 조선원 0.99~1.1)

-비무역환율 : 한 가정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의 내역에 대하여 국내 및 외국 소매가격으로 평가한 총화폐가치의 비율로 정해지며 무역외 거래, 자본거래 등에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발표된 바 없음.

-무역환율 : 일반적인 무역거래 또는 무역외거래에 적용되는데, 무역 이외에 외국투자기업의 출자, 경영계산, 송금, 여행자 환전시 등에 적용.(1990년 이후 미1\$당 조선원 2.14~2.16)

타. 이익송금

-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및 동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송금, 이전 및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국외로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의 60%까지 국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는 것임.
- 국외송금보장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① 외국투자기업의 북한원화 수입은 외화로 태환할 수 없는 관계로 외화이윤이 아니면 사실상 송금이 불가능하며 ② 북한의 외화사정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경우 외화예금에 대한 인출정지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위와 같은 이유에서 외화수지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와 이익의 외자측 외화배당분의 외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점도 쌍방협의후에 계약조항에 명기시켜둘 필요가 있음.

파. 인건비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이 정한 노임 기준에 따라 각종 노임기준, 노임지불형태와 방법, 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종업원 노임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월 220북한원으로 되어 있으며 美달러화로는 약 100弗 수준.
 - 이는 북한내 노동자 평균임금수준인 50~75弗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중국이 외자기업 종업원의 월보수를 국영기업수준보다 120~150% 높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방한 것으로 보임.
- 평균임금은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경우 약 150弗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게 될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약 100弗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기본임금의 추가적인 노동보수형태는 상금, 가급금, 장려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은 기업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노임, 가급금, 장려금은 정해진 날짜에 주어야 하며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달에 주어야 함. 또한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의 보조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음.
- 북한 종업원들의 작업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물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사례에 의하면 1년에 한달분의 상여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함.
 - 그러나 달러로 지급할 경우 북한 법규정에 따라 강제매각해야 하며, 북한원화로 지급할 경우도 물품의 부족현상으로 물품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노동규정 제27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고 규정, 여러가지 조건변동에 따라 임금수준을 인상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상황변화에 따른 임금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중국 성도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합자경영기업들의 임금수준과 임금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북한이 중국의 경제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어 특구개발이 본격화되면 유사한 임금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합자경영투자업체의 임금구성내역(*96년 상반기 기준, 성도지역)〉

(단위 : 元 / 월)

직급별 임금내역	사 원	대 리	과 장	부 장	운전기사
1. 실 질 임 금					400
○기 본 급	300	400	500	700	200
○직 책 수 당	50	100	200	300	5
○도 서 비	5	10	20	50	10
○의 료 비	10	10	10	10	2.5
○아 동 보 호 비	2.5	2.5	2.5	2.5	20
○주 택 보 조 비	20	20	20	20	20
○위 생 보 조	20	20	20	20	
합 계	405	562.5	772.5	1,102.5	657.5
2. 수 당					
○중 식 비	100	100	100	100	100
○교 통 잡 비	100	150	200	250	100
○초과근무수당	100	115	175	210	170
○업 무 비				500	
○출 장 비					200
○세 차 비					100
합 계	300	365	475	1,060	670
3. 급 여 총 액 (1+2)	705	927.5	1,247.5	2,162.5	1,327.5
4. 공 제 금					
○양 로 보 험 금	8.5	8.5	8.5	14.4	8.5
○공 기 금	5	5.9	6.2	7	5
○공 회 비	18	24	30	42	24
○기 타	4.5	6.15	8.75	12.1	7.7
합 계	36	44.55	53.45	75.5	45.2
5. 수 령 액(3~4)	669	882.95	1,194.05	2,087	1,282.3

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1) 노동규정에 나타난 원칙

- 첫째, 채용에 있어서 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간접모집만 허용하며, 원칙상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 둘째, 북한주민들이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도 각종 노력동원사업, 외화별이사업, 군중집회에 동원되고 있는데 반해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되지 않는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5조)고 규정.
- 셋째,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험, 사회보장혜택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출산휴가인정, 탁아시설설치의 무화 등을 규정.
- 넷째, 직업동맹의 활동인정 및 활동자금보장과 종업원의 권리 및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폭넓은 참여 및 감독권을 규정.

(2) 종업원의 채용

-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력의 채용에 있어서 직접 모집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재지관할 노동력알선기관과 노동력채용계약을 맺고 동기관을 통해서만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 북한측은 이에 대해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직접 모집을 하기 힘들므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직접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구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
- 채용은 기본적으로 북한 노동력이어야 하며 외국인노동력을 채용코

자 할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합의하여야 함.

- 북한기업과의 합작·합영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북한기업소 종업원을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편, 노동력알선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소재지안의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 타지역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3) 종업원의 퇴직 및 해고

-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정에 명시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직업동맹(이하 직맹) 및 해당 노동력 알선기관과 합의하고 1개월전에 노동력알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해고사유 및 절차〉

기업측 해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 공상이 아닌 병, 부상치료후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 파산에 직면하여 노동력 축소 또는 해산을 선포한 경우 ○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노동자측 사직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정 ○ 전공이 맞지 않아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고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 또는 공상으로 치료받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질병치료시 ○ 여종업원의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수유기인 경우
해고보조금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해고사유중 1~3번째 항목의 경우 ○ 노동자 사직사유중 2, 3번째 항목의 경우
해고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 최근 1개월분의 노임 ○ 1년 이상 : 최근 3개월 평균월노임×근무년수
해고사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명 및 해당 노동력알선기관과 합의 ○ 1개월전에 해당 노동력알선기관에 통보

(4) 노동시간 및 복리후생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6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근무시간의 노동은 원칙상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명과 합의한 경우에 한해 월 48시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함.
- 외국투자기업은 명절과 공휴일 휴식 및 정기, 보충, 산전·산후 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절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 1주일내에 대휴를 주게 되어 있음.
- 또한 관혼상제의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왕복여행일수는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함.

- 정기휴가 : 연간 14일(일을 시작한 후 11개월 지난 종업원에게만
줄 수 있음)
- 보충휴가 : 연간 7~21일(보충휴가는 유해 및 중노동부문, 정신적
피로를 많이 받는 부문 노동자에게 해당)
- 산전·산후휴가 : 연간 150일
- 특별휴가(관혼상제의 경우) : 연간 1~3일
-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휴가전 종업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데
보수액은 다음과 같음.
 - 휴가기간보수=(휴가전 3개월간 노동보수총액/실제가동일수)×휴가
일수

(5) 노동조합

- 북한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의 활
동을 보장해야 하며 종업원은 누구나 직업동맹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
짐.
- 직업동맹의 역할은 ① 종업원들과의 사업(정치사상교양사업, 과학기
술지식보급사업, 체육 및 문예활동 등) ② 기업측과 노동계약(단체계
약) 체결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 ③ 기업측과 종업원간의 노동분쟁
조정 ④ 종업원들이 권리·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참여 등으로 밝히고
있음.
- 직업동맹은 종업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노동조합 이상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임.
 - 노동조건의 이행과 감독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자유로

- 은 종업원 관리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의 성격때문에 기업외부의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없지 않음.
- 단체계약은 노동조건, 노동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합의하는데 서면으로만 작성하여 두 당사자가 서명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 단체계약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며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
 - 또한 단체계약은 노동력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데 단체계약에 위배되는 노동력 채용계약은 체결할 수 없음.
 -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의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종업원수 500명까지 :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2%
 - 종업원수 501~1,000명 :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1.5%
 - 종업원수 1,000명 이상 ; 전체 종업원 월노임의 1%

거. 해산 및 청산

- 합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병계약에 정한대로 하며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등록일부터 계산함.
 -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 존속기간종료 6개월전에 기업설립심사 승인기관에 존속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심사승인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승인해야 하며 ③ 승인시 합병기업은 20일내에 기업등록기관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 합병기업의 경우 기업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①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을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에 제출.
- ② 심사승인기관은 해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심사하고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린 다음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③ 승인시 합병기업은 승인일부터 15일 안에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 청산위원회에는 합병기업 책임자, 채권자 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

〈합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기업해산 사유〉

합 영 기 업	외 국 인 기 업
1.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합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기업설립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이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6. 기업설립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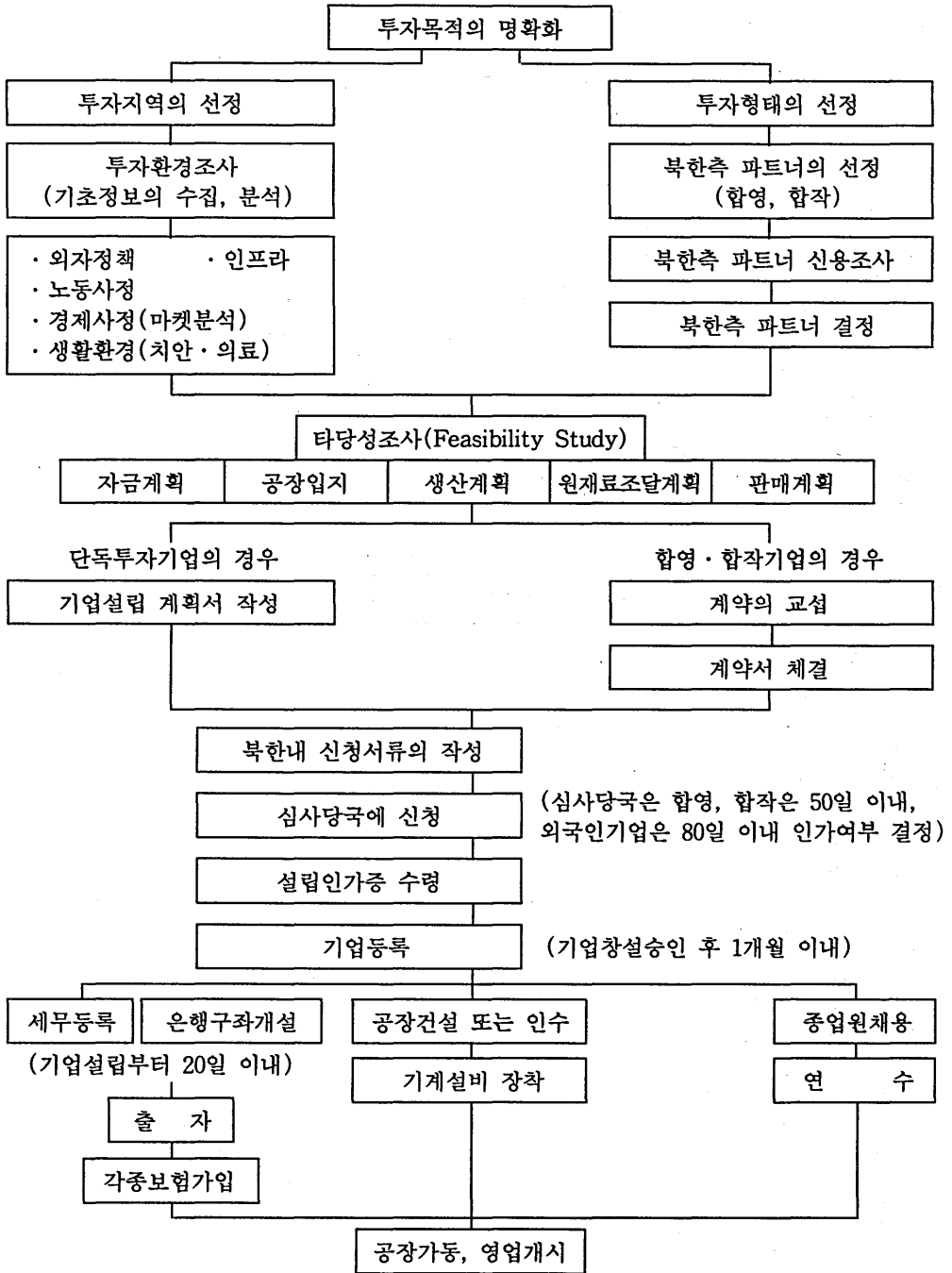
※ 북한은 기업활동기간을 합병기업의 경우 존속기간, 외국인기업의 경우 경영기간으로 칭하고 있음.

- ④ 청산위원회는 조직일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 해산을 통지하고 고시.
- ⑤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못받았으면 해산 공시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제출.
- ⑥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 청산위원회 성원들의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이사회 또는 재판소, 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함.
- ⑦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났을 경우 10일 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설립승인기관에 제출하며 파산에 의한 청산일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제출.
- ⑧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나는데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거래은행에 계좌취소신청.
- ⑨ 기업등록기관은 합병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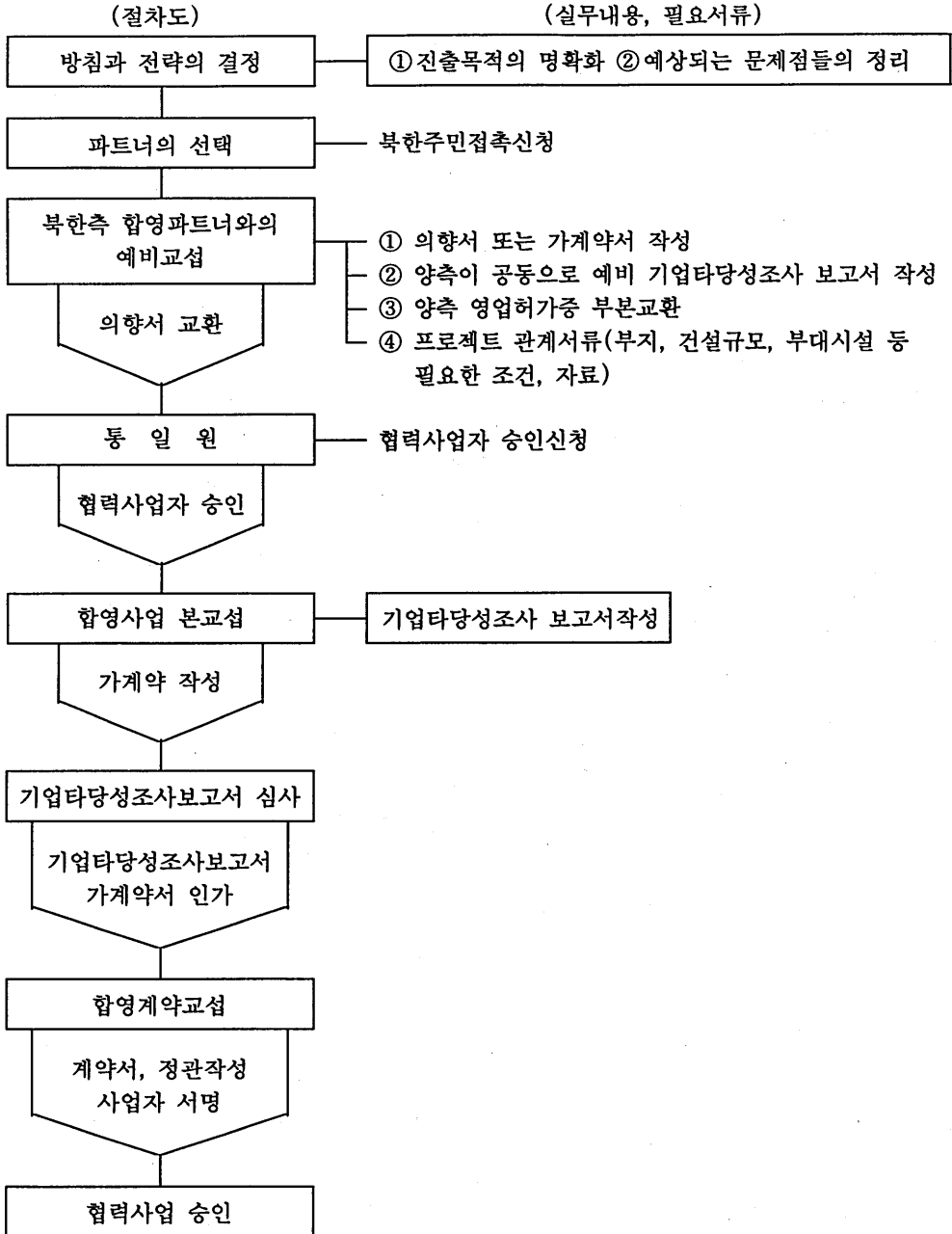
4. 설립수속 및 절차

-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기업설립신청에서 동기 등 북한내 절차는 합병기업, 합작기업의 경우는 북한측 파트너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것은 북한측의 임무라고 합병계약조항에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단독투자기업에 있어서는 북한대리기관, 대리인에 위탁하는 케이스가 많음.

가. 투자진출시 순서도



나. 합영, 합작기업 설립의 순서



5. 합병계약서 등의 모델

가. 계약서류의 종류와 효과

- 북한과의 합병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합병계약교섭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조인하기까지 「의향서」, 「협의서」 등의 문서가 교환됨.
- 의향서, 협의서 양 서류는 모두 파트너 쌍방이 서명하는 문서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의향서」, 「협의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1) 의향서

- 의향서는 「甲과 乙이 합병기업을 설립하는 방향에 상호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의향서」가 작성되어도 그 후 사정이 변하거나 다른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전의 파트너에게 통보하면 되며 영문으로는 LOI(Letter of Intent)로 표기.

(2) 협의서

- 「협의서」는 「의향서」보다 한단계 발전된 문서임. 기재내용이 「의향서」 보다는 구체적으로 되며 「계약서」의 토대가 됨.
- 협의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협의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상호간 파트너로서 지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본을 통상 4부 또는 그 이상 작성하며, 합영당사자가 각각 1부를 소지하고, 합영기업의 인가기관인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지대내는 시 행정경제위원회), 남한의 통일원에 원본 1부씩을 제출용으로 보관함.

-협의서의 백지철회는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여짐.

○ 그러나 다음 단계의 F.S(기업화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의서」에 정한 각종 조건을 변경하는 것, 예를 들면 합영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 토지임대료를 연간 평당 30원에서 25원으로 하는 것 등은 변경이 가능하다. 영문으로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표기함.

나. 의향서 샘플

○ A사(이하 “갑”이라고 함)와 B사(이하 “을”이라고 함)는 ○○(상품명)의 생산에 관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토론한 결과 199×년 ×월 ×일 ×(도시명)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다 음-

1. 쌍방은 합영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쌍방이 F.S(기업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2. 기업화조사항목은 갑이 제공하며 그 소요비용은 갑이 ○○%, 을이 ○○%를 분담한다.
3. 기업설립장소 : 잠정적으로 나진·선봉시 ○○區로 한다.

4. 합영기간 : 잠정적으로 ○○년으로 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기하도록 한다.
5. 생산품목 및 수량 : 본기업은 생산품목 ○○를 연 ○○개 생산한다.
6. 투자총액 : ○○만원, 토지면적 ○○M², 종업원 ○○명, 연 총생산액 ○○만원
7. 투자방법과 투자비율에 관하여
8. 설비, 기술의 도입에 관하여
9.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10. 원재료의 조달에 관하여
11. 이익의 손익배분은 투자비율에 의한다.
12. 본 의향서는 ○○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장소 :

갑을 대표하여

을을 대표하여

다. 협의서 샘플

갑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을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 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당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합병기업의 투자총액은 ○○로 한다.
 - 가.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로 하고, 갑의 출자액은 ○○으로 하고 등록자본총액의 ○○%로 한다.(출자금액의 일부를 건물, 설비 등으로 충당한다.)
 - 을의 출자액은 ○○으로 하고 등록자본총액의 ○○%로 한다.
6. 당 합병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제외한 유동자금 등 필요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다.
7. 공장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 공장소재지는 ○○로 하고 부지면적은 ○○㎡로 건물면적은 ○○㎡로 한다.
 - 갑은 관계토지관리부문 등에 자문을 받아 토지사용료를 ○○로 한다.
8.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9. 당 합병기업의 최고권력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명, 이사 ○○명, 총 ○○으로 구성된다.
10. 종업원을 ○○명으로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을 ○○로 하고, 이 가운데 ○○%를 복리비로 한다.
11. 기업 유보기금에 대한 사항(비율, 용도 등)
12. 갑, 을 쌍방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결손을 부담한다.
13. 합병기간은 기업등록증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년으로 한다. 출자자 쌍방의 합의와 관계인가기관의 비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4.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혹은 그 실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을 쌍방은 협의로 해결한다.

15. 본 협의서는 조선어로 각 ○○통을 작성하고 쌍방은 각 ○○통을 보유한
다. 협의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99 년 월 일

갑 : 대표자 서명

을 : 대표자 서명

라. 계약서 샘플

제 1 장 총 칙

대한민국 ○○주식회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는 양국간의 경
영기술협력관계 강화와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인투자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기초, 호혜평등의 정신을 기초하여 우호적
협의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XX 시에 공동출자로 합영기업을 설립
할 것을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장 합영당사자

제 1조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명 :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등기기관 :

법정소재지 :

법정대표자 :

나. 기업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이하 “을”이라 칭함)

등기기관 :

법정소재지 :

법정대표자 :

제 3 장 합영기업의 설립

제 2조 갑, 을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기타 공화국의 관계법규에 기초, 공화국의 ○○시에 ○○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칭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3조 합영기업의 명칭은 ○○으로 한다. 영문명칭은 ○○ Co. Ltd로 한다. 합영기업의 법정소재지는 ○○시이다.

단, 합영기업은 업무 발전과 필요에 따라 공화국 관련기관의 허가를 얻어 공화국 기타 지역 또는 국외에서 지점, 자회사, 사무소 및 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법률에 기초해서 설립한 공화국법인으로 공화국내에서의 활동은 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제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특전을 향유한다.

합영기업은 독립채산, 독립경영을 실행하고 제3자에 따른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그 소유하는 일체 자산에 대해서 스스로 지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조 합영기업의 조직형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에 정한 유한책임회사이다.

갑, 을 쌍방은 등록자본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각기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영의 목적, 범위, 규모

제 6조 갑, 을 쌍방이 설립한 합영기업 경영의 목적은 남, 북 양측의 경영기술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 경영관리의 수법을 채택, 선진기

술과 설비도입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출자자 쌍방이 만족하는 경영수익을 높이는데 있다.

주) 구체적 상황에 기초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 7조 합영기업의 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

나. ○○○

다. ○○○

라. 앞의 각항에 따른 업무

제 8조 합영기업의 경영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은 ○○년 ○○월부터 당장 ○○개를 생산목표로 한다.

나. 국내외의 시장 추이에 따라 이사회회의 협의 결정에 따라 생산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 9조 합영기업의 제품은 공화국 국내, 국외 시장에서 판매한다.

주) 북한 내·외에서의 판매방법, 분담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제 5 장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제 10조 합영기업의 총투자액은 조선원 ○○원(또는 쌍방이 협의, 결정한 외화)로 한다.

제 11조 갑, 을 쌍방의 출자액은 조선원 ○○원으로 이것을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으로 한다. 이 중에 갑은 ○○원, ○○%를 점하고 을은 ○○원, ○○%를 점한다.

제 12조 갑, 을 쌍방은 제11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한다.

- 갑 : 현 금 〇〇원
- 토지사용권 〇〇원
- 기계설비 〇〇원
- 공업소유권 〇〇원
- 기 타 〇〇원
- 합 계 〇〇원
- 을 : 공 장 건 물 〇〇원
- 기계설비 〇〇원
- 기 타 〇〇원
- 합 계 〇〇원

제 13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〇기로 나눠 불입하도록 하고 매 기 불입액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 갑, 을 어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자기의 출자액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인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자자의 어느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이 우선적으로 매수권을 갖는다.

출자자의 어느 일방이 제3자에 출자액을 양도할시의 조건은 출자자의 다른 일방에 양도할시의 조건보다 우대해서는 아니된다. 갑, 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출자액의 전부를 양도할시는 본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그 출자액을 양도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관련규정을 변경한다.

제 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각 당사자는 각각 제12조에 정한 출자비율에 기초하여 증가등록자본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각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증가등록자본을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이 증가등록자본총액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본래의 인가기관에 신청하고 그 심사기관이 지시한 등기기관에 변경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 16조 갑, 을 쌍방은 불입을 하기로 한 출자액에 대해서는 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6 장 자금차입 및 반제

제 17조 합병기업은 합병기업의 총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을 뺀 나머지의 소요자금 ○○원(이하 “차입금”이라 칭함) 및 기타 경영운전자금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합병기업이 스스로 차입하는 것으로 한다.

주) 구체적 상황에 기초 차입금의 조달선, 이율, 담보와 반제 등의 제 조건을 명기할 것.

제 7 장 합병당사자의 의무

제 18조 갑, 을 쌍방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본 계약의 원활한 집행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갑 : ① 제12조에 규정하는 출자에 대한 사항 : 현금,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기타 제공
- ② 합병기업의 운영, 생산에 필요한 건물, 구축물의 레이아웃 및 기계설비의 배치안 제공
- ③ 합병기업이 위탁한 국외에서의 기계, 설비, 부품, 원재료의 조달 등

관련사항의 처리

- ④ 기계설비, 시운전 및 제조가공표준,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
- ⑤ 갑이 파견한 관리, 기술자 및 일반종업원의 양성, 지도
- ⑥ 합영기업이 위탁하는 갑이 분담해야 하는 사항

을 : ① 제12조에 규정하는 출자에 대한 사항 : 현금, 기계설비, 공장건물, 토지사용권, 기타 제공

- ② 합영기업 설립에 대해서 북조선관련주관부문에 대한 허가신청, 설립등기, 영업허가 취득관련 수속
- ③ 토지구관부문에 대해 합영기업사용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에 관한 교섭, 수속
- ④ 합영기업 소요건물, 구축물 등의 공사청부부문의 알선 및 교섭
- ⑤ 갑이 출자한 기계설비에 관한 수입통관수속 및 공장건물소재지로의 운반 관련 협력
- ⑥ 공화국내에서 조달하는 합영기업 소요의 기계설비, 원재료, 운반기계 등에 관한 기타 경제조직과의 교섭에 관한 협력
- ⑦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관련 기초시설을 확보하는데 협력
- ⑧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화국측 경영관리자, 기술자 추천 및 일반종업원 모집에 대한 협력
- ⑨ 외국적의 합영기업 및 관련인원의 입국수속 및 집무, 생활전반에 관한 수배, 알선
- ⑩ 합영기업이 위탁하는 을이 분담해야 하는 사항

제 8 장 기술이전 및 상표사용

제 19조 갑, 을 쌍방은 갑이 합영기업에 대해 본 계약 제4장에서 규정한 제품 품질, 생산규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에 관한 이전을 별첨과 같이 계약하는데 동의한다.

제 20조 갑, 을 쌍방은 합영회사와 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 기타 필요한 조항은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기입한다.

제 9 장 원재료 · 부품조달 및 제품판매

제 21조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부품조달은 원재료, 부품조달계획에 따라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 22조 합영기업의 제품은 공화국 국내외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국내판매 부분을 ○○%, 국외수출분을 ○○%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니면 전량을 국외수출한다.

주) 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갑이 받아야 하는 이익을 해외송금하기 위한 외화보증에 관한 조치를 명기할 것. 국내 판매, 수출 등에 대해서 분담을 결정한다.

제 10 장 이 사 회

제 23조 합영기업의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합영기업의 이사회를 설립한다.

제 24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에 따라 구성되며 이 중에 갑은 ○○명, 을은 ○○명을 임명, 파견한다. 이사장은 갑(혹은 을) 측에서 임명파견, 부이사장은 을(혹은 갑)측에서 임명파견된다.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

는 4년으로 하고 파견측이 계속해서 파견한다면 유임할 수 있다. 어느 한 편이 이사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교체 30일전에 서면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25 조 이사회는 합병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합병기업에 관한 모든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장은 합병회사의 법정대표다. 이사장이 사고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의하는 기타 이사에게 임시로 대표권을 줄 수가 있다.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의 출석으로써 성립된다.

제 26 조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1/3 이상 이사의 제안이 있으면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또한 임시이사회회의 개최통지에 즈음해서는 의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의 의사록은 조선어로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 전원이 서명한 후 합병기업이 해산시까지 보관하고 동시에 그 사본을 갑, 을 쌍방에 송부한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합병기업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주 : 개최비용부담에 대해서 결정한다)

만약, 갑, 을 쌍방이 동의한다면 기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전원 일치(또는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의 ○명 이상, 또는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 합병회사의 정관 개정
- ② 합병회사의 중지, 해산
- ③ 합병회사의 등록자본의 증자, 양도
- ④ 합병회사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 ⑤ 공화국 국외에서의 지점, 자회사, 관계회사, 사무소 또는 대리기관의 설치 및 폐지
- ⑥ 합병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중요 자산 일부 양도
- ⑦ 기타 경제조직의 중요자산의 양수

제 28 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2/3(또는 과반수, 또는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의 ○명) 이상 이사의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 ① 연도생산계획, 판매계획, 발전계획 결정
- ② 연도재무예산, 결산, 회계보고 승인
- ③ 연도 이익처분 또는 손실처리방법 결정
- ④ 회계처리규칙 및 변경
- ⑤ 조직, 기구 결정 및 변경
- ⑥ 총사장의 연도경영보고의 심사 및 승인
- ⑦ 종업원의 임금, 복리, 대우 등 노동관리에 관한 규정 결정
- ⑧ 총사장, 부총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임면 및 내부 또는 외부감사인의 임면
- ⑨ 이사에 의해 제출된 의안의 심의 및 결의
- ⑩ 기타 중요사항의 결정

제 11 장 경영관리기구

제 29 조 합병회사는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총사장 1명을 두고 을(또는 갑)이 파견한다. 또한 부총사장 1명을 두고 갑(또는 을)이 파견한다. 총사장, 부총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기타 고급관리직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30 조 총사장은 이사회 의 각 사항 의 결의 를 집행 하고 합병 회사 의 일상 경영 관리 업무 를 조직 분담 한다. 부총사장은 총사장 을 보좌 한다. 경영 관리 기구 는 필요 에 따라 부문을 설립 하고 각 부문 의 책임자 는 총사장 에 의해 지명 되며 총사장, 총부사장 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 을 처리 하고 총사장 과 부총사장 에 대해 책임 을 진다.

제 31 조 총사장 및 부총사장 은 다른 어떤 경제 조직 의 일상 경영 관리 에서 최고 직 또는 부최고 직 을 겸임 할 수 없고 또한 본 합병 회사 에 대한 어떤 상업 적 경쟁 을 갖고 있는 다른 경제 조직 에 참여 해서 는 안 된다.

제 32 조 총사장 에게 부정 행위 나 중대 한 과실 이 생긴 경우 는 이사회 의 결의 에 따라 수시로 해임 할 수 있다.

제 12 장 노동 관리

제 33 조 합병 회사 의 종업원 모집, 해고, 임금, 사회 보험, 복리 후생 과 상벌 등 에 관한 사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자 기업 노동 관리 규정” 및 그 실시 세칙, 관련 법규 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합병 회사 의 종업원 고용 에서는 인력 알선 기관 이 소개 한 인력 중 우수한 자를 선택 해서 채용 한다. 시험 합격 자는 합병 회사 와 인력 알선 기관 간 에 노동 계약 을 체결 한다.

노동 계약 체결 후 합병 회사 는 당지 노동 관리 부문 에 보고 하여 등록 한다.

제 34 조 갑, 을 쌍방 이 파견 하는 고급 관리 의 고용, 임금 대우, 사회 보험, 복리 후생, 출장 여비 기준 등은 이사회 가 규칙 을 정한다.

또한 합병 회사 의 외국 적 고급 관리 자 에 지급 하는 보수, 급료 등은 외화로 지급 한다.

제 13 장 노동 조합

제 35 조 합병 회사 의 종업원 은 외국 투자 노동 규정 에 기초, 직업 동맹 을 조직 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 장 세무, 재무, 회계감사

제 36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기타 공화국의 관련법규와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의 세금을 납부한다. 합영회사의 종업원은 상기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 37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이 윤내에서 예비기금, 기업발전기금 및 종업원복리장려기금을 공제한다. 각 연도의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경영상황에 따라 토의 결정한다.

제 38 조 합영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모든 회계증빙, 장부, 전표, 재무제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外國投資企業會計制度”에 기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법으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선어로 기장한다. 인민폐로 기장한 것을 정규의 회계서류로서 작성하고 당지의 재무, 세무부문에 보고해서 보존토록 한다.

제 39 조 합영회사의 재무·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재정검열원이 심사, 종합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사장에게 보고한다. 감이 다른 국가의 회계감사인을 초빙해서 연도재무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을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감이 부담한다.

제 40 조 합영회사는 매영업연도의 처음 3개월 이내에 총사장이 매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분배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에서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제 41 조 합영회사는 기업등록증에 기초, 공화국 외국환관리기관이 인가한 외화업무를 하는 은행에 외화 구좌를 개설한다.

제 15 장 이익분배

제 42조 합영회사의 이익 및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증자는 하지 않는다.
- ② 손실을 보전할때까지 이익분배는 하지 않는다.
- ③ 본계약 제12조에서 정한 합영당사자의 등록자본에 차지하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④ 이익분배는 매년 1회로 하고 이사회가 그 분배액 및 분배방법을 결정한다.
- ⑤ 이익분배에 사용하는 통화는 갑에 대해서는 외화를 우선한다. 외화가 갑에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합영회사가 북한원을 외화로 교환해서 분배한다. 교환할시에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제 16 장 합영기간

제 43조 합영회사의 경영기간은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년으로 한다.

일방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서 일치를 본 경우, 합영기간 만료 6개월전에 원래 허가기관에 신청한 합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장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 44조 합영기간 만료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 을 어느 일방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해산을 결정하고 본래의 심사·인가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합병기간이 만료되어 합병기간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합병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어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③ 출자자의 어느 한편이 합병회사의 결정, 계약, 정관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자연재해, 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⑤ 합병회사가 그경영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동시에 장래적 발전 전망이 없는 경우
- ⑥ 기타 출자자 쌍방이 중도해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래의 심사, 인가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는 합병회사의 휴업을 포함,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45 조 합병기간 만료 또는 만료전에 합병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청산한다.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갑, 을 쌍방이 등록자본에서 차지하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잔존자산의 가격평가는 시가(또는 등가)에 기초해서 계산한다.

제 46 조 합병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이사회는 절차, 원칙을 정하고 청산위원회의 인선을 제출하고 합병기업주관부문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을 받는다.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합병기업의 대표,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된다. 인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원을 파견, 감독시킬 수 있다.

제 18 장 보 험

제 47 조 합병회사의 활동에 따른 필요한 각종 보험은 공화국내에서 보험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공사에 부보한다. 단지 이러한 공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 공화국 국외의 보험회사에 부보할 수 있다.

보험종류, 보험료, 보험기간 등은 부보하는 보험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9 장 계약 개정, 변경 및 해제

제 48조 본계약서 및 기타 부속문서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그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명란에 서명을 한 가운데 동계약을 인가한 인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유효하다.

제 49조 본계약 43조, 44조에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시 또는 합영기간이 만료되고 동시 그 연장수속을 하지 않을시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0 장 위약 책임

제 50조 갑, 을 어느 일방이 계약, 정관에 규정한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정관에 크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합영회사가 경영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에 규정된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일방은 위약한 측에 경제적 손실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계약 규정에 따라 원래의 인가기관에 대해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갑, 을 쌍방이 계속한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위약한 측은 합영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51조 합영파트너 어느 일방이 본계약서 제5장에 규정하는 대로 출자액 불입을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기일을 넘어서 제 1개월부터 기산하여 1개월

초과때마다 위약한 일방은 출자해야 하는 금액의 〇〇%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해서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의 〇〇%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본계약서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위약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2 조 합영파트너 어느 일방의 과실에 따라 본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을 할 수 없든가 또는 이행이 완결되지 않을 시에는 과실한 일방이 위약의 책임을 진다. 만약 쌍방의 과실이 있을시에는 실제 상황에 기초 쌍방이 각기 위약의 책임을 진다.

제 21 장 불가항력

제 53 조 갑, 을 어느 일방 또는 합영회사가 지진, 태풍, 화재, 수해,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내란 및 기타 당사자에 의해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동시에 발생 및 그 결과를 예방할 수 없고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규정된 조건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상기의 불가항력에 접한 당사자는 바로 다른 당사자에 대해 불가항력의 상황을 통지하고 동시에 15일 이내에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 및 계약 이행불능,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연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기술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가항력이 이행 책임을 일부 면제하든가, 아니하든가 또는 본계약의 이행을 연기하든가, 아니하든가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 22 장 준 거 법

제 54 조 본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쟁의의 해결은 모두 조선민주주

의 인민공화국 관계법규의 관할을 받는다.

제 23 장 분쟁의 해결

제 55조 출자자 쌍방이 합영회사에 관한 결정, 계약서, 정관 등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상사중재원에 따라 행해진다.

제 24 장 부 칙

제 56조 본 계약은 합영회사의 정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과 합영회사정관의 규정 및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본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제 57조 본계약의 규정에 기초 아래와 같은 부속협의를 체결한다. 이것은 본계약의 불가분한 구성성분으로 본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주) 부속협의를 체결한 경우는 그 리스트를 기입한다.

제 58조 본계약은 각기 수권받은 대표자 일방의 교체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제 59조 본 계약은 1900년 ○○월 ○○일 ○○시에서 조인하고 ○○어로 각 ○○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통을 보유한다.

제 60조 본 계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 승인일을 발효일로 한다.

갑 대한민국 ○○주식회사

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회사

부 록

1.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32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336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356
■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 처리방법	359
■ 남북한 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36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365
■ 남북한간수송장비운송승인신청에관한고시	377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379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387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394
■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399
■ 남북협력기금법	412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417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424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4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 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조 (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3 조 (반출 · 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 ·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4 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 ·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 · 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 15 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 · 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 ·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 (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6 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하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27 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 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8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 29 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30 조 (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 칙<90.12.2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92.12. 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94.12.3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 (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준용규정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 · 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 8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0 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 12 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인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 13 조 (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

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 15 조 (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 16 조 (방문기간) ① 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 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증명서의 반납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19 조 (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

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 20 조 (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 22 조 (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23 조 (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 24 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교 역

제 25 조 (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6 조 (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 27 조 (변경 승인사항 등)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 (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통상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9 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

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 30 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 31 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33 조 (취소절차) ①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4 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 35 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36 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은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8 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9 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0 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 41 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42 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 44 조 (협 의 등) ① 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선박 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 46 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 47 조 (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 48 조 (목적)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49 조 (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0 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

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 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 51 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제 52 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가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 53 조 (남북교류 · 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 · 징수 · 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에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 · 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1. 2. 1>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1. 12. 31>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93. 3. 6>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3. 3. 30>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 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 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 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북한방문신고서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 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출입신고서 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 마. 보호문화재 등
-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나. 검역대상 물품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① 이 요령은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 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화폐등의 신고)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휴대품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발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검사방법)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 (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반출입 규제물품) ① 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 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제한 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 (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에 규정에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 10 조 (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 등

제 11 조 (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 12 조 (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개정 1994.12. 1 통일원고시 제94-4호
개정 1995. 1. 3 통일원고시 제95-1호
개정 1996. 3. 5 통일원고시 제96-1호
개정 1997. 4. 1 통일원고시 제97-1호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품목분류)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 3조(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교역대상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본다.

1.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2. 반출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설비
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re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나.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다. 설비 반출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
계하는 경우

3. 반입물품으로서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필름
포함), 엽서·연하장

4.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포괄승인의 범위를 벗어나 반출·입하
는 품목

제 4 조(반출·입 포괄승인품목) ① 교역대상물품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
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의 품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1. 유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2.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②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제 5 조(반출·입의 승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
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국방부장관·통상산업부장
관등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의 반출·입은 별도의 개

별적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입 승인 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받은 반출·입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중우/젓소)
2	0102-10-2000	소(중우/육우)
3	0102-10-9000	소(중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도체/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4000	덤(활어)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명
21	0301-99-9050	농어(활어)
22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23	0303-79-3000	갈치(냉동)
24	0303-79-6000	조기(냉동)
25	0303-79-9093	홍어(냉동)
26	0303-79-9099	기타(냉동)
27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8	0307-49-1020	오징어(냉동)
29	0307-59-1020	낙지(냉동)
30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0.5% 이하)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6	0402-91-1000	무당연유
37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8	0402-99-1000	가당연유
39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40	0403-90-1000	버터밀크
41	0404-10-1010	유장분말
42	0404-10-1090	유장분말 기타
43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44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5	0408-99-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 / 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46	0409-00-0000	천연꿀
47	0410-00-3000	로얄제리
48	0506-90-2000	꿀분
49	0701-10-0000	감자(종자용)
50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51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2	0703-20-0000	마늘(신선·냉장)
53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 / 고추류의 것)
56	0712-20-0000	양파(건조)
57	0712-90-1000	마늘(건조)
58	0712-90-2091	단옥수수(종자용)
59	0712-90-2092	단옥수수(기타)
60	0713-31-1000	녹두(건조 / 종자용)
61	0713-31-9000	녹두(건조 / 종자용 이외)
62	0713-32-1000	팥(건조 / 종자용)
63	0713-32-9000	팥(건조 / 종자용 이외)
64	0714-10-2010	매니옥 칩(건조)
65	0714-20-1000	고구마(신선)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6	0714-20-2000	고구마(건조)
67	0714-20-3000	고구마(냉장)
68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69	0714-90-9090	서류(기타)
70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71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72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 /신선·건조)
73	0802-40-2000	밤(탈각한 것 /신선·건조)
74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 /신선·건조)
75	0802-90-1020	잣(탈각한 것 /신선·건조)
76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77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 /신선·건조)
78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 푸르트 이외 /신선·건조)
79	0810-90-3000	대추(신선)
80	0813-40-2000	대추(건조)
81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3kg 이하 포장)
82	0902-20-0000	녹차(기타 /발효하지 아니한 것)
83	0904-20-1000	고추(건조 /분쇄하지 아니한 것)
84	0904-20-2000	고추(건조 /분쇄한 것)
85	0910-10-0000	생강
86	1002-00-1000	호밀(종자용)
87	1003-00-1000	맥주맥
88	1003-00-9010	겉보리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89	1003-00-9020	쌀보리
90	1003-00-9090	보리(맥주맥 · 겉보리 · 쌀보리 이외)
91	1004-00-1000	귀리(종자용)
92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9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94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95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 · 사료용 · 팝콘용 이외)
96	1006-10-0000	벼
97	1006-20-1000	메현미
98	1006-20-2000	찰현미
99	1006-30-1000	맷쌀
100	1006-30-2000	참쌀
101	1006-40-0000	쇄미
102	1007-00-1000	수수(종자용)
103	1008-10-0000	메밀
104	1008-90-0000	곡물류(메밀 · 조 · 카나리시드 등 이외)
105	1102-30-0000	쌀가루
106	1102-90-1000	보리가루
107	1102-90-9000	곡분(쌀 · 호밀 · 옥수수 · 밀 · 메슬린 · 보리가루 이외)
108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9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10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11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12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13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4	1103-21-0000	밀(펠리트)
115	1103-29-1000	쌀(펠리트)
116	1103-29-2000	보리(펠리트)
117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18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9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20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21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22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3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4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25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26	1104-2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이외)
127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8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9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30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31	1108-11-0000	밀 전분
132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33	1108-13-0000	감자 전분
134	1108-14-0000	매니옥 전분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명
135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36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7	1108-20-0000	이눌린
138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39	1201-00-2000	대두(식용)
140	1201-00-9000	대두(기타)
141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42	1202-20-0000	낙화생(탈각)
143	1207-40-0000	참깨
144	1211-20-1100	수삼
145	1211-20-1210	백삼(본삼)
146	1211-20-1220	백삼(미삼)
147	1211-20-1240	백삼(잡삼)
148	1211-20-1310	홍삼(본삼)
149	1211-20-1320	홍삼(미삼)
150	1211-20-1330	홍삼(잡삼)
151	1211-20-2210	홍삼분
152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5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54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55	1211-20-9200	인삼종자
156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5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8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9	1302-19-1210	홍삼정
160	1302-19-1220	홍삼정분
161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162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3	1702-11-1000	유당
164	1702-19-1000	유당
165	1702-90-1000	인조꿀
166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7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8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9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70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1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72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73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4	1902-19-2000	당면
175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6	2009-11-1000	오렌지주스(냉동/농축)
177	2009-11-9000	오렌지주스(냉동/농축 이외)
178	2009-19-1000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179	2009-19-9000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이외)
180	2009-30-9000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81	2103-90-9040	메주
182	2106-90-3021	홍삼차
18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4	2106-90-9091	벌꿀 조제품의 것
185	2207-10-90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조주정 이외/알콜 용량 80% 이상/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186	2301-10-1000	육, 설육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187	2309-90-1091	기타 배합사료(대용유의 것)
188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 주로 한 것)
189	2309-90-2020	보조사료(향미제 주로 한 것)
190	2309-90-2099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향미제 이외 주원료)
191	2309-90-9000	사료용 조제품(개·고양이용 이외/배합사료·단미·보조사료·사료첨가제 이외)
192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93	3505-10-3000	배소전분
194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95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96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7	3505-20-1000	전분 글루
198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99	3505-20-9000	기타 글루
200	5001-00-0000	누에고치
201	5002-00-1020	생사(백잠사/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
202	5002-00-1030	생사(백잠사/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
203	5002-00-1040	생사(백잠사/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
204	5002-00-1050	생사(백잠사/36.67 데시텍스 초과)
205	5004-00-0000	견사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20 통일원고시 제94-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 (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2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변경승인신청)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1조의 운행승인신

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추가자료 요구) 통일원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 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 (물품의 장치)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한다.

제 5 조 (반입절차)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 6 조 (관세) ①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내국세 등)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 (물품가격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

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반출승인) 또는(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구비조건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당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 승인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 13 조 (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 14 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 15 조 (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 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 17 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8 조 (심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 19 조 (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 (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3.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 21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구비조건의 확인) 제10조에서 구비조건의 확인이라 함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관세청예규 제137-0-00-219, '90. 9. 4)은 폐지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4.12. 1 통일원고시 제94-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원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 (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원 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 4 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 (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원 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사업자의 방북) ①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귀환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1부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의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 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 12 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원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 상황(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 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 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의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 (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 (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원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내용변경 신고) ① 사무소를 설치한 후 그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무소 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 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유효기간) ①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원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귀환후 증명서를 통일원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 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 6.28 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 (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 5 조 (적용규정) ① 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조 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 (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 6 조 (투자의 요건)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 7 조 (투자의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지법인의 대북투자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 8 조 (의견요청) 제6조 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금의 송금 등) ① 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

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자금 등의 회수) ①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 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 11 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대북투자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북한지사

제 14 조 (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 15 조 (북한지사의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② 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 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 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 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은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 20 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북한지사의 폐지등) ① 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현지금융) ① 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

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 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

⑥ 재정경제원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 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 제2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 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 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 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 25 조 (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개정법률)

1993.12.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의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조(장기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제 7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 9 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
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르,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
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
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10 조 (일시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고 및 환수) ①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
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 13 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 14 조 (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27〉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93.12.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 (채권의 발행)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 (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 (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④ 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지원의 방법) ① 법 제 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

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 11 조 (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 15 조 (결산보고서) ① 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16 조 (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 17 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 (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9 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 20 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3.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

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외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를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17 통일원고시 제91-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탁수수료) ① 통일원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 제 8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 상 지 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10 조 (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

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 12 조 (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 13 조 (지원절차)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14 조 (지원통화)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 15 조 (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 18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9 조 (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내 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 20 조 (지원절차)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 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 21 조 (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지원신청 변경)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신청인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3 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24 조 (지원통화)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 25 조 (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

제 26 조 (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 27 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 28 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 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다.

- 제 29 조 (손실보조 약정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 30 조 (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 조 (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 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 34 조 (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5 조 (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 37 조 (면책) ① 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8 조 (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39 조 (손실보조금의 반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원장

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0 조 (대위권) ①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1 조 (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 42 조 (회수금의 납부) ① 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 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

하는 채권행사에 관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 44 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 45 조 (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이내로 한다.

제 46 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5%로 한다.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제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이자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

자금의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 방법

원금은 연1회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
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47 조 (사전협의) ①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관
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 (대출절차)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
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
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49 조 (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대출금 상환) ① 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 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 51 조 (대출조건 변경) ①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 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 52 조 (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거래와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 · 반입자금대출 등

제 53 조 (반출 · 반입자금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 · 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 · 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 · 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통일원장관은 반출 · 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4 조 (결과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무보증

제 55 조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제 56 조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57 조 (보증절차)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 58 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 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존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 59 조 (손실보전 신청 등) ① 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60 조 (보전이자율 등)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 61 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엔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의 미결제채권인수

제 62 조 (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 63 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 64 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 (인수조건 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66 조 (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원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 67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68 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9 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70 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 71 조 (기금의 출연)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72 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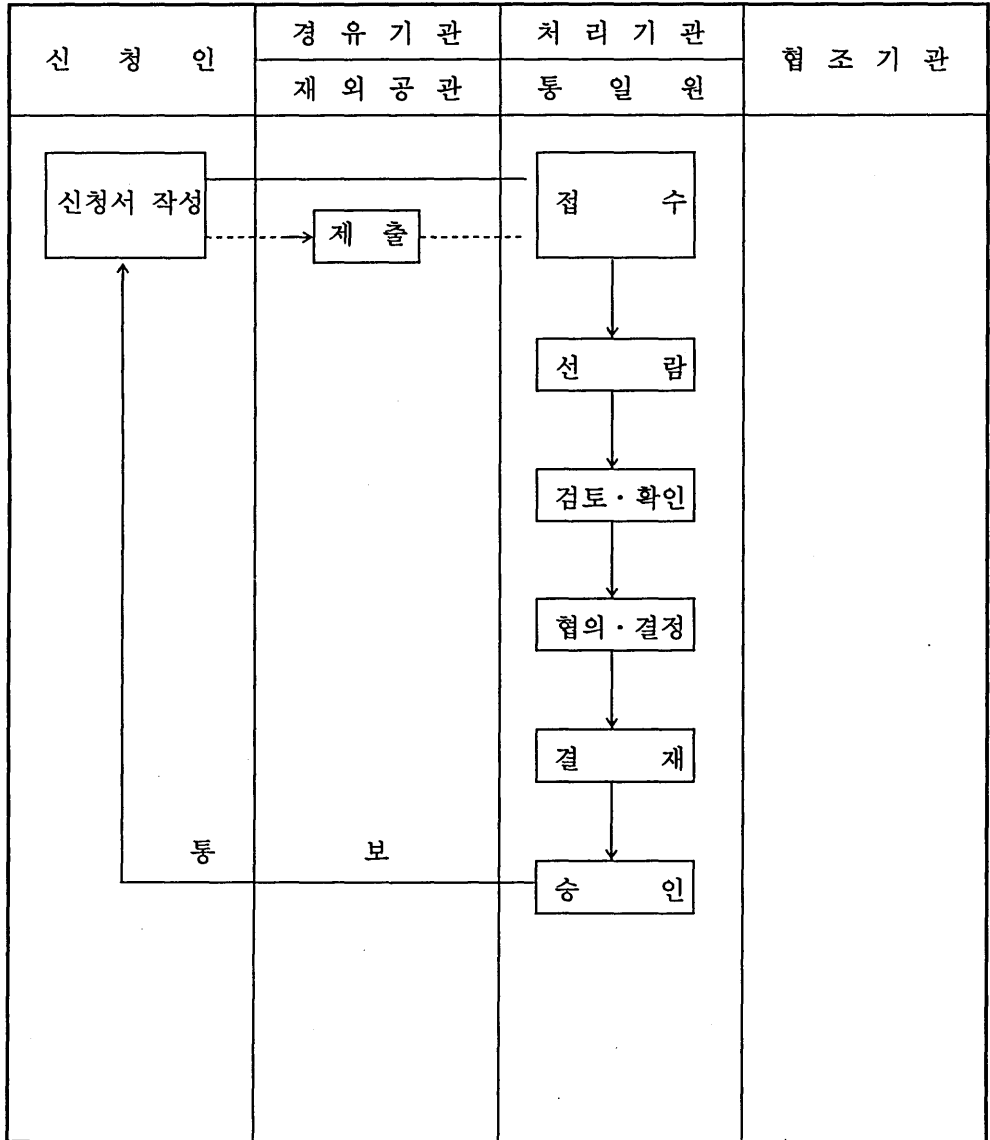
2.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서식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451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453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454
■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456
■ 협력사업자승인증	458
■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459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460
■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462
■ 협력사업보고서	463
■ 북한방문신고서	464
■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465
■ 사무소설치승인증	467
■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	468
■ 사무소폐지신고서	469
■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	470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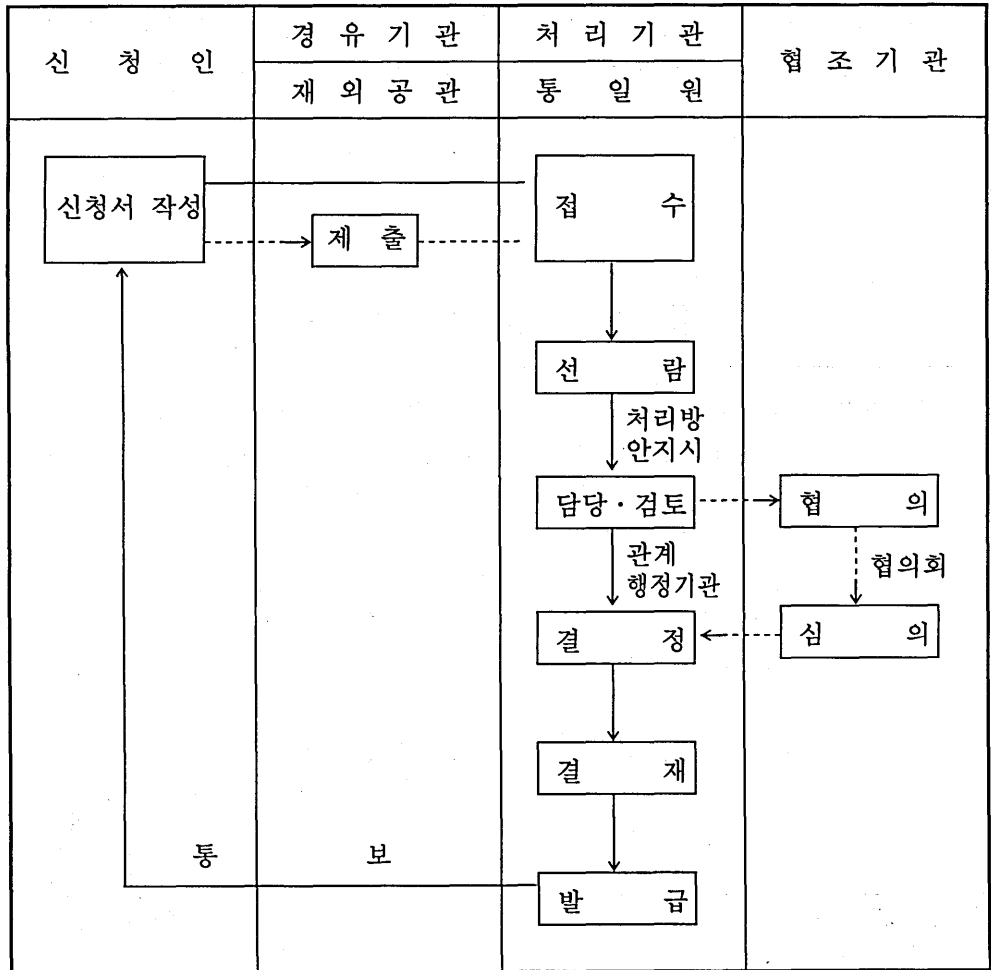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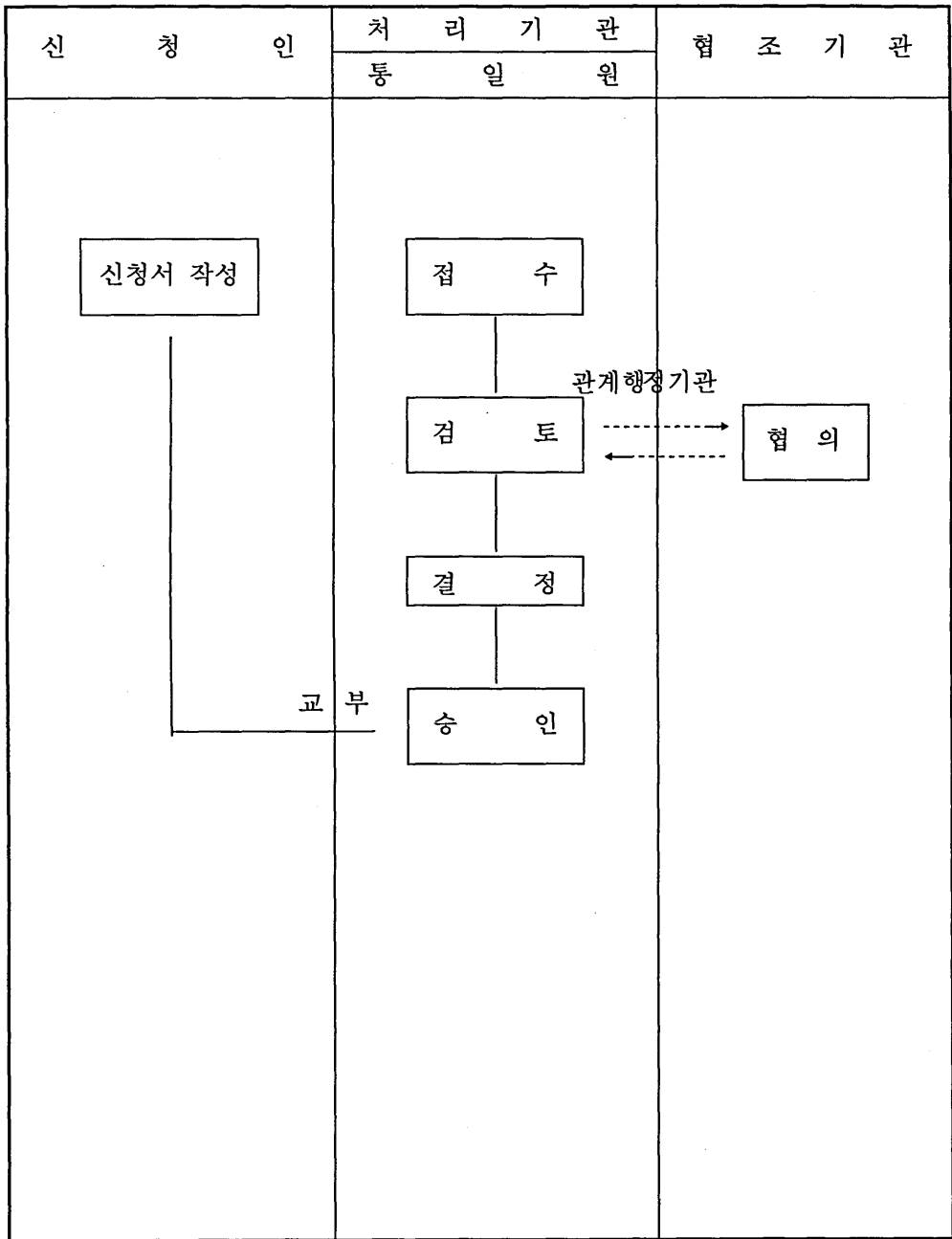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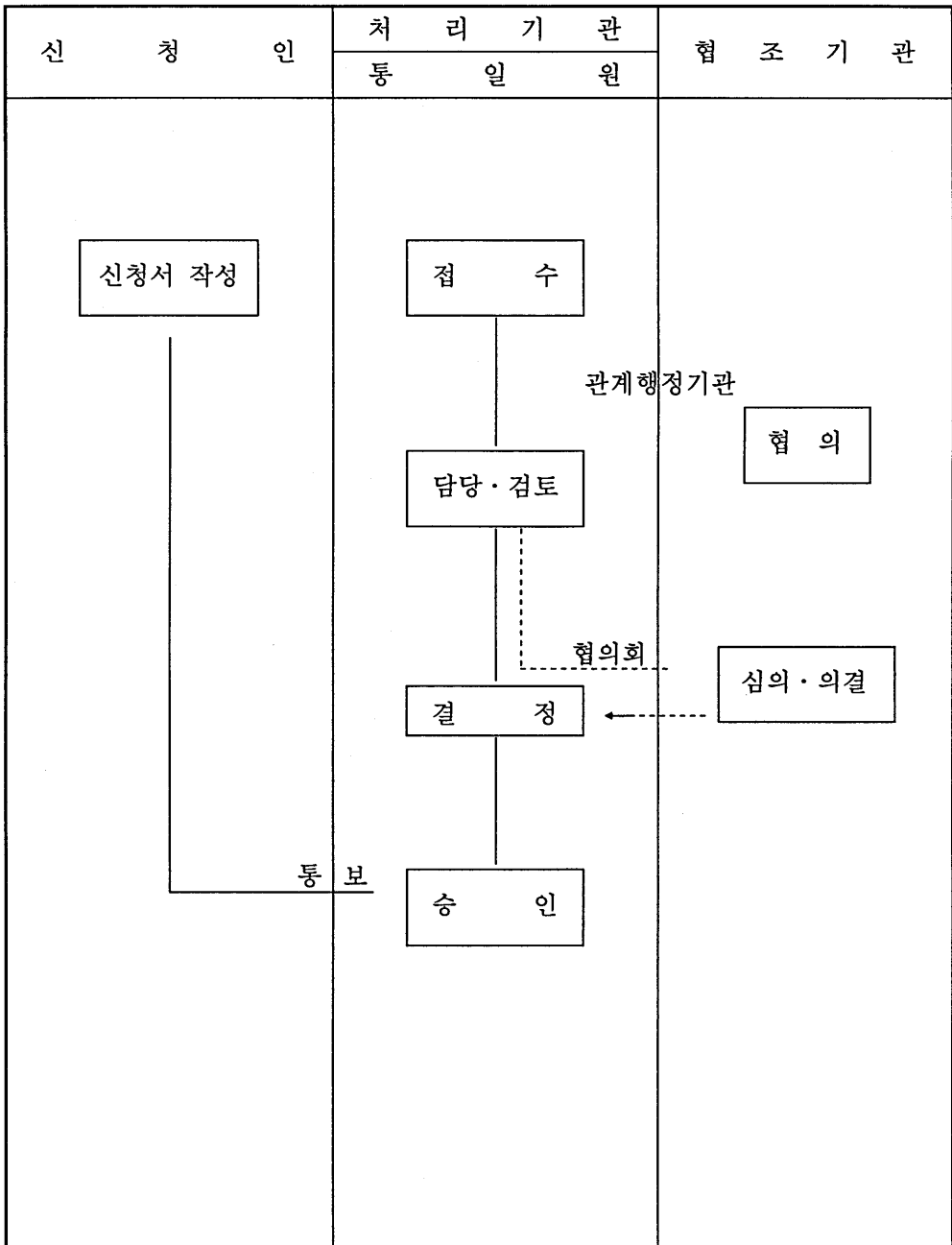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11022-01411 민
'90.10.1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 / 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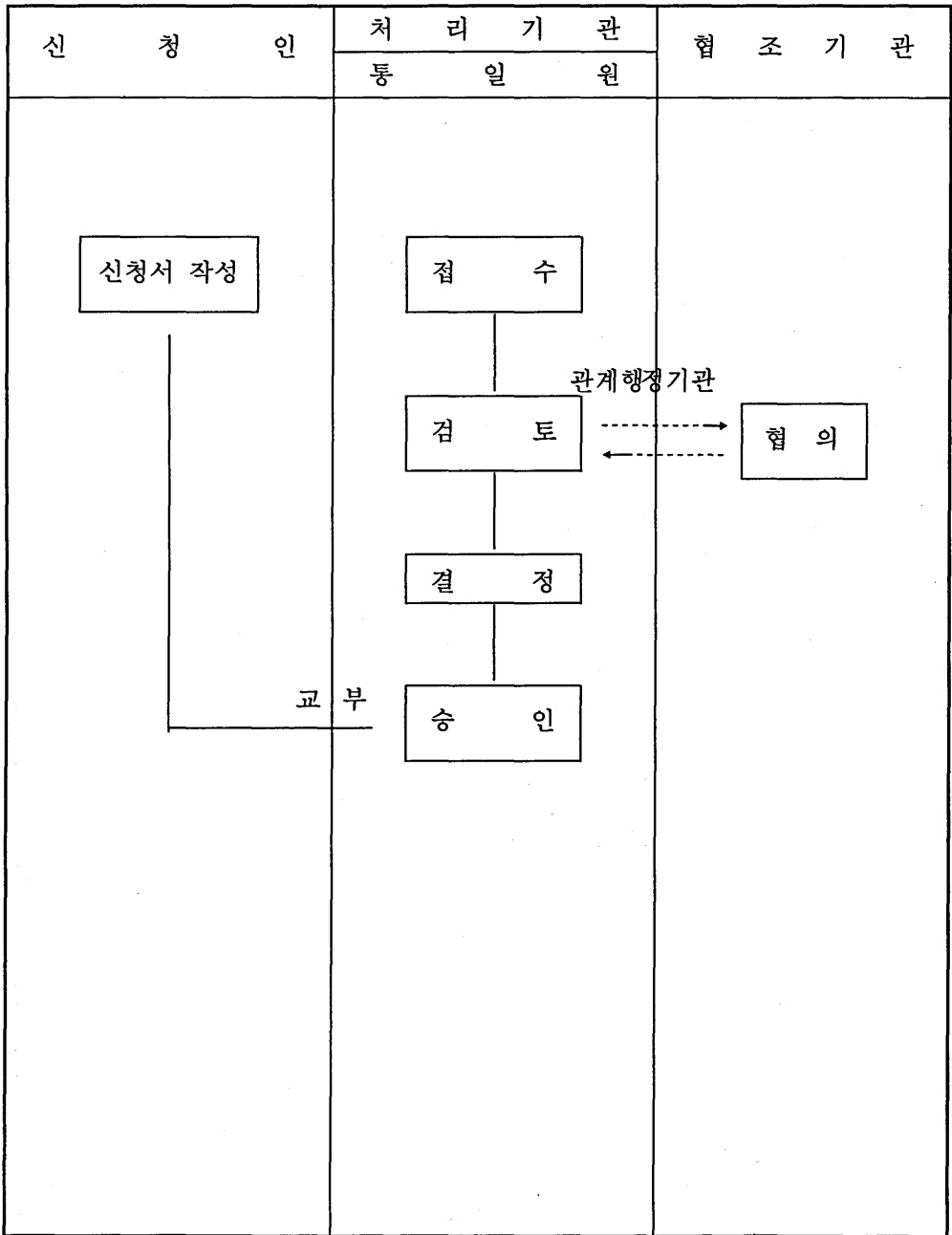
협력사업보고서

보 고 인	① 단 체 명 (상 호)		② 협 력 사 업 자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⑦ 사 업 명			
	⑧ 승 인(변경) 일 자		⑨ 승 인 번 호	
보 고 사 유				
보 고 개 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보고개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사무소설치승인증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업 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소 설치를 승인합니다.

⑥설 치 목 적		⑦승 인 번 호	
⑧사 무 소 명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주 재 원 수	본사파견: 현지고용:	⑬활 동 내 용	
⑭상 주 기 간	년 (년 월 일까지)	⑮ 승 인 일	년 월 일
⑯승 인 조 건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11313-03111 민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

부 록

3.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분야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희망분야 473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신규투자리스트 479
- 대일본 투자요청 분야 483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투자 희망분야 487

3.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분야

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 희망분야

(1) 당초 개발계획

○ 단계별 개발목표와 중점프로젝트

구 분	제1단계(1993-1995)	제2단계(1996-2000)	제3단계(2001-2010)
개발목표	-국제화물중계를 위한 인프라 정비	-인프라 건설 확대와 수출주도형 가공산업육성	-종합적인 국제교역 거점도시 건설
중 점 프로젝트	· 나진·선봉 및 청진항 확장 · 중국, 러시아 접속 철도 및 도로건설 · 공단건설(신흥, 동명, 창평, 청계, 백학)	· 항만확장 · 중국, 러시아 접속 고속도로 건설 · 공단건설(웅상, 관곡)	· 항만확장 · 공단건설(후창, 홍의)

○ 인프라부문 개발계획

(단위 : 만달러)

투자부문	사업명	투자내용	총투자액	투자방식
항만부문	나진항 확장	-5,000만톤/년(이중 컨테이너500만 TEU)	152,000	합작, 합영
	청진서항 확장	-1,000만톤/년	13,500	합영
	선봉항 확장	-1,000만톤/년(나진시 관곡동)	150	합작

투자부문	사업명	투자내용	총투자액	투자방식
철도부문	회령·학송 철도 전기화	- 전기화 연장 : 168.2km	5,994	합작
	구룡평·조산리 광궤신설	- 철도연장 : 13.4km	2,640	합작
	두만강 복선철교 신설	- 다리연장 : 590m	1,420	합작
	나진역 확장	- 구내선 : 12km	361	합작
	두만강역 구내 자동화	- 신호장치 및 역 운영 자 동화	1,960	합작
	청진·두만강 통 신 현대화	- 재래식 통신설비를 현대 화 - 연장 : 129km, 역수 : 30 개역	3,437	합작
도로부문	나진·새별(훈 춘)간 고속도로 신설	- 건설연장 : 73km - 도로너비 : 19-20m - 화물통과능력 : 1,200- 1,500만톤/년	10,340	합영
	청진·회령(삼 합)간 고속도로 신설	- 건설연장 : 82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 1,300만톤/년	8,480	합영
	나진(하회)·두 만강간 고속도로 신설	- 총연장 : 45km(중첩 : 27km, 건설 : 18km) - 도로너비(중첩구간 : 24m, 건설구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500만톤	920	합영

투자부문	사업명	투자내용	총투자액	투자방식
도로부문	청진·나진간 고속도로 신설	- 건설연장 : 67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9,370	합작
	새별·남양(도문)간 고속도로 신설	- 노선연장 : 67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4,600	합영
	하여평·원정(경신)간 고속도로 신설	- 노선연장 : 7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940	합영
항공부문	선봉비행장(공항)신설	- 여객수송량 : 2,000만명/년 - 화물수송능력 : 250만톤/년 - 총부지 : 870만㎡(선봉군 부포리, 굴포리)	72,856	합영, 합작
통신부문	나진통신센터	- 건설 부지 : 2만5천㎡(나진시 남산동) - 연건축면적 : 1만1천㎡ - 교환 능력 : 4만회선	4,090	합작
	위성통신지구국 통신분국 신설	- 건물면적 : 4,800㎡×4 - 교환능력 : 14만7천8백회선(선봉, 응상, 후창, 나진일대)	14,766	합작

투자부문	사업명	투자내용	총투자액	투자방식
전력부문	6월16일(선봉)화력발전소 확장	- 발전능력 증대 : 20만 kw→40만kw(나진시 관곡동)	16,000	합작
관광 및 서비스 부문	안주(대초도)·신해(비파도)관광지개발	- 개발면적 : 2,600만㎡	5,900	합작
	우암-굴포관광지 개발	- 개발면적 : 7,800만㎡	2,300	합작, 합영, 단독투자
	나진·선봉 개발 촉진센터	- 행정, 통신, 무역, 은행, 상업, 회의 등 업무지원 종합센터 - 부지면적 : 1만㎡(나진시 안주동) - 연건평 : 2만8천㎡ - 층 수 : 18층	460	합작, 합영
	나진호텔	- 수용능력 : 200석 - 총 부지 : 1만7백㎡ - 연건축면적 : 9710㎡	100	합작

○ 공업단지별 투자유치희망업종

공업단지명	면적(ha)	대상수	대 상 업 종	개발기간
신흥공단	200	15	편직(4, 셔츠, 양말, 타올, 스타킹), 자크(2), 가방, 완구, 우산, 과즙, 인 쇄, 수예품, 냉장고, 제봉기, 전구	1993-2000
나진 동명 표준공단	20	3	신발(운동화, 가죽구두, 사출신발)	1993-1995
창평공단	60	3	자동차부품, 선박수리, 선박해체	1993-1995
청계공단	20	4	피복(여성용의류, 잠바, 코트, 털의 투, 솜옷)	1993-1995
백학공단	200	19	전자제품(5), 가전제품조립(5), 반도 체, 집적회로, 컬러TV브라운관, 액정 표시소자, 통신계, 스피커, 수치제어 기, 인쇄기판, 샘플가공	1993-2000
후창공단	200	8	식품가공(3), 전구, 전기기구, 수치제 어공작기계, 전동기(2)	2001-2010
관곡공단	370	3	제약, 포장재, 원유가공	1996-2010
웅상공단	250	4	가구, 포장재, 갈판, 보온재	1996-2010
홍의공단	180	2	자동차조립, 모터사이클	1996-2010
공단이외 지역	-	7	컨테이너, 식품가공(4), 보석가공, 도 자기	-

(2) 수정된 개발계획

○ 단계별 개발목표와 중점 프로젝트

- 원래의 개발계획은 1단계(1993~1995), 2단계(1996~2000), 3단계(2001~2010)로 계획되었으나 '95년부터 추진전략을 당면단계와 전망단계로 수정

단계별 개발목표와 중점프로젝트

단계구분	당면단계(1993-2000)	전망단계(2001-2010)
1. 개발목표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 기 지 건설	-종합적, 현대적인 국제교류 거 점도시(제2 싱가포르)
2. 중점 프로젝트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진지구의 경제특구 거점화 ② 중국-러시아와의 중계수송망 형성(철도, 도로, 통신 등) ③ 3,000만톤 규모로 자유무역항 들의 하역능력 확장 ④ 가공수출 산업기지형 공단의 본격적 조성 ⑤ 공업지구별 전문화와 본격적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가 공기지 건설 ⑥ 지대와 지대주변지역에 국제적 관광기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억톤 규모로 자유무역항들의 하역능력 확장 ②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봉사, 관광의 제기능을 종 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대 건설 ③ 21세기 국제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대의 현대화와 정보 화 추구

단계구분	당면단계(1993-2000)	전망단계(2001-2010)
3. 도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0만명 규모 - 나진지역 중심으로 개발하고 선봉지역으로 확대 - 96년 7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발간한 투자대상종합목록에 따르면 공업부문 약 36억달러, 하부구조부문 약 9억달러, 봉사부문(호텔 등) 1억달러로 총 투자건수 119개에 총 투자금액 47억 3,143만달러로 계획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0만명 규모 - 후창, 신해 등 나진외곽지역과 사회, 홍의 등 두만강 지역에 신흥도시 개발

○ 96년도의 투자대상목록

- 1996년 7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발간한 투자대상종합목록에 따르면 공업부문 약 36억달러, 하부구조부문 약 9억달러, 봉사부문(호텔 등) 1억달러로 총 투자건수 119개에 총 투자금액 47억 3,143만달러로 계획되고 있음.

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신규투자리스트

(1) 투자리스트 작성방향

- 다음의 투자 리스트는 북한 CPEEC와 UNIDO가 협력하여 작성한 것임. 특히 인프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금 당장 투자해도 이윤

이 낱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투자 리스트를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84년 제정된 합영법에 의한 자유경제지대밖의 투자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이면서 실질적인 사업위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나진·선봉지대 신규 투자 리스트

번호	프로젝트명	연간 생산계획	투자자본추정 (백만달러)	지역후원자	지 역
1	연근해양식업	가리비, 대합, 해삼, 성 계 총 330톤	1.0	라·선 경제 협력회사	소초도
2	담수어양식업	메기 100톤	0.8	·	흑지호
3	석재가공업(3 개소)	자갈 50,000m ³ 자연석 5,000m ³ 가공석재 10,000m ³	1개소당 0.5 합 : 1.5	오석산 무역 회사	두만강, 청 계, 용 상
4	무기비료 생 산업	무기비료 20,000톤	2.0	라·선 경제 협력회사	용수리
5	오리농장	오리고기 2,400톤	4.0	·	부포리
6	온실야채 생 산 및 가공업	오 이 200톤 토마토 400톤 고 추 50톤 기 타 500톤	1.0	·	신흥동
7	다시마 가공업	생 냉동다시마·김	1.5	·	선봉군
8	송화가루 가 공업	말린 송화가루	0.6	오석산 무역 회사	선봉군
9	나일론 섬유 생산업	나일론 섬유 1,000톤	1.0	·	·

번호	프로젝트명	연간 생산계획	투자자본추정 (백만달러)	지역후원자	지 역
10	가죽의류 생 산업	모피코트 600장 모피모자 2,000개 가죽장갑 10,000켤레	0.4	라·선 경제 협력회사	동명동 및 선봉군
11	니트의류 생산	스웨터 840,000장	1.26	대성 제8무역 상사	사리원, 북부 황 해지역
12	의류생산	각종 T셔츠·내의·운 동복	1.81	,	,
13	비 유기성 페인트	페인트 용품 1,500톤	1.2	라·선 경제 협력회사	동명동
14	은행잎 가공	분말 2톤	1.2	오석산 무역 회사	선봉군
15	타이어 재생 및 수리	재생타이어 6,600개 타이어 수리 3,000개	1.6	라·선 경제 협력회사	동명동
16	프라스틱 매트 생산	폴리비닐 매트 및 플라 스틱 매트 5백만 미터	5.1	경공업제품 무역회사	광옥동
17	벽돌생산	진흙벽돌 8백만장	3.85	오팔산 무역 회사	웅상· 선봉군
18	유리용기 생산	각종 유리 용기	2.5	라·선 경제 협력회사	신흥동
19	청기와 생산	기와 2종류 7백만장	3.15	오팔산 무역 회사	웅상· 선봉군
20	시멘트 생산	시멘트 500,000톤	18.6	,	부룡군
21	콘크리트 혼 합물공장	콘크리트 혼합물 50,000m ³	1.25	,	웅상· 선봉군

번호	프로젝트명	연간 생산계획	투자자본추정 (백만달러)	지역후원자	지 역
22	건축자재 생산	통기성 건물벽자재 및 코팅물질	6.6	오팔산 무역 회사	웅상· 선봉군
23	콘크리트 파 이프 생산	각종 콘크리트 파이프 및 파이프 마개세트 26,520개	2.65	'	'
24	가정용 알루미늄 제품 생산	각종 알루미늄제품 가정 용품 100,000개	1.81	평양 알루미늄 공장	평양시 선내동
25	스테인레스 밸브 제조업	스테인레스 밸브 6,000 개	0.5	라·선 경제 협력회사	신흥동
26	분말 칼륨장 석 생산업	분말 칼륨장석 10,000톤	1.1	평촌무역회사	영변군 옥창리
27	갈륨가공업	얇은층의 갈륨 100kg 가성 갈륨비료 5,500톤 명반 750톤	6.7	삼태성총그룹	김 책
28	규소철 가공업	단계적으로 총생산 능력 도달 예정, 투자연구 추 산치 스폰서가 제공가능	1,500(추산)	외국 경제협 력회사	보 진
29	판형 기차바 퀴 제작	판형바퀴 50,000개	3.5	평촌 무역회사	라 흥
30	베어링작업	1백만개, 목표 7백만개	46.0	기계 무역회사	평 양
31	아연가공업	전해아연괴 45,000톤 카드뮴괴 200톤	5.0	봉화총회사	남 포
32	아연가공업	전해아연괴 18,000톤 납 500톤 및 기타	10.0	능라 888 무 역회사	남 포

번호	프로젝트명	연간 생산계획	투자자본추정 (백만달러)	지역후원자	지 역
33	자동차배터리 제조업	자동차·트럭 배터리 50만개	10.0	합작그룹	평양시 평촌구역
34	전자계산기 조립	각종 전자계산기 1백만 개	2.4	삼광 무역회사	신흥동
35	준보석 가공업	각종 준보석 10,000개	1.0	오팔산 무역 회사	'
36	화물차 운송업	30,000 TEU 용기	0.8	평촌제1무역 회사	나진· 선봉
37	도시쓰레기 처리	고체 쓰레기 처리 능력 50,000톤 부산물 1MW 전력생산 능력	5.0	라·선 경제 무역회사	광복동

다. 대일본 투자요청분야

(1) 기술제휴, 합영에 관한 비망록

- 1985년 9월에 山勝傳 南海전철회장을 초청해 김일성이 회견하고 조
선아시아무역촉진위원간에 체결

- 「대일본경제교류촉진에 관한 의견서」에는 북한의 공업·무역 관련부처 및 회사의 사업활동 개요설명, 일본으로부터 설비·기술도입 및 대일수출을 희망

협 력 부 문	관련부서·회사
- 자동차 공작기계의 현대화, 전기기기 부문에서의 협력, 10만톤급 트랙터 엔진개선 기술협력	기계공업부
- 원유탐사 : 영상검사기술, 저층탐사기술	자원개발부
- 시멘트 100만톤 단위 6기 건설설비, 유리공장 플랜트, 대리석·화강암 수출	건재공업부
- 양식기술, 어류가공공장, 어구생산기지, 보관창고, 냉동냉장설비도입, 수산물 수출	수산위원회
- 강판류 생산설비도입 및 기술협력, 아연생산설비 도입, 아연연간 10만톤씩 일본 공급	조선금속기계수출입총회사
- 내화물 연산 10만톤 규모의 설비도입, 무연탄, 마그네시아 크링카, 내화물 수출	조선광산물수출입총회사
- 향료가공기계 도입, 류화철에서 귀금속 분리기술 및 설비도입	조선광명
- 향료, 화강암, 호프엑기스, 캄프리(단백질이 많은 약초), 건강식품 수출	무역총회사
- 의류 생산설비, 목재가공설비, 건조기도입, 의류, 목재, 완구수출	
- 규조토의 여과기 최종설비 및 여과기술, 세라믹가공기술, 시멘트, 비날론 섬유기술, 포장용기 특히 액체용 용기 생산설비도입, 규조토 수출	조선화학제품수출입회사
- 일본은행의 평양내 지점 개설	조선무역은행

(3) 일본경제교류대표단 초청시 요청사업

○ 1992. 7.14-21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조선아시아무역연구회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일조무역회, 대기업관계자 등 54명을 초
청

- 북한의 대일경제정책, 주요 산업부문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
면서 투자요청

○ 조선봉화무역총회사 요청사업

분 야	대일본 투자요청사업	비 고
의류입가공	- 설비, 생산능력 확대	- 네델란드, 독일, 핀란드와의 거래실 적 있음 - 서구에는 제품을 항공편으로 수송 - 5개공장이 있음
목재가공	- 가공설비, 건조기제공	- 북부지방에 소나무가 많아 제재목 을 태국, 핀란드에 수출 - 소련에서 상환받는 목재를 가공수 출할 수 있음
작동완구	- 기술과 설비제공	- 목재완구를 이탈리아에 수출한 실 적있음 - 노동력 있음
반제품조립	- 반제품제공	- 전기, 일용품 등 소형전자제품 생산 - 반제품 반입, 북한에서 조립
유가금속분리	- 분리기술과 설비(처리능 력 10만톤)제공	- 유화철을 가공한 유산제를 대량생 산하고 있음. 유가금속분리 회망(1 톤중 금1.1g, 은 5.8g, 동100g, 철 400-500kg)
건강식품		- 마늘, 다시마 가공회망

○ 조선화학제품수출입회사 요청사업

분 야	대일본 투자요청사업	비 고
규조토 여과제	- 생산기술과 최종 설비제 공	- 생산제품을 일본, 아시아에 수출희 망
필름공업	- 기술협력	- 북한도 일정기술 있음
세라믹공업	- 기술협력	- 원료는 많으나 기술수준이 낮음 - 위생도기 등 공장이 다수 있음
타일공업	- 설비와 기술협력	- 시멘트, 슬레이트, 타일공업 개발희망
포장용기	- 설비와 기술협력	- 액체용 용기생산희망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요청사업

- 대륙붕 원유탐사, 채굴, 금강개발
- 조선소 현대화, 엔진 및 선박용품 생산
- 유리공장(연산 1,000만㎡), 마그네샤크링카 제조공장과 내화벽돌
공장
- 방직공장(10만추), 견직물공장, 아연정련공장(연산 10만톤)
- 암모니아공장(연산 3만톤), 반도체와 직접회로공장, 시멘트공장

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투자 희망분야

(1) UNIDO에 제출한 전자분야 합영희망 프로젝트

- '92.11. 1억달러규모의 전자분야 18개 합영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서
방 각 기업의 직접투자와 기술제공 기대
- 자금, 설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마케팅까지 요청

프로젝트 내용	연간생산능력	투자규모(만달러)
1. 32비트 PC생산	2만대	240
2. 반도체용 실리콘단결정 원료생산	40만톤	2,000
3. 반도체공장 확장(IC생산)	2,000만개	1,500
4. 컬러TV(20형) 생산공장	30만세트	1,000
5. 냉장고 및 부품조립	50만대	1,200
6. 전해콘덴서 공장 확장	5,000만개	500
7. 전화기, 공중전화기 등	수출용	미정
8. 카본, 필름저항(1-4메가옴)	2억5천만개	200
9. TV용 세라믹콘덴서	1억개	200
10. 플라스틱전자부품용 주형	1,200디자인	400
11. 발전기용 보일러 터빈 제어장치	2,000unit	600
12. NC기계용 전기코드, 컨버터	10,000개	200
13. 회로판용 소형릴레이(5-24볼트)	120만개	300
14. TV용 소형트랜스, 코일	20만Unit	미정
15. 레코더, 디스크용 소형모터	30만Unit	50
16. 스텝퍼모터	수출용	미정
17. 가정, 업무용 스피커	50-150만Unit	300
18. TV스피커용 페라이트자석	500-600톤	400
계	-	9,090

(2) UNIDO 기술지원 대북한 협력사업

○ UNIDO는 '92. 11까지 다음사업을 북한과의 협력사업으로 공인하고 북한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음.

연도	사 업 명	규모(달러)
'86	비행장치 개발계획 지원	752,529
"	배전기부품 시험지원	1,004,337
"	변압기생산 현대화	858,942
"	피복기술연구소 보강계획	353,500
'87	분석장비 설계 및 개발	763,761
"	포장용 접착테이프 생산	79,815
"	탄화법에 의한 초산생산과정 발전계획	1,269,289
'88	원유사업 강화	369,878
"	Stevio가공	537,941
'89	бат데리 생산 현대화	333,000
"	변압기 생산 현대화	121,462
"	변압기 생산 현대화	167,000
"	접적회로 생산요원 교육	66,100
'90	중앙도향형 교육원 지원	300,029
'92	제강공장 설치	353,500
"	자유무역지대 설치지원을 위한 조사활동	57,835
"	관리개발 프로그램	229,500

(3) 83개 합작투자 희망사업

- UNIDO는 북한측에 투자질의서를 보내 작성하게 하고 이를 회수하여 1990년 7월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를 발표
- 북한이 밝힌 외국인투자 유치희망 프로젝트는 총83건으로 투자액은 15억6천여만US\$에 이르며 이중 외국측 투자액은 8억8,700만 US\$로 전체의 약 57%에 달함.

(단위 : 백만US\$, 건수)

부 문	투 자 대 상	투 자	규 모	프로젝트수
		총 투 자	해외투자	
1. 광업	- 銅, 흑연, 대리석, 화강암 등	67.1	46.3	5
2. 식품 및 농수산업	- 건강식품, 수산물가공, 콩기름, 과일주스 등	32.9	17.1	4
3. 직물 및 의류	- 견직물, 실크니트웨어, 견양말, 면, 신발, 의류, 나일론, 스포, 테트론섬유, 인조견사 등 합성섬유	293.9	217.2	7
4. 목재 및 목재가공	- 합판	3.0	2.5	1
5. 화학제품	- 페아리트, 향수, 정유, 구연산, 염화비닐, 스티렌, 에틸벤젠, 가성소다, 알데히드, 수지, 무수프탈산 등	276.6	139.9	11
6. 유리 및 요업품	- 고령토, 규조토, 점토, 편암토, 벤토나이트, 유리받침, 유리섬유, 크리스탈 등	55.6	30.4	7
7. 금속산업	- 아연, 카드뮴, 티타늄, 크롬강, 마그네슘크링카, 전기동, 회토류, 마그네슘 등	156.2	97.4	12
8. 조립금속품	- 볼트, 너트	0.8	0.31	1
9. 기계공업	- 공작기계, 유압기, 연삭기, 절삭기, 산업용재봉틀, 전해장치, 유압펌프 및 밸브, 연료펌프 및 분사기 등	192.1	95.2	8

부 문	투 자 대 상	투 자	규 모	프로젝트수
		총 투 자	해외투자	
10. 전기·전자 공업	- 배터리, 흑백TV, 전기기구, 전기모터, 컬러TV, 회트류영 구자석, 계전기, 변압기, 엘리 베이터, 소형컴퓨터, 계산기, 녹음기, 냉장고, 양극성 집적 회로	334.2	165.1	25
11. 조 선	- 어선건조 및 각종 선박수리	148.9	75.6	2
계		1,561.3	887.0	83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1997년 12월 일 인쇄

1997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 738-7776, 722-8910

인쇄처 성진문예사

<비매품>

